

정책자료 2008-04

평성 20년판
일본 소자화백서

공역

신윤정

남은우

이난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서는 한일 양국장관 합의('06. 7. 18)에 따라 저출산관련 실무자간 정책교류의 일환으로 일본 내각부로부터 제공받아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번역한 것이다. 원문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등은 가급적 일본어로 표기하였다.

2008. 12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제1부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과제

제1장 저출산 현상.....	3
제1절 최근의 저출산 현황.....	3
제2절 인구감소사회의 도래.....	15
제2장 저출산 대책의 검토.....	26
제1절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	26
제2절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중점전략의 개요.....	38
제3장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	70
제1절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중요성.....	70
제2절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현장」 및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의 개요.....	81

제2부

2007년도 저출산 사회대책의 구체적 실시 상황

제1장 청년의 자립과 씩씩한 아이로 키우기.....	105
제1절 청년 취업지원에 대한 대응.....	105
제2절 장학금의 충실을 도모한다.....	112
제3절 체험을 통해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한다.....	114
제4절 아이에 대한 학습지원.....	121

제2장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근로방식의 개선.....	123
제1절 기업에서 한 단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123
제2절 육아휴직제도 등에 대한 대책 추진.....	126
제3절 남성의 육아참여 추진을 위한 아버지 프로그램 보급.....	128
제4절 노동시간의 단축 등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을 이룬 근로형태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도모.....	129
제5절 임신·출산해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정비 진행.....	136
제6절 재취직 추진.....	137
제3장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이해.....	138
제1절 영유아와 서로 접할 기회의 충실 도모.....	138
제2절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이해 도모.....	139
제3절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형성에 대한 이해 도모.....	140
제4장 육아의 새로운 협력과 연대.....	146
제1절 취학전 아동의 교육·보육 충실.....	146
제2절 방과후 대책의 내실을 기한다.....	152
제3절 지역에서의 육아지원 거점 정비 및 기능의 충실 도모.....	154
제4절 가정교육 지원.....	158
제5절 지역주민 힘의 활용, 민간단체의 지원, 세대간 교류 추진.....	160
제6절 아동학대 방지 대책 추진.....	161
제7절 특별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육아지원 추진.....	163
제8절 행정서비스 일원화 추진.....	166
제9절 소아 의료체제 충실.....	167
제10절 아동건강을 지원한다.....	168
제11절 임신·출산 지원체제, 주산기 의료체제 충실.....	171
제12절 불임치료에 대한 지원 대처.....	174
제13절 양질의 주택·거주환경 확보 도모.....	174
제14절 육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	176
제15절 아동수당 충실·세제개념 검토.....	183

부 록

부록 1. 저출산(少子化) 사회대책 기본법(2003년 법률 제133호).....	199
부록 2.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	204
부록 3.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에 근거한 중점시책의 구체적 실시계획에 대해.....	222
부록 4. 새로운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252
부록 5. 「아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	257
부록 6.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현장	268
부록 7.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	272
부록 8. 기초 데이터.....	286

표 목 차

<표 1-1- 3> 외국의 연령별(3개로 구분) 인구 비율.....	6
<표 1-1-13> 도도부현별 총인구의 전망.....	19
<표 1-1-15>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시정촌(상위 5개)(%).....	20
<표 1-2-19> 지급액, 지급대상 연령에 대하여 각종 전제를 둔 아동수당 급여액의 추계치.....	52
<표 1-3-11> 노동자의 노동시간 국제 비교.....	79
<표 1-3-13> 행동지침으로 설정된 수치목표.....	91
<표 2-2- 2> 일·가정 양립 추진 기업 표창(패밀리·프렌드리 기업 부문) 수상 기업 일람.....	125
<표 2-2- 3> 각종 조성금의 개요.....	127
<표 2-2- 5> 2005년도 일본 텔레워크 인구 추계치(전회 2002년도와 비교).....	134
<표 2-4- 1> 연령구분별 대기아동수.....	146
<표 2-4- 3> 맡기기 보육 실시 상황.....	140
<표 2-4- 4> 인정 어린이집 인정 건수 및 향후 신청 예상 건수.....	151
<표 2-4- 5> 방과후 아동플랜 실시 상황(2007년도).....	153
<표 2-4- 7> 지역에서의 육아지원 거점 정비 상황.....	156

그림 목차

[그림 1-1- 1]	출생자수 및 합계특수출생률의 연도별 추이	4
[그림 1-1- 2]	연소자인구와 고령인구의 연도별 추이	5
[그림 1-1- 4]	최근 출생자수의 추이	8
[그림 1-1- 5]	최근 혼인건수의 추이(당월을 포함한 과거 1년간의 누계)	8
[그림 1-1- 6]	도도부현별 합계특수출생률(2006년)	9
[그림 1-1- 7]	혼인건수 및 혼인률의 연도별 추이	11
[그림 1-1- 8]	초혼 신부의 연령(각 세)별 혼인건수의 비율	12
[그림 1-1- 9]	평균 초혼연령과 평균 출생시 연령의 연도별 추이	12
[그림 1-1-10]	주요 국가의 합계특수출생률의 변동	14
[그림 1-1-11]	아시아 주요 국가·지역의 합계특수출생률 변동	15
[그림 1-1-12]	일본인구 구조의 추이와 전망	17
[그림 1-1-14]	도도부현별 고령인구 비율의 전망	20
[그림 1-1-16]	노동력인구의 추이와 전망	22
[그림 1-1-17]	아동·학생수의 추이(초·중·고교)	23
[그림 1-1-18]	1학급당 아동·학생수 추이	24
[그림 1-1-19]	학교수 추이	25
[그림 1-2- 1]	저출산 대책의 경위	27
[그림 1-2- 2]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의 세 가지 비전과 네 가지 중점과제	29
[그림 1-2- 3]	아이·육아 응원플랜의 개요	31
[그림 1-2- 4]	새로운 저출산 대책의 개요	33
[그림 1-2- 5]	희망이 모두 실현되는 케이스의 합계특수출생률은 1.75	35
[그림 1-2- 6]	「출생 등에 대한 희망을 반영한 인구시산(試算)」(2007년 1월)의 결과	35
[그림 1-2- 7]	결혼·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7
[그림 1-2- 8]	중점전략의 검토체제(구성원)	39
[그림 1-2- 9]	중점전략과 현장·행동지침 책정을 위한 검토경위 및 체제	40

[그림 1-2-10]	향후 일본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2006년 12월 추계).....	41
[그림 1-2-11]	노동시장 참가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의 노동력 추이.....	42
[그림 1-2-12]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취업률 비교(2002년).....	43
[그림 1-2-13]	취업과 결혼·출산·육아의 「양자택일」 상황.....	44
[그림 1-2-14]	중점전략 책정의 비전.....	45
[그림 1-2-15]	각국의 가족관계 사회지출 GDP 대(對)비의 비교(2003년).....	46
[그림 1-2-16]	사회보장급여비 중 아동·가족관계 급여비 비율.....	47
[그림 1-2-17]	프랑스의 가족관계 지출(2003년)의 일본의 인구규모로의 환산.....	48
[그림 1-2-18]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실현과 희망하는 결혼이나 출산·육아실현을 지원하는 급여·서비스의 사회적 비용 추계.....	51
[그림 1-2-20]	현행 차세대 육성지원 급부·서비스의 비용구성.....	53
[그림 1-2-21]	가족관계 사회지출과 재원구성(추계)의 국제 비교:.....	54
[그림 1-2-22]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의 구조 구축.....	57
[그림 1-2-23]	2008년도 저출산 사회대책 관계 예산의 포인트.....	59
[그림 1-2-24]	아동복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개요.....	62
[그림 1-2-25]	시구정촌(50명 이상)별 보육시설 대기 아동수.....	65
[그림 1-2-26]	보육 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	66
[그림 1-2-27]	신대기아동 제로작전의 개요.....	66
[그림 1-3- 1]	맞벌이 세대의 추이.....	71
[그림 1-3- 2]	정규 고용자와 비정규 고용자의 추이.....	71
[그림 1-3- 3]	어머니의 취업 상황의 변화.....	72
[그림 1-3- 4]	양립이 어려운 이유.....	73
[그림 1-3- 5]	성, 연령 단계별 취업시간(비농림업).....	74
[그림 1-3- 6]	6세 미만아가 있는 남편의 가사, 육아시간(주 전체).....	75
[그림 1-3- 7]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희망과 실현.....	76
[그림 1-3- 8]	가족의 상황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	76
[그림 1-3- 9]	양립지원책 이용을 저조하게 하는 이유.....	77
[그림 1-3-10]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국제 비교.....	78
[그림 1-3-12]	현장 및 행동지침의 검토 체제.....	82
[그림 1-3-14]	개인의 실현도 지표의 추이(2002년=100).....	96

[그림 1-3-15]	환경정비 지표의 추이(2002년=100).....	96
[그림 1-3-16]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	98
[그림 2-1- 1]	장학금 대여 인원의 추이.....	113
[그림 2-1- 2]	장학금 사업비의 추이.....	113
[그림 2-2- 1]	인정 마크 「쿠루민」	124
[그림 2-2- 4]	단시간 고용자(주간 취업시간 35시간 미만인 자) 수·비율 추이-비농림업-	131
[그림 2-4- 2]	대기아동수의 추이.....	147
[그림 2-4- 6]	생후 4개월까지의 가정방문 사업(안녕하세요 아기사업)의 개요..	155
[그림 2-4- 8]	임산부 건강진단 진찰 및 조기 임신신고의 권장을 위한 팸플렛·	172
[그림 2-4- 9]	키즈 디자인 마크.....	181
[그림 2-4-10]	안전 지식 순환형 사회구축사업.....	181

1

제1부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과제

제1절 최근의 저출산 현황

1. 저출산의 진행

가. 출생자수와 합계특수출생률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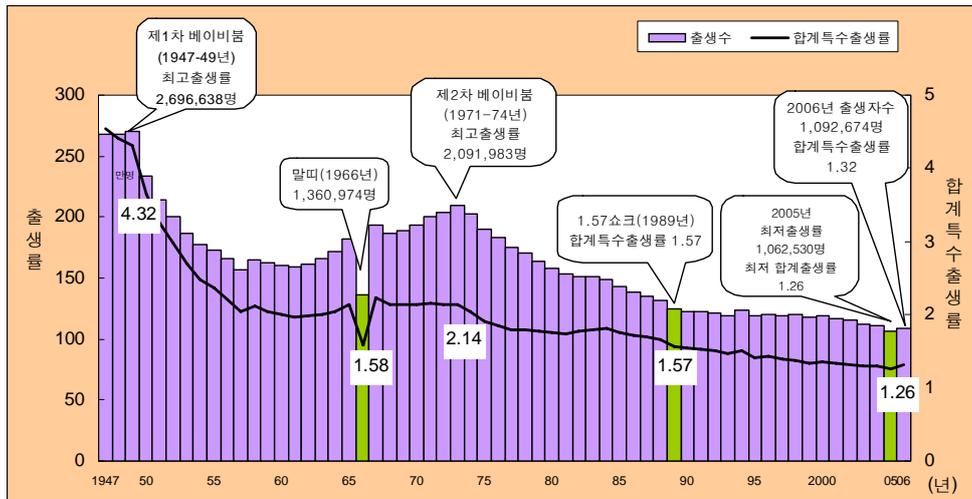
2006년 출생자수는 109만 2,674명으로 전년도 106만 2,530명보다 3만 144명을 웃돌아 2000년 이후 6년만에 증가하였다. 일본의 연간 출생자수는 제1차 베이비붐¹⁾기에는 약 270만 명, 제2차 베이비붐기에는 약 210만 명이었지만, 1975년에 200만 명으로 하락하여 매년 계속해서 감소가 이어졌다. 1984년에는 150만 명으로 하락해 1991년 이후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감소경향이 지속되어 2001년부터는 5년 연속으로 감소가 이어졌다. 합계특수출생률²⁾을 보면 2006년은 전년도 1.26을 0.06포인트 웃도는 1.32로 출생자수와 같이 6년만에 상승하였다. 합계특수출생률은 제1차 베이비붐기에는 4.3을 넘고 있었지만, 1950년 이후 급격하게 저하하였다. 그 후 제2차 베이비붐기를 포함해 약 2.1대가 되었지만, 1975년에 2.0을 밑돌고 나서 다시 저하 경향이 지속되었다. 1989년에는 병오년(말띠)³⁾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최저치였던 1966년의 수치를 밑도는 1.57을 기록하고, 2003년에는 「초저출산 국가」라고 불리는 수준인 1.3을 밑돌고, 2005년에는 과거 최저인 1.26까지 떨어졌다.

이와 같이 2006년에는 출생자수, 합계특수출생률 모두 회복했지만 여전히 인구 대

- 1) 베이비붐이란, 출생자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2번의 베이비붐이 있었다. 제1차 베이비붐은 1947년부터 1949년, 제2차 베이비붐은 1971년부터 1974년이다. 제1차 베이비붐 세대는 「단카이(団塊) 세대」, 제2차 베이비붐 세대는 「단카이(団塊) 주니어 세대」라고 불리고 있다.
- 2) 합계특수출생률(합계출산율)이란, 그 해의 15~49세까지의 여성의 연령별출생률을 합계한 것으로, 한 명의 여성이 가령 그 해에 연령별출생률에서 일생동안에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신생아 수에 해당한다.
- 3) 병오년(말띠)라는 건, 십이지의 하나로 60년에 한 번 돌아온다. 말띠 해에 태어난 여성은 천성이 기가 세다고 하는 미신때문에, 이 해에 아이를 낳는 것을 피한 부부가 많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체 수준)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유럽국가와 비교해도(제1장 칼럼 참조) 극히 낮은 수준이다. 2007년의 출생자수 역시 전년을 약간 밑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림 1-1-1] 출생자수 및 합계특수출생률의 연도별 추이



나. 아이 수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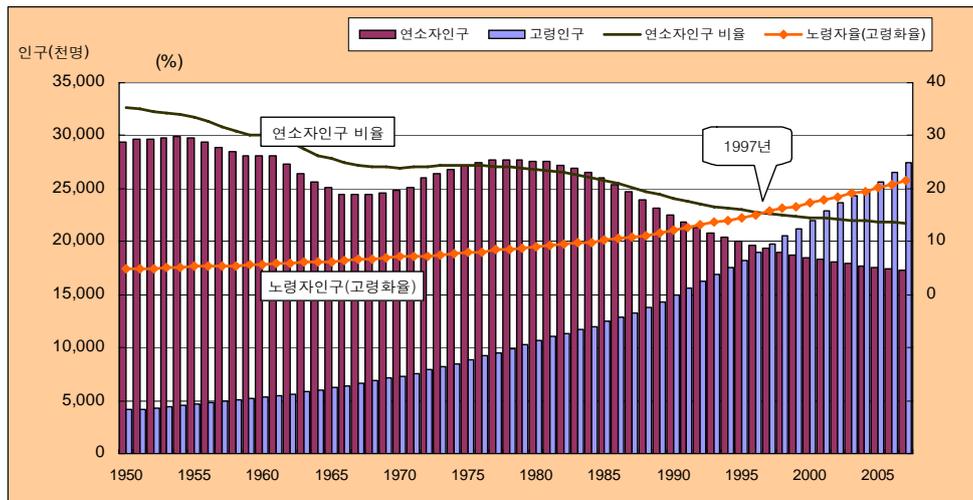
출생자수 감소는 일본의 연소자인구(0~14세) 감소를 불러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총인구에 차지하는 연소자인구 비율의 변화를 보면, 1950년에는 35.4%(약 3,000만 명)로 총인구의 1/3을 넘고 있었지만 제1차 베이비붐기 이후의 출생자수 감소에 의해 1960년대 후반까지 저하가 계속되어 총인구의 약 1/4이 되었다. 그 후, 제2차 베이비붐기의 출생자수 증가에 의해 약간 증가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다시 감소경향이 되어 1997년에는 고령인구(65세 이상)보다도 적어졌다. 또, 총무성 「인구추계(2007년10월1일 현재 추계인구)」⁵⁾에 의하면 연소자인구는 1,729만 3천명, 총인구에

4) 장기적으로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합계특수출생률의 수준을 「인구대체수준」이라고 한다. 이 수준을 밑돌면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인구학의 세계에서는 이 수준을 상당기간 밑돌고 있는 상황을 「저출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준 수준은 2.1 전후로, 최근 몇 년 일본의 수치는 2.07~2.08이지만, 남녀의 출생 성비의 차이에 따라 변동한다.

5) 「추계인구」는 국세조사의 인구를 바탕으로 그 후 인구의 자연동태(출생·사망) 및 사회동태(출입국)를 인구동태통계(후생노동성), 출입국관리통계(법무성) 등 다른 인구관련 자료로부터 얻어 최신의 인구를 추계한 것이다. 국세조사의 총인구는 일본에 사는 일본인과 일본에 3개월 이상 사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차지하는 비율은 13.5%가 되었다. 이에 비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8,301만 5천(총인구 65.0%), 고령인구는 2,746만 4천명(동21.5%)이 되어 일본의 인구구조는 더욱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1-1-2] 연소자인구와 고령인구의 연도별 추이



자료: 총무성 「국세조사」, 「인구추계(각 년 10월1일 현재 추계인구)」를 바탕으로, 내각부 저출산 대책추진실에서 작성
 주: 국세조사연도에 대해서는 연령미상분을 배분하고 있다.

2005년 시점에서 세계 전역의 연소자인구 비율(국제연합추계)은 28.3%이지만, 일본의 총인구에 차지하는 연소자인구의 비율은 13.5%로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이탈리아 14.0%, 스페인 14.4%, 독일 14.4%로 상대적으로 합계특수출생률이 낮은 국가의 연소자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본과 같이 합계특수출생률이 낮은 수준인 한국, 싱가포르에서는 저출산의 진행이 일본보다 늦은 시기에 시작해 각각 18.6%, 19.5%로 나타났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을 보면 일본이 21.5%로 가장 높아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표 1-1-3> 외국의 연령별(3개로 구분) 인구 비율

국가평균	연령(3구분)별 비율 (%)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세계	28.3	64.4	7.3
일본	13.5	65.0	21.5
이탈리아	14.0	66.3	19.7
스페인	14.4	68.8	16.8
독 일	14.4	66.9	18.8
러시아	15.1	71.1	13.8
폴란드	16.3	70.4	13.3
스웨덴	17.4	65.4	17.2
캐나다	17.6	69.2	13.1
영 국	18.0	66.0	16.1
프랑스	18.4	65.3	16.3
한 국	18.6	71.9	9.4
싱가폴	19.5	72.0	8.5
미 국	20.8	66.9	12.3
중 국	21.6	70.7	7.7
아르헨티나	26.4	63.4	10.2
남아프리카공화국	32.1	63.6	4.2
인 도	33.0	62.0	5.0

자료: United Nat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 Revision"

주: 단, 여러국가는 2005년시점의 수치, 일본은 총무성 「인구추계(2007년 10월1일 현재 추계인구)」에 따른다.

다. 최근의 출생자수 및 혼인건수의 경향

앞에서 말한 것처럼, 2006년의 출생자수는 6년만에 증가로 바뀌었지만 「2007년 인구동태통계의 연간 추계⁶⁾」에 의하면, 2007년 출생자수는 109만 명으로 2006년의 109만 2,674명에서 약 3,000명 감소하였다고 보여진다. 한편, 사망자수는 110만 6,000

6) 일본에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인구동태통계 속보」의 2007년 1~10월분까지와 「인구동태통계 월보(개수)」의 동년 1~7월분까지를 기초자료로서 1년간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및 사산을 추계한 것이다.

명으로 2006년의 108만 4,450명보다 약 2만 2,000명 증가하였고 자연증가수는 마이너스 1만 6,000명으로 예상되어 진다.

혼인건수에 대해서는 2007년은 71만 4천 쌍으로, 2006년의 73만 971쌍에서 약 1만 7,000쌍이 감소하여 혼인율(인구 1,000대)에 대해서도 5.7로, 2006년의 5.8을 밑돌고 있다.

다음으로, 「인구동태통계 속보7」에 의해 매월 출생자수의 변동을 보면 2007년은 전년동월을 밑도는 월이 많아지고 있어,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계는 112만 937명이 되었다. 또 2008년 1월의 출생자수는 9만 5,089명으로, 전년동월보다 6명 밑돌고 있다.

한편 혼인건수에 대하여, 당월분을 포함한 과거 1년간 혼인건수의 누계를 보면 2005년 이후에는, 2007년 1월 75만 592쌍을 피크로 감소경향이 되어, 2008년 1월 시점에서는 73만 6,831쌍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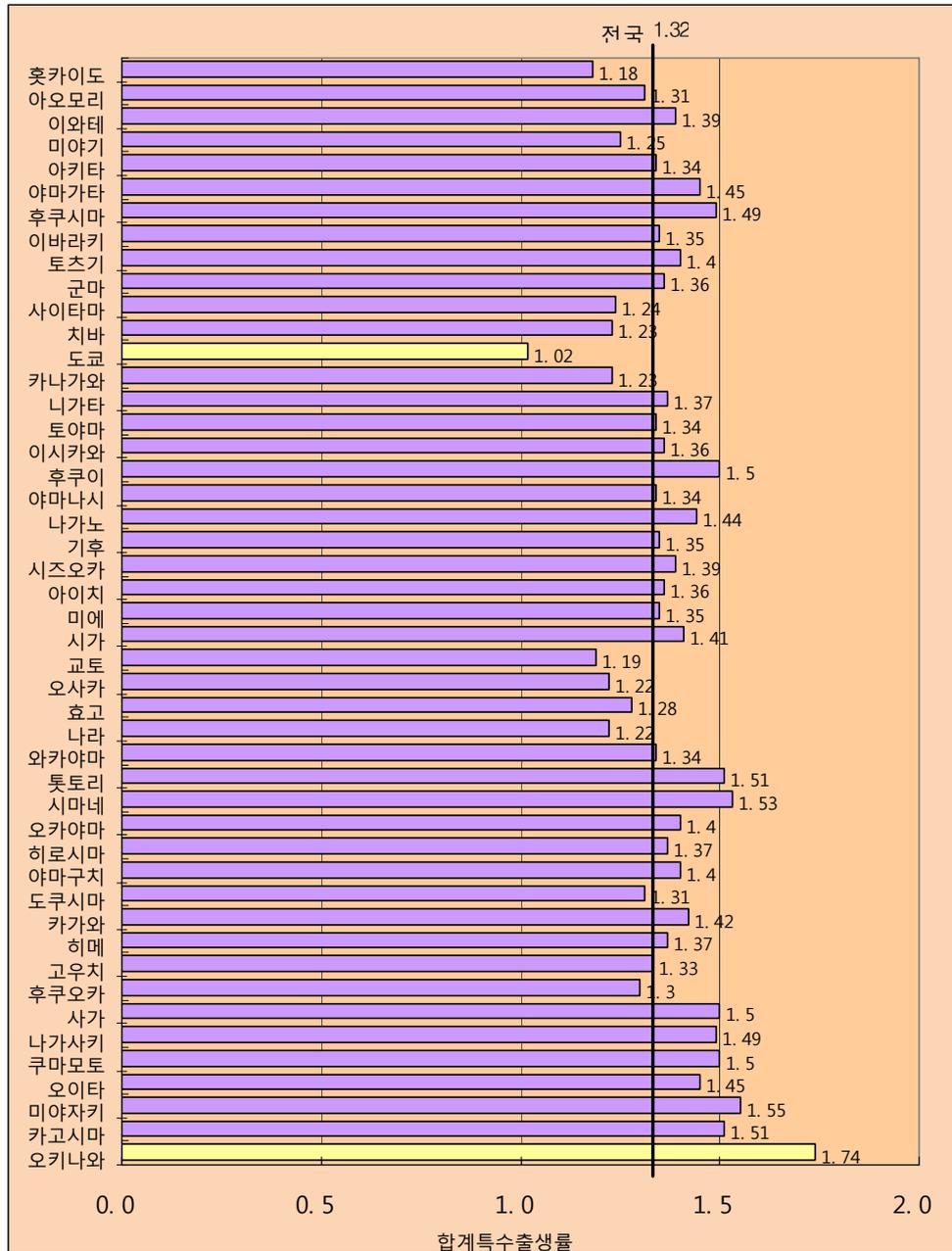
라. 도도부현별로 본 저출산 상황

2006년 전국의 합계특수출생률은 1.32이지만 47개 도도부현 별 상황을 보면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곳은 34곳, 밑도는 곳은 13곳이었다. 이 중에서 합계특수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오키나와현(1.74)이며, 다음으로 미야자키현(1.55), 시마네현(1.53), 토토리현과 카고시마현(1.51)의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도쿄도(1.02)이며, 다음으로 홋카이도(1.18), 교토부(1.19), 오사카부와 나라현(1.22)이다.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하면 합계특수출생률이 상승한 곳은 모두 33개 현으로 가장 크게는 1.26에서 1.32로 상승한 적도 있다⁸⁾. 그 상승폭이 특히 컸던 곳은 미야자키현(0.07포인트), 토쿠시마현과 오이타현(0.05포인트)이다.

7) 인구동태통계 속보는, 일본에 있는 일본인, 일본에 있는 외국인, 외국에 있는 일본인과 전년 이전에 발생한 사상을 포함한다.

8) 도도부현의 합계특수출생률은, 그 분모인 연령별 여성인구에, 2005년은 일본인 인구, 2006년은 총인구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두 해 모두에 일본인 인구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합계특수출생률과 비교해, 그 상승폭이 작아지고 있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그림 1-1-6] 도도부현별 합계특수출생률(2006년)



자료: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2. 미혼화·만혼화의 진행

가. 미혼화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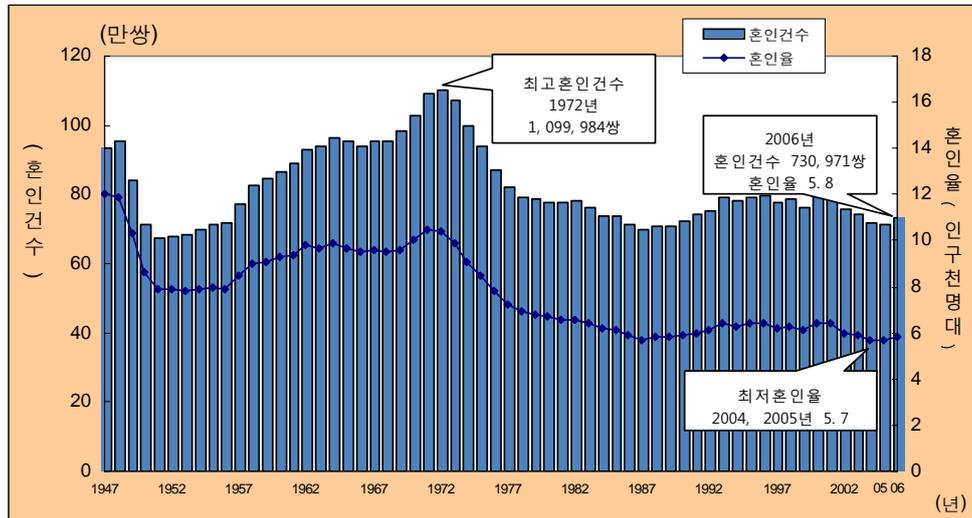
혼인건수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에 결혼적령기라고 불리던 25세 전후 연령을 맞이한 1970년부터 1974년에 걸쳐서 연간 100만 쌍을 넘어 혼인률(인구 1,000대)도 거의 10.0이상으로 「결혼붐」이 일어났다. 그 후에는 혼인건수, 혼인률 모두 저하 경향이 되어, 1978년 이후에는 연간 70만 쌍대 (1987년만 60만 쌍대)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2002년부터는 4년 연속 감소하였지만, 2006년에는 73만 971쌍(전년 대비 1만 6,706쌍 증가)으로 5년만에 증가하였다. 혼인률도 과거 최저였던 2004년, 2005년의 5.7보다 0.1 상승하여 5.8이 되었지만, 「결혼붐」이 일었던 1970년대 전반과 비교하면 절반 가깝게 떨어졌다.

또 2005년 총무성 「국세조사」에 의하면 25~39세의 미혼율은 남녀 모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남성은 25~29세가 71.4%, 30~34세가 47.1%, 35~39세가 30.0%, 여성은 25~29세가 59.0%, 30~34세가 32.0%, 35~39세가 18.4%이었다. 30년전인 1975년에는 30대 남성·여성 모두 약 9%가 결혼했던 것을 보면, 최근 미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애미혼율을 30년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2.1%(1975년)에서 15.4%(2005년), 여성은 4.3%(1975년)에서 6.8%(2005년)로 상승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2006년에 태어난 아이 가운데 98%는 적출자(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 출생 한 아이)이며, 적출이 아닌 아이(이른바 혼외자)의 비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⁹⁾. 따라서 아이는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일본에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면 출생자수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9) 유럽국가의 적출이 아닌 아이의 비율은 30~50%대의 수준이지만, 그 배경에는 남녀의 커플이 법률상의 결혼에 이르기까지 동거라고 하는 사실혼 상태를 거치는 것이 많은 것과 적출이 아닌 아이여도 법적으로는 적출자와 거의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 결혼 형식의 다양화에 따른 사회 일반의 이해 등이 있다.

[그림 1-1-7] 혼인건수 및 혼인률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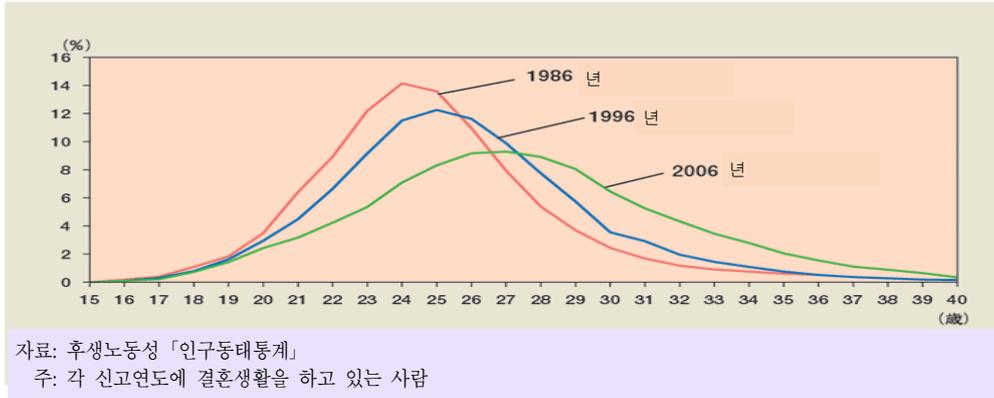
자료: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나. 만혼화, 만산화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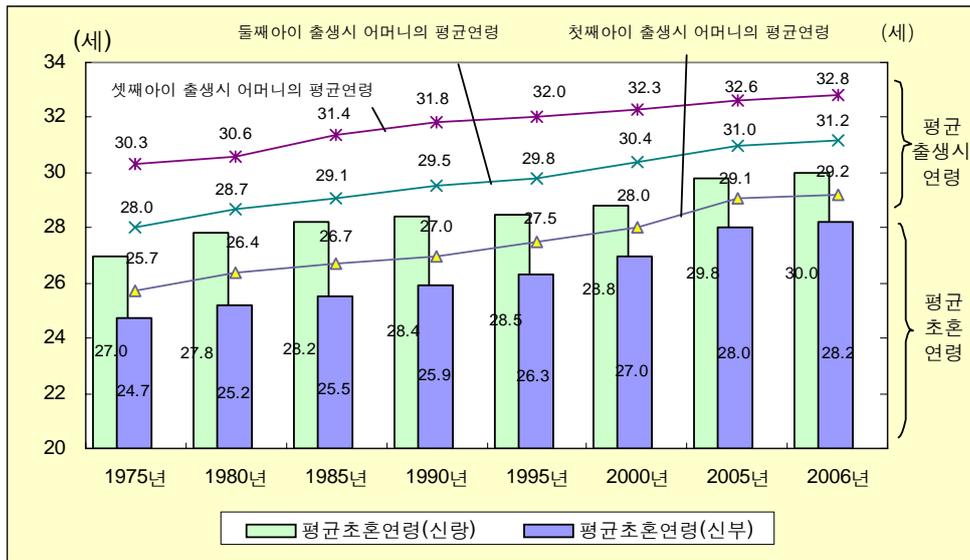
일본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2006년에 신랑이 30.0세(전년대비 0.2세 상승), 신부가 28.2세(전년과 같음)로 상승경향이 계속되고 있으며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만혼화가 진행되고 있다. 1975년에는 신랑이 27.0세, 신부가 24.7세로 거의 30년 동안 신랑은 3.0세, 신부는 3.5세 평균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다.

초혼인 신부의 연령별 혼인건수 구성비율을 1986년부터 10년 단위로 보면 피크시의 연령이 상승하는 것과 동시에, 그 혼인건수 비율도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가 진행함에 따라, 출산시 모의 평균연령도 늦어지는 만산화 경향이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첫째 아이가 29.2세, 둘째 아이가 31.2세, 셋째 아이가 32.8세로, 30년전의 1975년과 비교하면 각각 3.5세, 3.2세, 2.5세가 늦어지고 있다. 고연령이 됨에 따라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혼화와 만산화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1-1-8] 초혼 신부의 연령(각 세)별 혼인건수의 비율



[그림 1-1-9] 평균 초혼연령과 평균 출생시 연령의 연도별 추이




 칼 럼

외국의 저출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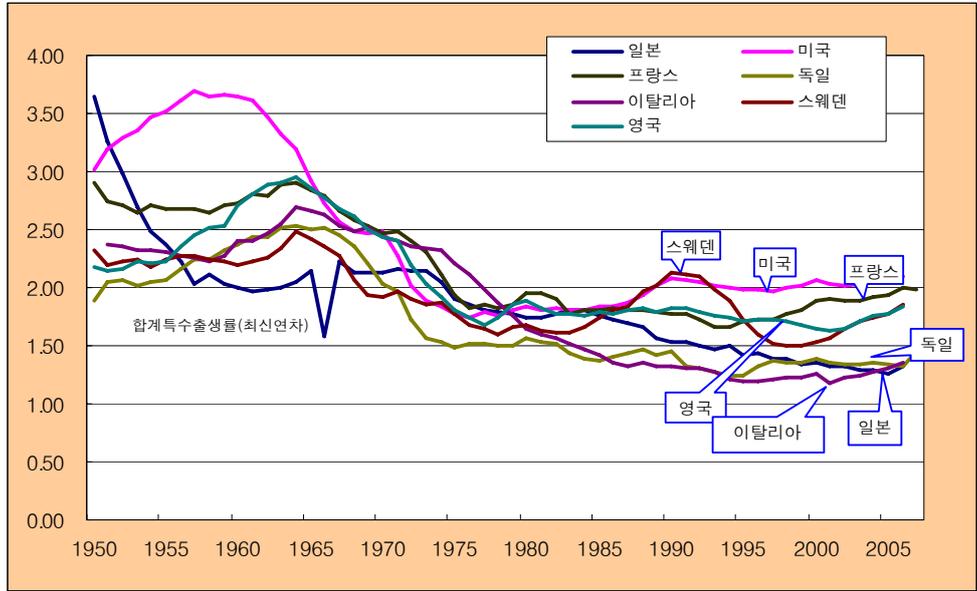
일본은 전후(제2차 세계대전), 출생자수와 합계특수출생률이 급속히 감소하여 현재에도 저출산 경향이 계속 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저출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주요 국가(미국¹⁰), 프랑스,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독일)의 합계특수출생률 추이를 보면, 1960년대까지는 모든 국가에서 2.0이상의 수준이었다. 그 후, 1970년부터 1980년경에 걸쳐 전체적으로 저하경향이 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아이의 양육비용의 증가,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피임 등 출생억제기술 보급 등이 지적되고 있다. 1990년경부터는 출생률 변동은 국가에 따라 특유의 움직임을 보이며 최근 몇년 사이 회복하는 국가도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나 스웨덴에서는 출생률이 1.6대까지 저하한 후 회복경향이 되었고, 그 다음 프랑스가 1.98(2007년(속보치)), 스웨덴이 1.85(2006년)가 되었다. 이러한 국가들의 가족정책 특징을 보면, 프랑스에서는 이전에는 가족수당 등의 경제적지원이 중심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보육서비스의 충실로 전환하여, 그 후 한층 더 출산·육아와 취업에 관하여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정비, 즉 「일 가정 양립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보육서비스나 육아휴직제도라고 하는 「일 가정 양립지원」 시책이 진행되어 왔다. 또 독일에서는 여전히 경제적 지원이 중심이지만, 최근 일 가정 양립 지원으로 전환을 도모하여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서비스의 확충 등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10) 미국의 2006년 합계특수출생률은 2.10이지만 인종별로 보면, 백인 1.86, 아프리카계 2.11, 아시아계 1.91, 히스패닉계 2.96이다. 히스패닉계의 출생률이 매우 높고, 전출생자수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지만, 백인의 출생률도 일본의 수준(2006년에 1.32)을 크게 웃돌고 있다.

[그림 1-1-10] 주요 국가의 합계특수출생률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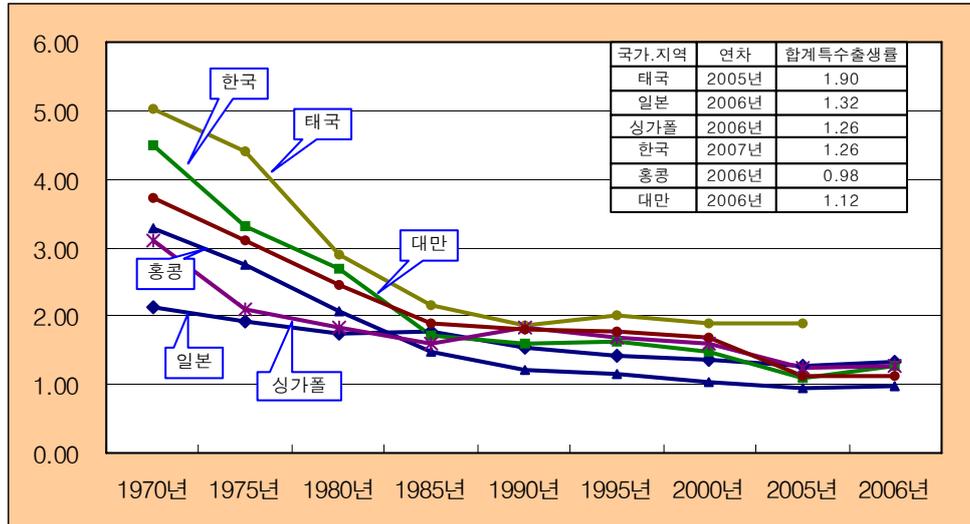
자료: 유럽은 EU "Eurostat", Council of Europe "Recent demographic developments in Europe", United Nation "Demographic Yearbook", 각국 통계. 미국은 U.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 United Nations "Demographic Yearbook". 일본은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주: 가장 최근 수치에 대해서는 속보치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의 유럽 국가(특히 프랑스, 스웨덴, 독일)에서는 가족관계 사회지출의 규모나 그 내역은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일과 육아·가정에 대한 「양립지원」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경향이 보인다.

다음으로 아시아 국가나 지역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고, 시계열(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률적인 현상을 관측해서 얻은 값의 계열) 데이터의 이용이 가능한 시기에서의 타이, 싱가포르, 한국, 홍콩과 대만의 출생률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의 시점에는 어느 국가도 일본의 수준을 웃돌고 있었지만 그 후 출생률은 저하되어 현재는 인구대체수준을 밑도는 수준이 되었다. 타이의 1.90(2005년)을 제외하면, 일본의 1.32(2006년)를 밑도는 수준으로 싱가포르가 1.25(2005년), 한국이 1.26(2007년(속보치)), 대만이 1.12(2006년), 홍콩이 0.98(2006년)이다.

이와 같이, 일본 이외에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나 지역에서도 「초저출산」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한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자국의 출생률이 너무 낮다고 인식하고 출생률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림 1-1-11] 아시아 주요 국가·지역의 합계특수출생률 변동



자료: United Nation "Demographic Yearbook", WHO "World Health Statistics", 각국 자료.

일본은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주1: 대만의 1970년에는 1971년, 1975년에는 1976년, 1980년에는 1981년의 수치.

주2: 가장 최근 수치에 대해서는 속보치를 포함한다.

제2절 인구감소사회의 도래

1. 장래 인구의 전망

가. 50년 후 일본 인구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06년은 출생자수(109만 2,674명)와 사망자수(108만 4,450명)의 차이인 자연증가수는 8,224명이었다. 2005년에는 현재의 형식으로 조사를 개시한 1899년 이후 통계를 얻지 못하고 있는 1944년부터 1946년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감소[전년(2004년)대비 마이너스 2만 1,266명]하였지만, 2006년에는 다시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향후 일본 인구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국제조사나 인구동태통계를 바탕으로 장래의 출생, 사망 및 국제인구 이동에 대하여 일정한 가정을 마련해, 이것들을 근거로 일

본의 장래 인구규모나 인구구조의 추이를 대략 5년마다 추계하고 있다. 최신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2006년 12월 추계)」(이하 「2006년 장래 추계인구」라고 한다.)에서는 장래의 출생 추이 및 사망 추이에 대하여 각각 중위, 고위, 저위 3개의 가정을 마련하고 있다¹¹⁾. 따라서 3개의 출생가정과 사망가정을 조합하여, 9개의 방법으로 추계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하에는 사망중위의 가정으로 3개의 추계(출생중위, 고위, 저위)를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장래 추계인구로 이용되고 있는 중위추계(출생중위·사망중위)에서 합계특수출생률은 2005년 실적치 1.26에서 2013년에는 1.21까지 저하하고 그 후 약간 상승하고 2055년에는 1.26이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하면, 일본의 총인구는 2005년 1억 2,777만 명에서 장기간 인구감소 과정에 들어가 2030년의 1억 1,522만 명을 거쳐 2046년에는 1억명을 꺾 9,938만 명이 되어, 50년 후 2055년에는 8,99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전회의 추계(2002년 1월 추계)에서는 2050년 합계특수출생률은 1.39, 총인구는 1억 59만 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었지만, 비혼화, 만혼화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전회보다 한층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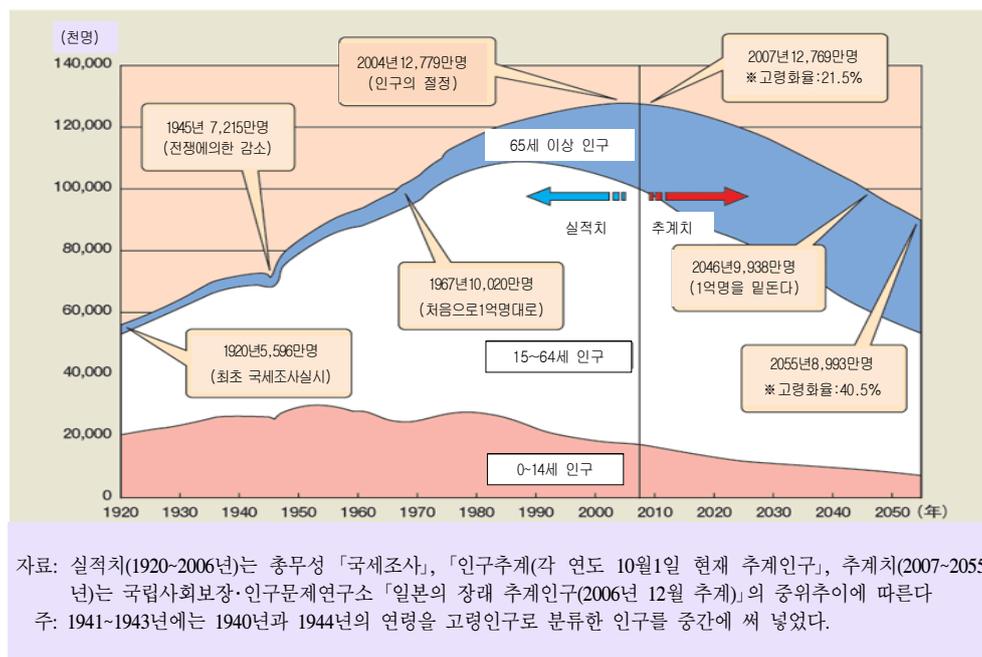
또 고위추계(출생고위·사망중위)에 의하면, 합계특수출생률은 2006년에 1.32로 상승하였고, 2055년에는 1.5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는 2053년에 1억명을 깨고, 2055년에는 9,777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계되고 있다. 한편 저위추계(출생저위·사망중위)에 의하면, 합계특수출생률은 2026년에 1.03대까지 내려가고, 그 후 조금 상승을 보이며 2055년에는 1.06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는 2042년에 1억명을 깨고, 2055년에는 8,411만 명이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 중위추계(출생중위·사망중위)에서는 2055년에 1년간 태어나는 아동수가 5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1) 출생 추이의 가정에 대해서는, 1990년생 여성을 참조코호트(특정한 기간에 태어나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의 집단과 같이 통계상의 인자(因子)를 공유하는 집단)로서 결혼 및 출생 지표에 일정한 가정을 마련해, 1955년생 연장자코호트의 실적치로부터 참조코호트의 가정치를 거쳐, 2005년생의 코호트까지 서서히 변화하고, 이후에는 일정하게 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1990년생의 참조코호트의 결혼 및 출생지표는 예를 들어 평균 초혼연령은 중위 28.2세, 고위 27.8세, 저위 28.7세, 생애미혼율은 중위 23.5%, 고위 17.9%, 저위 27.0%, 부부완결출생아수는 중위 1.70명, 고위 1.91명, 저위 1.52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 인구 구조의 변화

2006년 장래 추계인구를 보면, 저출산의 진행이나 인구감소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인구구조 그 자체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3개로 분류) 인구규모 및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에 대하여 중위추계 결과를 보면, 우선 연소자인구(0~14세)는 2007년 1,724만 명에서 2009년에 1,600만 명대로 감소하고 2039년에 1,000만 명을 깨고 2055년에는 752만 명의 규모가 된다.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13.5%에서 계속 저하해 2025년 10.0%가 되어 2055년에는 8.4%가 된다. 다음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해서는 2007년 8,301만 명에서 계속 감소해 2055년에는 4,595만 명이 된다.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의 65.0%에서 계속 저하해서 2021년에는 60%를 밑돌아 2055년에는 51.1%가 된다.

[그림 1-1-12] 일본인구 구조의 추이와 전망



또 고령인구(65세 이상)에 대해서는, 2007년의 2,745만명에서 단카이(団塊)세대가 참가를 시작하는 2012년에 3,000만 명을 웃돌며 계속 서서히 증가하고 제 2 차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인구에 접어드는 2042년에 3,863만 명으로 피크를 맞이한다. 그 후에는 감소로 바뀌어, 2055년에는 3,646만 명이 된다.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1.5%에서 계속 상승하여 2055년에는 40.5%에 달한다. 고령인구 자체는 2042년을 피크로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연소자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계속됨에 따라 고령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계속 상승하게 된다.

다. 도도부현별의 인구의 전망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는, 2006년 장래 추계인구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35년까지 30년간의 도도부현별 인구의 장래추계도 실시하고 있다¹²⁾. 이 추계 결과에 의하면, 향후 인구가 감소하는 도도부현이 계속 증가하여 2010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는 42개 도부현, 2020년부터 2025년에 걸쳐서는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46개 도도부현, 2025년 이후는 모든 도도부현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35년 시점에서 2005년과 비교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은, 도쿄도와 오키나와현 뿐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감소하고 있다.

또 전국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을 지역블록별로 보면, 2005년에 가장 비율이 컸던 곳은 미나미칸토 블록(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카나가와현)이 27.0%이며, 그 점유율은 향후에도 서서히 상승해 2035년에는 29.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한편 그 밖의 지역 블록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거나 내지는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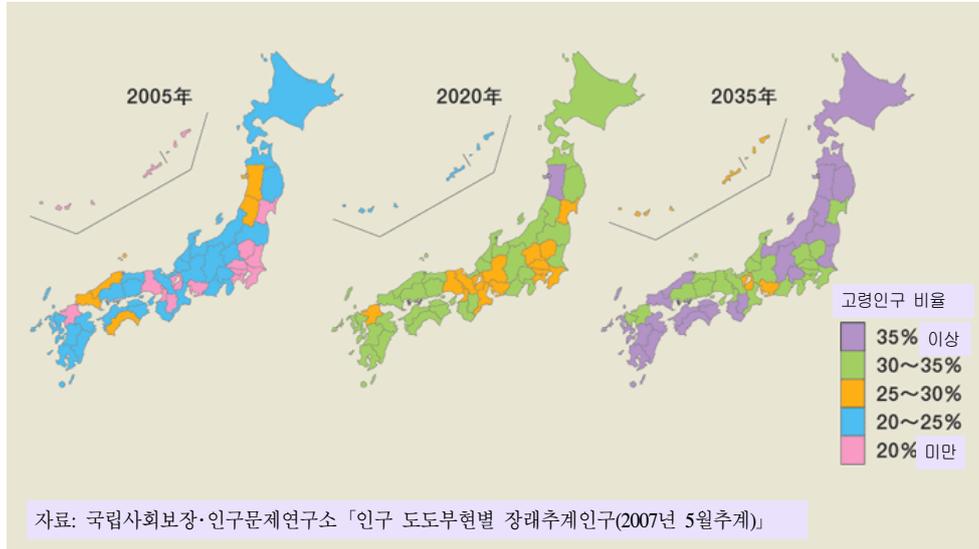
다음으로 연령별 인구의 추이를 보면 연소자인구 및 생산연령인구에 대해서는, 모든 도도부현에서 감소하고 각 도도부현의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경향이 되고 있다. 한편 고령인구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모든 도도부현에서 증가가 하고 있지만, 고령인구의 증가율은 대체로 축소경향에 있고 2020년 이후에는 고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이 나타난다. 단, 고령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연소자인구 및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각 도도부현 모두 일관하여 증가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도도부현은 2005년 시점에서는 하나도 없지만 2020년에는 31개 도현에서 30%를 넘고, 2035년에는 44개 도도부현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 덧붙여 시정촌의 고령인구 비율의 현황을 보면, 76개의 도시와 시골에서 40%를 넘고 있다(전체의 약 3.4%)

12) 일본의 도도부현별 장래 추계인구 (2007년 5월 추계)¹⁾에서는, 어떤 해의 남녀·연령별 인구를 기준으로, 여기에 인구동태율이나 이동율 등의 가정치를 적용해 장래인구를 계산하고 있다(코호트 요인법). 각 도도부현별로 코호트 요인법에 따라 장래인구의 추계치를 구한 후, 남녀·연령별 추계인구의 전도도부현의 합계가, 전국 추계(출생 중위·사망 중위)의 수치와 일치하도록 일률 보정을 실시한 것을 최종의 추계 결과로 하고 있다.

<표 1-1-13> 도도부현별 총인구의 전망

순위	2005년		2020년		2035년	
	전국	127,768	전국	122,735	전국	110,679
1	도쿄도	12,577	도쿄도	13,104	도쿄도	12,696
2	카나가와현	8,817	카나가와현	8,993	카나가와현	8,525
3	오사카부	8,792	오사카부	8,358	오사카부	7,378
4	아이치현	7,255	아이치현	7,359	아이치현	6,991
5	사이타마현	7,054	사이타마현	6,923	사이타마현	6,258
6	치바현	6,056	치바현	6,008	치바현	5,498
7	효고현	5,628	효고현	5,355	효고현	4,799
8	후쿠오카현	5,591	후쿠오카현	5,166	후쿠오카현	4,440
9	홋카이도	5,050	홋카이도	4,884	홋카이도	4,413
10	시즈오카현	3,792	시즈오카현	3,623	시즈오카현	3,242
11	이바라키현	2,975	이바라키현	2,790	이바라키현	2,451
12	히로시마현	2,877	히로시마현	2,706	히로시마현	2,393
13	교토부	2,648	교토부	2,533	교토부	2,274
14	미야기현	2,431	미야기현	2,231	미야기현	1,982
15	니가타현	2,360	니가타현	2,193	니가타현	1,875
16	나가노현	2,196	나가노현	2,021	나가노현	1,770
17	기후현	2,107	기후현	1,984	기후현	1,761
18	토츠기현	2,091	토츠기현	1,934	토츠기현	1,744
19	군마현	2,024	군마현	1,908	군마현	1,699
20	오카야마현	2,017	오카야마현	1,902	오카야마현	1,677
21	후쿠시마현	1,957	후쿠시마현	1,864	후쿠시마현	1,649
22	미에현	1,867	미에현	1,779	미에현	1,600
23	쿠마모토현	1,842	쿠마모토현	1,712	쿠마모토현	1,510
24	오кина와현	1,753	오кина와현	1,595	오кина와현	1,422
25	카고시마현	1,493	카고시마현	1,429	카고시마현	1,389
26	사가현	1,479	사가현	1,401	사가현	1,341
27	에히메현	1,468	에히메현	1,323	에히메현	1,127
28	나가사키현	1,437	나가사키현	1,321	나가사키현	1,117
29	나라현	1,421	나라현	1,319	나라현	1,104
30	야마구치현	1,385	야마구치현	1,298	야마구치현	1,103
31	아오모리현	1,380	아오모리현	1,266	아오모리현	1,051
32	이와테현	1,362	이와테현	1,234	이와테현	1,040
33	오이타현	1,216	오이타현	1,115	오이타현	971
34	이시카와현	1,210	이시카와현	1,093	이시카와현	960
35	야마가타현	1,174	야마가타현	1,084	야마가타현	925
36	미야자키현	1,153	미야자키현	1,055	미야자키현	912
37	도야마현	1,146	도야마현	1,019	도야마현	880
38	카가와현	1,112	카가와현	975	카가와현	802
39	아키타현	1,036	아키타현	927	아키타현	783
40	야마나시현	1,012	야마나시현	898	야마나시현	739
41	와카야마현	885	와카야마현	829	와카야마현	738
42	사가현	866	사가현	804	사가현	712
43	후쿠이현	822	후쿠이현	763	후쿠이현	676
44	도쿠시마현	810	도쿠시마현	730	도쿠시마현	622
45	고우치현	796	고우치현	708	고우치현	596
46	시마네현	742	시마네현	656	시마네현	554
47	돗토리현	607	돗토리현	561	돗토리현	495

[그림 1-1-14] 도도부현별 고령인구 비율의 전망



<표 1-1-15>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시정촌(상위 5개)(%)

시			정촌		
홋카이도	유바리시	39.7	군마현	나모쿠촌	53.4
홋카이도	미카사시	38.3	미에현	기와정	53.4
오이타현	타케타시	38.0	후쿠시마현	쇼와촌	52.4
이시카와현	스즈시	37.3	야마나시현	아시카와촌	51.8
홋카이도	우타시나이시	36.8	후쿠시마현	카네야마촌	51.8

자료: 총무성 「국세조사」(2005년)

2.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

가. 노동력 인구의 감소

앞에서 말한 것처럼, 2006년 장래 추계인구를 보면 2055년에는 합계특수출생률이 1.26, 총인구가 9,000만 명을 밑돌고 그 4할(약 2.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사회는 단순한 인구규모의 축소가 아니고 고령자수의 증가와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라고 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일본의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염려된다.

예를 들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출생자수 감소에 의한 청년노동력의 감소나, 고령자의 은퇴 증가에 따라 노동력인구는 고령화 하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노베이션(innovation) 추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자 등 근로의욕과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의 노동시장으로의 참가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 만들기를 강력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¹³⁾. 이러한 시책을 강구함에 따라 노동시장으로의 참가가 진행된다면, 2030년 시점에서 6,180만 명의 수준에까지 노동력인구의 감소를 억제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그림 1-1-16 참조).

노동력인구 감소가 생기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에 유의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젊은이, 여성, 고령자 등 일 할 의욕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의 취업 참가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태어날 세대가 노동력화하는 2030년 이후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속도의 가속화에 의해 한층 더 급속히 노동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년, 여성, 고령자등의 노동시장 참가가 진행되지 않고 저출산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2050년의 노동력 인구는 4,228만 명으로, 현재(2006년) 6,657만 명의 약 2/3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고령화율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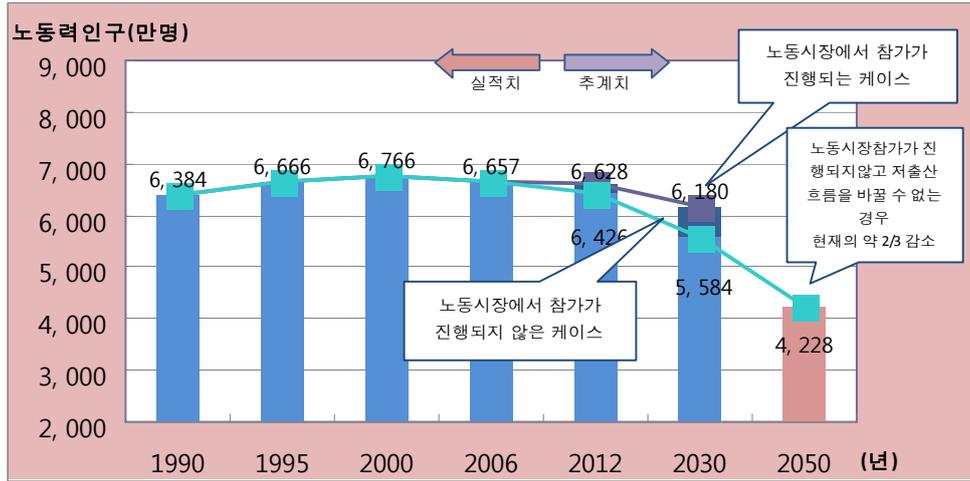
저출산의 진행에 따른 급속한 인구감소는 노동력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외에도 고령인구의 증대에 의한 연금이나 의료, 개호(介護)비 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지지하는 현역세대의 인구 및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저하해가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급부내용의 개선이나 급부 부담의 균형 등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밖의 인구감소에 의한 사회적 영향으로는, 지방에서 아동수가 적어지는 반면 고령자는 증가하고 특히 과소지역(過疎地域)에서는 방범, 소방 등과 관련된 자주적인 주민 활동을 비롯하여 취락(聚落)이라고 하는 공동체 유지조차도 곤란한 상황에

13) 노동력인구란, 15세 이상의 사람으로 취업자 및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일이 있으면 바로 일할 수 있지만 일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완전실업자)도 포함된다. 해당 연령인구에 차지하는 노동력인구의 비율을 노동력률이라고 한다.

처하게 되는 등 지역의 존립기반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1-16] 노동력인구의 추이와 전망



자료: 실적치는 총무성 「노동력조사」, 2030년까지의 추계치는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 추계 (2008년 2월 「2007년 노동력 수급(수요와 공급)추계-노동력 수급모델에 따른 장래추계 결과」), 2050년의 노동력인구는 2030년 이후의 성·연령계층별 노동력율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인구 장래추계인구(2006년 12월 추계)」의 중위 추계를 바탕으로, 후생노동성 사회보장담당참사관실에서 추계.

주: 「노동시장에서 참가가 진행되지 않은 케이스」라는 건, 성·연령별 노동력율이 2006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것임. 「노동시장에서 참가가 진행되는 케이스」는 각종 고용정책을 강구함에 따라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노동시장에서 참가가 실현된다고 가정한 케이스. 이 추계에서 세금·사회보장제도 등의 노동력 수급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노동력 수급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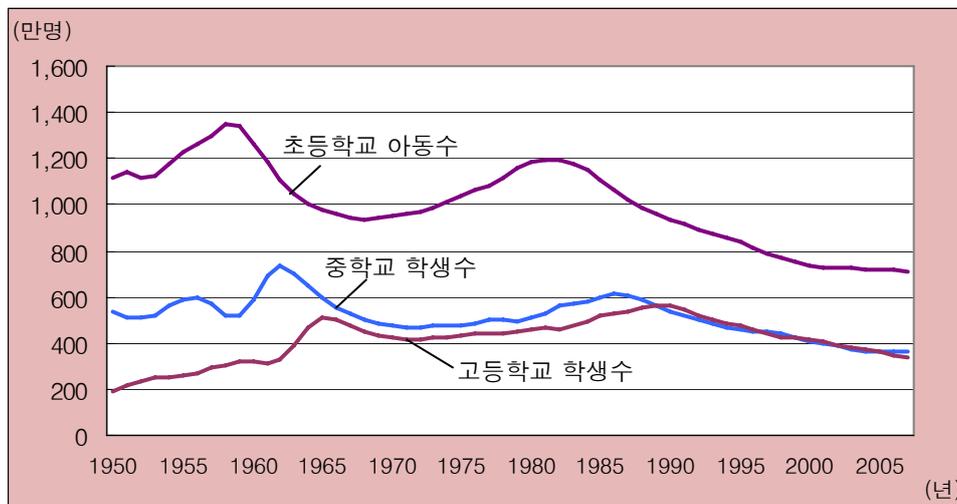
칼 럼

가까운 지역에서 본 저출산의 영향 - 아동·학생수, 학교수의 감소

저출산의 영향은 지역 학교의 아동·학생수 등의 추이에 나타나고 있다.

우선 초등학교 아동수의 추이를 보면,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81년도의 1,192만 4,653명 이후 해마다 감소하여, 2007년도에는 1950년대 후반 피크시의 약 절반인 713만 2,874명까지 감소하고 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생수 추이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경향이며, 중학교는 1986년도에 610만 5,749명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361만 4,552명으로, 고등학교는 1989년도에 564만 4,376명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는 340만 6,561명으로까지 각각 감소하고 있다.

[그림 1-1-17] 아동·학생수의 추이(초·중·고교)



자료: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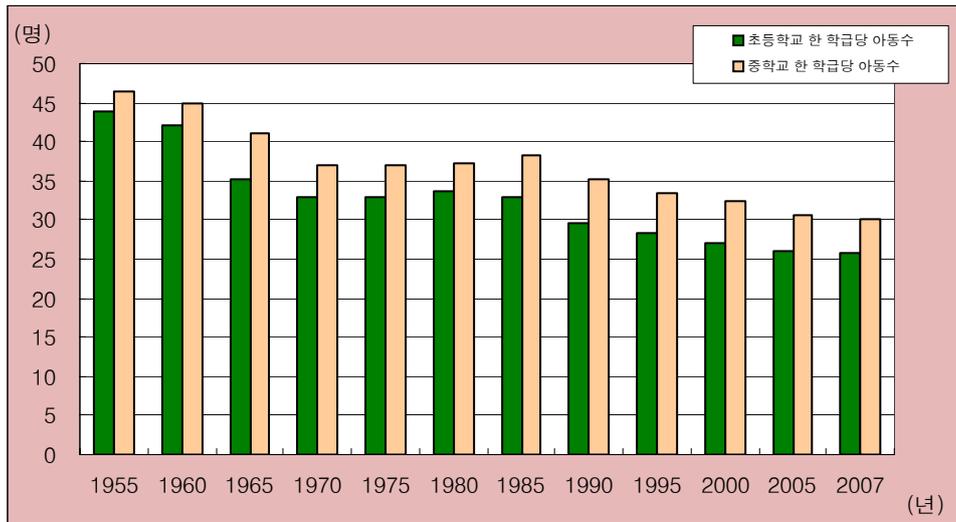
1학급당 아동·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1955년도 43.8명에서 2007년도 25.7명으로 약 18명이 감소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의 중학교 학생수의 추이를 보면 46.5명에서 30.2명으로 약 16명이 감소하고 있다.

학교수는 대략 50년 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1957년도 2만 6,988개교에서 2007

년도 2만 2,693개교로, 중학교는 1957년도 1만 3,622개교에서 2007년도 1만 955개교로 감소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1957년도 4,577개교에서 1988년도 5,512개교까지 상승 경향이었지만 그 이후 감소경향이 되어 2007년도에는 5,313개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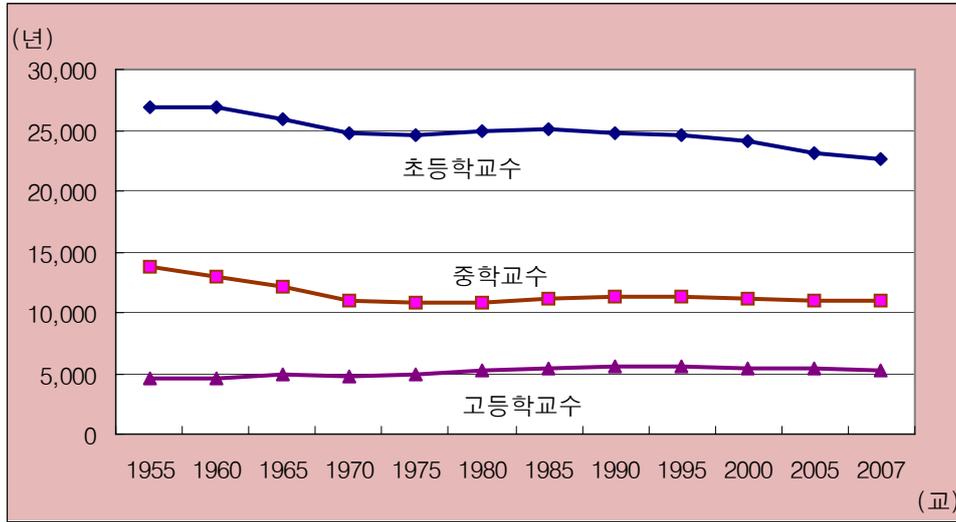
이 배경에는 아동·학생수의 감소에 의한 교육기관의 통합이 있다. 초·중학교의 통합에 의해 원거리 통학 등 아동·학생의 부담이 커지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수의 감소는, 아이끼리 서로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기르면서 성장해 갈 기회를 감소시켜 자립적으로 씩씩한 청년으로 자라나는 것을 더욱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아동이 모이는 축제나 이벤트가 자취를 감추거나 주민자치회에서 여름 축제를 해도 고령자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게 되는 등, 저출산의 영향은 지역의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18] 1학급당 아동·학생수 추이



자료: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를 바탕으로, 내각부 저출산 대책 추진실에서 작성

[그림 1-1-19] 학교수 추이



제1절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

1. 「1.57 쇼크」에서 「새로운 저출산 대책」까지

가.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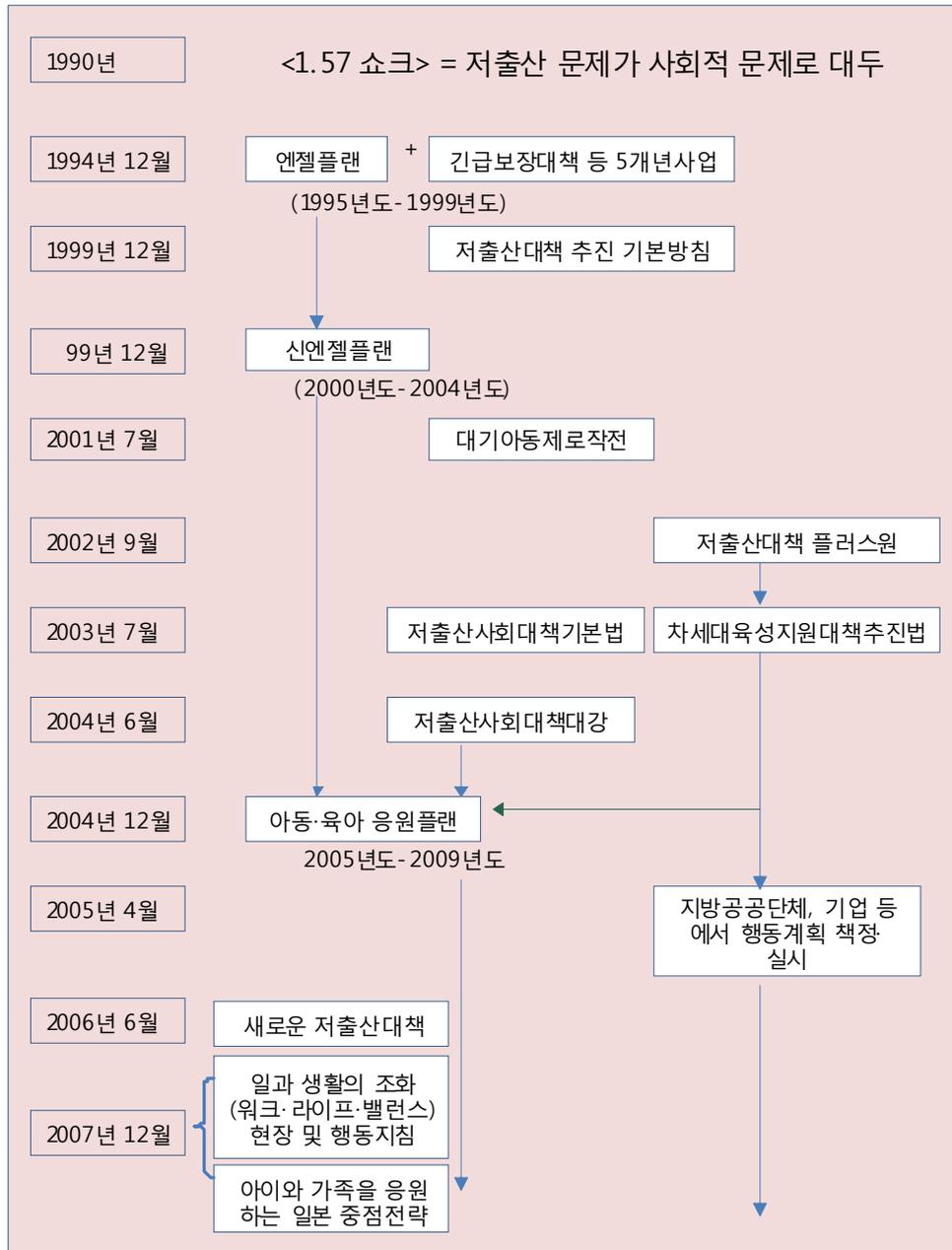
일본에서는 1990년의 「1.57 쇼크」¹⁾를 계기로, 정부는 출생률 저하와 아동수의 감소경향을 「문제」로서 인식하고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 등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쉬운 환경조성을 위한 대책 검토를 시작하였다.

최초의 구체적인 계획이 1994년 12월 문부, 후생, 노동, 건설의 4 대신(大臣)의 합의에 의해 책정된 「향후 육아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에 대하여」(엔젤플랜)을 통해 향후 10년간 실시할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을 정한 계획이었다. 엔젤플랜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원의 양적확대와 영아(0~2세아)보육과 연장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충실, 지역 육아지원 센터 정비 등을 꾀하기 위한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이 책정되어 1999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정비를 시작했다.

그 후 1999년 12월 저출산 대책 추진 관계각료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추진 기본 방침」이 결정되어, 동년동월(同年同月) 이 방침에 입각한 중점시책의 구체적인 실시 계획으로서 대장(大藏), 문부, 후생, 노동, 건설, 자치의 6대신(大臣)의 합의를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하여」(신엔젤플랜)가 책정되었다. 신엔젤플랜은 종래의 엔젤플랜과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사업을 개선한 것으로 2000년도를 시작연도로 한 2004년까지의 계획이었다. 최종연도에 달성해야 할 목표치 항목에는 기존의 보육서비스 관련 정책 뿐만이 아니라 고용, 모자보건·상담, 교육 등 사업을 포함하였다.

1) 1990년의 1.57쇼크란, 전년(1989년)의 합계특수출생률이 1.57과 「병오년」이라고 하는 특수요인에 의해 과거 최저였던 1966년의 합계특수출생률 1.58을 밑돌았던 것이 판명되었을 때의 충격을 가리키고 있다.

[그림 1-2-1] 저출산 대책의 경위



나.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 추진법

2002년 9월 후생노동성에서 정리한 「저출산 대책 플러스 원」에서는 종래의 대책이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의 관점 중에서 특히 보육에 관한 시책을 중심으로 한 것인 것에 대하여 육아를 담당 하는 가정의 시점에서 보았을 경우 보다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대책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남성을 포함한 일하는 방법의 개선」, 「지역의 차세대 지원」, 「사회보장으로 차세대 지원」, 「아동의 사회성 향상과 자립추진」이라고 하는 4가지를 중심으로 사회전체가 일체가 되어 종합적인 대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과 지역의 육아능력 저하에 대응하고, 차세대를 짊어질 아동을 육성하는 가정을 사회전체가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저출산 대책추진관계 각료회의에서 「차세대 육성지원에 당면한 대책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 후 2003년 7월, 이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으로 하여금 향후 10년간 집중·계획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 추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차세대 육성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실시해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²⁾.

일반사업주의 행동계획 책정에 대해서는 301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 300명 이하는 노력 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행동계획책정에 관한 규정은 200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에 입각하여, 기업이 행동계획으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켰을 경우, 인정마크 「쿠루민(그림 2-2-1 참조)」을 2007년 4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2) 구체적으로는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주는 국가가 책정한 행동계획책정지침에 근거하여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의 실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시하려고 하는 대책의 내용 및 그 실시 시기 등을 정한 행동계획을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 1-2-2]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의 세 가지 비전과 네 가지 중점과제



다. 저출산 사회대책 기본법과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大綱)

2003년 7월 의원입법에 의해 「저출산 사회대책 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 입각하여 내각부에 특별기관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모든 각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저출산 사회대책 회의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의 지침으로써, 종합적이며 장기적으로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의 대강 책정을 정부에서 의무화하여 2004년 6월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이 저출산 사회대책 회의를 거쳐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에서는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을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흐드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아동을 낳아 기르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하여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책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육아가정이 안심과 기쁨 속에서 육아에 임할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응원한다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책을 국가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세 가지 비전」, 「네 가지 중점과제」, 「28가지 구체적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라. 아동·육아 응원플랜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에 포함된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4년 12월 저출산 사회대책 회의에서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에 근거한 구체적 실시계획」(아동·육아 응원플랜)이 결정되어 2005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다.

아동·육아 응원플랜은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에서 세운 네 가지 중점 과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과 함께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 마련해야 할 구체적인 시책내용과 목표를 세운 시책의 항목수가 약 130에 이르는 종합적인 계획이다. 또 아동·육아 응원플랜에서는,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눈높이도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약 10년 후를 전망한 「목표로 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육아 응원플랜에 포함된 목표치는 책정 당시 전국의 시정촌(市町村)이 책정 작업중이었던 차세대 육성지원에 관한 행동계획의 육아지원서비스 집계치를 기초로

하여 설정되어 있다. 전국의 시정촌(市町村) 계획과 연결시킴으로써, 아동·육아 응원 플랜 추진은 전국의 시정촌(市町村) 행동계획 추진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림 1-2-3] 아이·육아 응원플랜」의 개요

[네가지 중점]	[2009년까지 5년간 강구할 시책과 목표(예)]	[목표로 하는 사회의 모습 (약 10년후를 전망(예))]
<p>청년의 자립과 씩씩한 어린이의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시험고용의 적극적인 활용(상용고용률 80%를 2006년도까지 달성) •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사업의 총실(기준을 충족시킨 희망자 전원에게 장학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 • 학교에서의 체험활동 충실(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종합적이고 정돈된 체험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 의욕을 가지고 취업하여 경제적으로도 자립 [프리티어 약 200만명, 청년실업자 무직자 약 100만명 각각의 인원이 감소되도록 노력한다.] • 교육을 받을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가 경제적 이유에서 수학을 단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각종 체험활동 기회를 충실히 하여, 많은 어린이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p>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근로 방식의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행동 계획책정, 실 시지원과 모범 사례의 보급(차세대법 인정기업수를 계획책정 기업의 20%이상, 패밀리 프렌들리 표창기업 700개 기업) • 개인인의 생활을 배려한 노동시간의 설정 개선을 위한 노사의 자주적인 대처 추진, 장시간에 걸친 시간외 노동의 시정(장시간에 걸친 시간외 노동을 실시하고 있는 노동자를 1할 이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육아휴업 등을 취득 [육아휴업취득률 남성 10%, 여성 80%, 초등학교 수학기까지의 근무시간 단축 등의 조치 보급률 25%] • 남성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확실하게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육아기에 있는 남성이 육아에 사용하는 시간이 다른 선진국 수준이 되도록] • 근로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육성·활용하여, 노동생산성이 상승하고, 육아기 남녀의 장시간 노동을 시정.
<p>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원, 아동관, 보육센터 등에서 중, 고등학생이 유아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모든 시설에서 기회제공) • 전국의 중, 고등학교에서 유아 이해 교육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청년이 육아에 긍정적인 ([아이들은 귀엽다], [육아를 통해 자신도 성장]) 이미지를 가지게 한다.
<p>육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과 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육아지원 거점 만들기(만남의 광장 사업, 지역육아 지원센터를 전국 6,000개소에서 실시) • 대기아 동제로작 전을 새로이 전개(대기아동이 많은 시정촌을 중심으로 보육원 수용 아동수를 215만명으로 확대) • 아동학대방지 네트워크 설치(모든 시정촌) • 소아구급 의료체제의 추진 (소아구급 의료권 404지구를 모두 커버) • 육아 배리어 프리 추진(건축물, 공공교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의 바닥 높이 시정 배리어 프리 지도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어디에서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거리낌 없이 부모와 아이들이 모여서 상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모든 중학교구에 육아 거점시설을 한 곳이상 설치한다.) • 전국 어디에서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모든 시정촌에서 대기아동을 50인 이하로 만든다.] •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아동학대사 박멸을 목표로 한다.] • 전국 어디에서나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임신 부와 아이를 동반한 사람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한다.[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증가]

마. 새로운 저출산 대책

2005년 일본은 1899년 인구동태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하여 출생자수는 106만 명, 합계특수출생률은 1.26으로 모두가 과거 최저를 기록했다. 이러한 예상 이상의 저출산의 진행에 대응하고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확충, 강화, 전환을 꾀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정부·여당의 합의를 얻어, 저출산 사회대책 회의에서 「새로운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이하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한다.)가 결정되었다.

「새로운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확충, 강화, 전환을 꾀하기 위하여 ①사회전체의 의식개혁과 ②아동과 가족을 소중히 하는 관점에서의 시책 확충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중시하여 40개 항목에 걸친 구체적인 시책을 들고 있다(그림 1-2-4).

특히 가족·지역의 유대감 형성과 사회전체의 의식개혁을 이루기 위한 국민운동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점, 부모가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모든 육아가정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육아지원책 강화를 내세우는 점, 아동의 성장에 따른 육아지원의 요구가 변해가는 것에 주목해 임신·출산에서 고교·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성장에 따른 생애주기별로 4기로 나누어 육아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저출산 대책」은 2007년도 예산 등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제도의 유아가산 창설(2007년 4월부터, 3세 미만아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월액을 종래의 5,000엔에서 일률적으로 1만엔으로 인상), 생후 4개월까지 전호방문사업(안녕하세요 아기사업) 실시(생후 4개월까지의 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해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양육환경 등을 파악), 육아휴직 급여율 인상(육아휴직의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부터 육아휴직 급여율을 휴직전 임금의 40%(그 중 직장 복귀 후 10%)에서 50%(동 20%)로 잠정적으로 인상(2009년도까지의 시한조치), 방과후 아동플랜 추진(각 시정촌에서 방과후 아동교실과 방과후 아동클럽을 일체적 혹은 제휴하여 실시하는 「방과후 아동플랜」을 2007년도에 창설해 원칙적으로 모든 초등학교구에서 방과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등에 필요한 예산조치, 기업이 일정 요건을 채우는 사업소 내 탁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강구되었다.

[그림 1-2-4] 새로운 저출산 대책의 개요



2. 국민의 결혼·출산에 관한 희망과 현실의 괴리를 둘러싼 분석

가. 국민의 희망을 반영한 인구 시산(試算)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2006년 12월 추계)」(이하 「2006년 장래 추계인구」라고 한다)보고 이후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심의회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한 특별부회」(이하 「특별부회」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출생 등에 대한 희망을 반영한 인구 시산(試算)」(2007년 1월)(이하 「희망을 반영한 인구 시산(試算)」라고 한다)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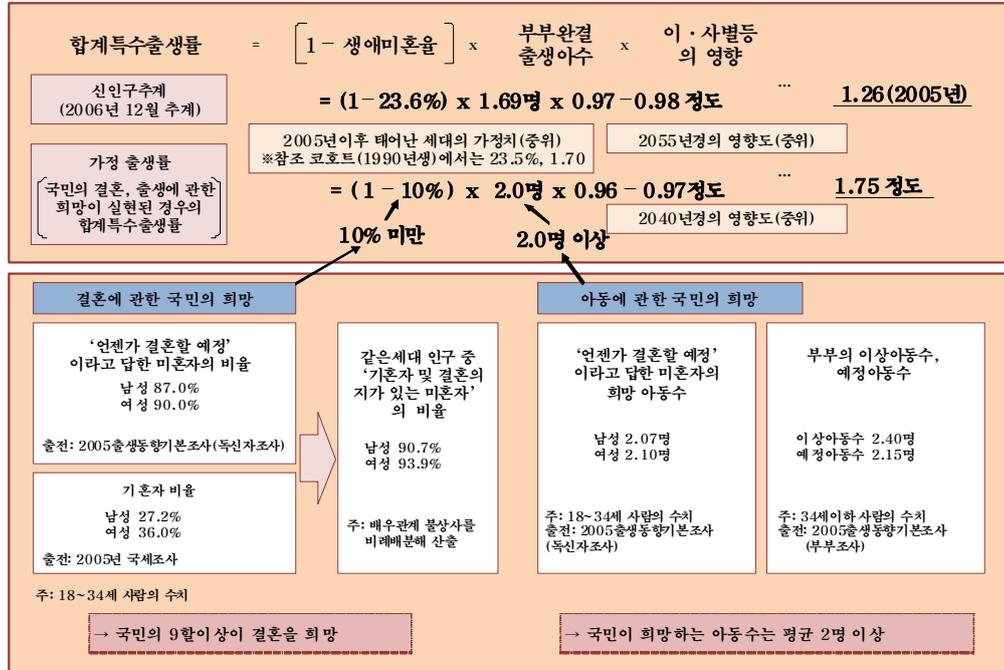
2006년 장래 추계인구에서는, 참조 코호트³⁾로서 설정되어 있는 1990년생 여성의 생애미혼율은 23.5%, 부부완결 출생아수는 1.70명으로 가정되고 있다. 한편, 「출생동향 기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미혼자의 9할은 머지않아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혼자 및 결혼 희망이 있는 미혼자의 희망 아이수의 평균은 남녀 모두 2명 이상이다. 이러한 국민의 결혼이나 출생행동에 대한 희망이 일정 정도 실현되었다고 가정한 「희망을 반영한 인구시산(試算)」에서는 희망실현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추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희망이 모두 실현되는 케이스(생애미혼율 10%미만, 부부완결 출생아수 2.0명 이상)의 합계특수출생률 추계 과정은 [그림 1-2-5]와 같고, 지금부터 출생연령에 들어서는 1990년생의 여성이 50세가 되는 2040년 시점의 합계특수출생률은 1.75까지 상승한다⁴⁾. 이 경우 2055년의 총인구는 1억명 이상, 고령화율은 35.1%가 된다고 전망되고 있다(그림 1-2-6).

이와 같이, 2006년 장래 추계인구에서는 전회의 추계보다 한층 저출산·고령화가 진행한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지만, 「희망을 반영한 인구 시산(試算)」 결과는 국민의 결혼이나 출산·육아에 대한 희망과 실태와의 괴리가 해소될 때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3) 코호트란, 출생·결혼 등의 동시 발생집단을 의미하는 인구학상의 개념이다.

4) 이 추계의 전제로서 가정되는 출생률(1.75)은, 국민의 희망이 실현되었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생물학적인 사람의 출생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또 시책이 성공했을 때 사회적으로 달성 가능한 상한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2006년 장래 추계인구의 전체인 2055년에 1.26이라고 하는 수치와의 괴리를 얼마나 메워 가느냐를 논의의 소재로 할 것이 기대된다.

[그림 1-2-5] 희망이 모두 실현되는 케이스의 합계특수출생률은 1.75



자료: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한 특별부회」

[그림 1-2-6] 「출생 등에 대한 희망을 반영한 인구시산(試算)」(2007년 1월)의 결과
단위: 만명(총인구에 차지한 비율)

		2040년시점의 합계특수출생률	2005년 실적	2030년	2055년
총인구	희망을 전부 실현한 케이스	1.75	12,777	12,061	10,391
	장래추계인구 (2006년12월중위추계)	1.25	12,777	11,522	8,993
연소자인구 (15세미만)	희망을 전부 실현한 케이스	1.75	1,759(13.8%)	1,519(12.6%)	1,318(12.7%)
	장래추계인구 (2006년12월중위추계)	1.25	1,759(13.8%)	1,115(9.7%)	752(8.4%)
생산연령 인구 (15~64세)	희망을 전부 실현한 케이스	1.75	8,442(66.1%)	6,875(57.0%)	5,427(52.2%)
	장래추계인구 (2006년12월중위추계)	1.25	8,442(66.1%)	6,740(58.5%)	4,595(51.1%)
고령인구 (65세이상)	희망을 전부 실현한 케이스	1.75	2,576(20.2%)	3,667(30.4%)	3,646(35.1%)
	장래추계인구 (2006년12월중위추계)	1.25	2,576(20.2%)	3,667(31.8%)	3,646(40.5%)

자료: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한 특별부회」

나. 결혼·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별부회는 한층 더 이러한 국민의 결혼이나 출산·육아에 대한 희망과 현실의 괴리에 주목하여, 이 괴리를 낳고 있는 요인을 정리하였다. 그것에 따르면, 결혼에서는 경제적 기반, 고용·경력·장래 전망이나 안정성, 출산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의 전망,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확보의 정도, 둘째 아이 이후는 부부간의 가사·육아 분담 정도, 육아 불안의 정도, 셋째 아이 이후는 교육비의 부담감(단, 197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에서는 첫째·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부담감이 강하게 인식되는 경향)등이 있다.

결혼이나 출산은 당연히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희망실현을 방해하는 사회적인 요인이 존재해 그것이 장래의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생각하면, 이 괴리의 요인을 제거해 국민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경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불가결한 정책 과제이다.

[그림 1-2-7] 결혼·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2절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중점전략의 개요

1. 중점전략의 검토 경위

2006년 장래 추계인구에서 나타난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과 특별부회의 논의 정리 등을 근거로 하여, 2007년 2월 6일 저출산 사회대책회의에서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중점전략(이하 「중점전략」이라고 한다.)의 책정방침이 결정되어, 동회의 하에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중점전략 검토회의(이하 「중점전략 검토회의」라고 한다.)가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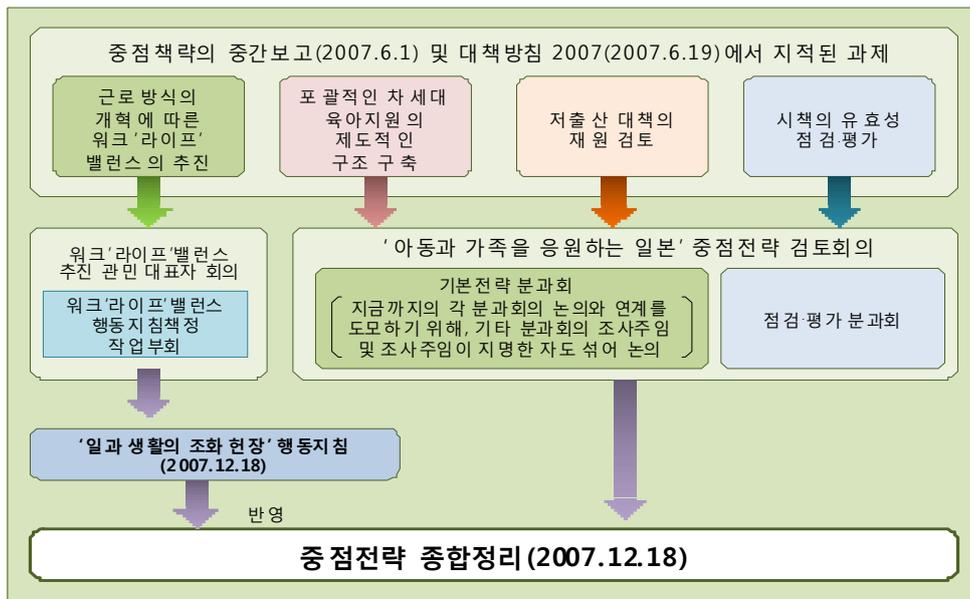
중점전략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결혼이나 출산·육아에 관한 국민의 희망과 현실의 괴리에 주목하여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춰 검토가 진행된 점이 특징이며, 4개의 분과회를 마련하여 검토가 진행되어 2007년 6월 중간보고를 거쳐 동년 12월에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중점전략의 중간보고에 대해 최우선 과제로 여겨진 근로방법 개혁과 관련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실현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내각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관계 각료, 경제계나 노동계, 지방의 대표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 관민 대표자회의」가 설치되어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현장」(이하 「현장」이라고 한다.) 및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이하 「행동지침」이라고 한다.)이 결정되었다(제3장 참조). 현장 및 행동지침은 「수레의 양쪽바퀴」의 한 방향으로서 중점전략에 반영되고 있다.

[그림 1-2-8] 중점전략의 검토체제(구성원)



[그림 1-2-9] 중점전략과 현장·행동지침 책정을 위한 검토경위 및 체제 (중간보고 이후)



주: 본 책에서는 중점전략 종합정리 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게재하고 있다.(본 절의 6 및 제3장 제2절의 5)

2. 중점전략 책정의 배경

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로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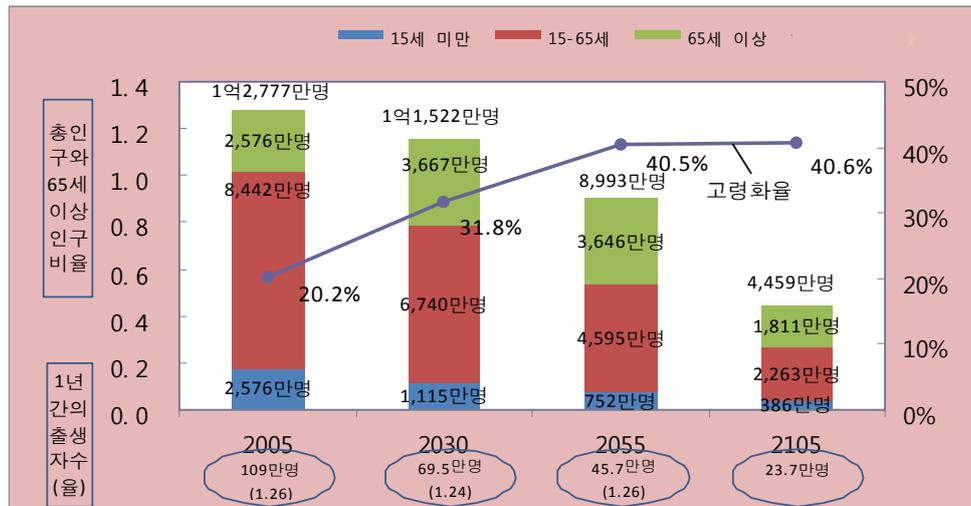
2006년 장래 추계인구에서는 일본은 향후 한층 저출산·고령화가 진행하여 본격적인 인구감소사회가 도래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인구감소사회는 단순한 인구규모의 축소가 아니고 고령자수의 증가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일본의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염려된다(제1장 제2절 참조).

또 노동력인구는 청년이나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가 진행되지 않고 현재의 노동력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인구의 감소를 웃도는 속도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 경우 2030년까지 노동력인구는 1,00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 이후에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속도의 가속에 의해 한층 더 급속한 노동력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10] 향후 일본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2006년 12월 추계)

○ 일본의 합계특수출생률은 2005년에 1.26으로 과거 최저를 갱신.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 신인구추계(중위)에 따르면 2055년에 태어날 아동수는 현재의 약 4할, 고령화율은 현재의 2배(40.5%),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현재의 1/2 가까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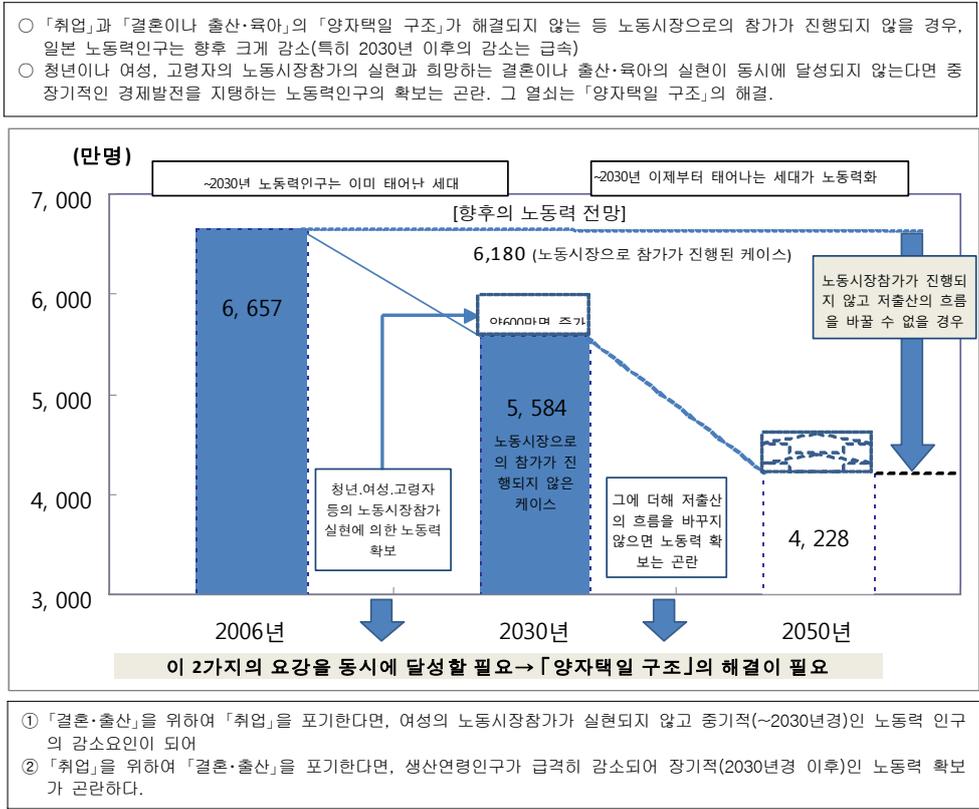
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 장래 추계인구(2006년 12월 추계)」(출생중위, 사망중위의 경우)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전망한 2가지 과제

한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2006년 장래 추계인구의 전제가 되고 있는 향후 결혼이나 출산의 동향(생애미혼율 23.6%, 부부완결 출생아수 1.69명, 2055년의 합계특수출생률 1.26)과 국민이 희망하는 결혼이나 출산(약 9할이 결혼을 희망, 희망 자녀수는 2명 이상)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 일본 경제사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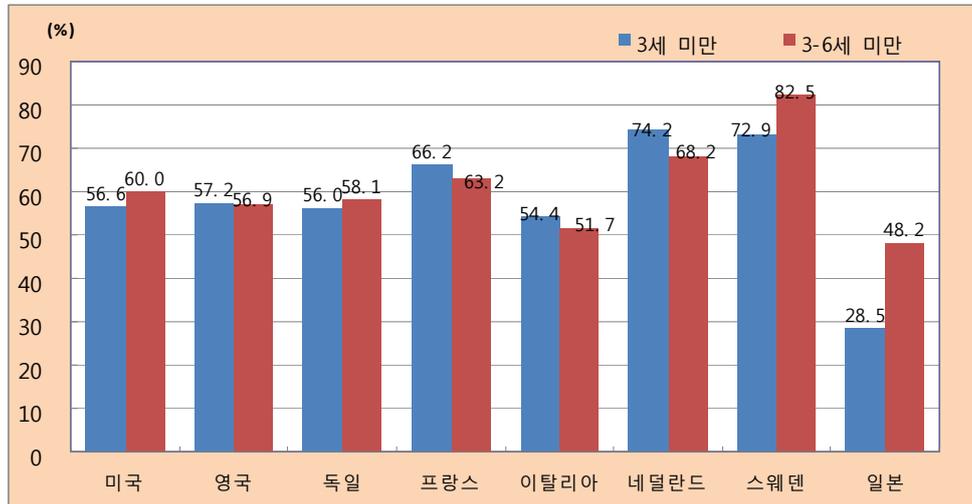
- ① 향후 태어나는 아이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2030년경까지)의 노동력인구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가」를 실현할 것
- ② 2030년 이후에 예상되는 급속한 생산연령인구 및 노동력인구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희망하는 결혼이나 출산·육아」를 가능한 한 빨리 실현할 것(그림 1-2-11).

[그림 1-2-11] 노동시장 참가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의 노동력 추이



주: 2030년까지의 노동력인구는 고용정책연구회추계의 노동시장참가가 진행되지 않은 케이스(2007년11월 제7회 연구회 자료에 따름). 단, 2050년의 노동력인구는 2030년 이후의 성·연령단계 별 노동력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2006년 장래 추계인구(중위추계)를 바탕으로 후생노동성 사회보장담당장관실에서 추계.

[그림 1-2-12]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취업률 비교(2002년)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5

다. 『수레의 양쪽바퀴』가 되는 2가지 대책

그렇지만 오늘날 여전히 임신·출산을 계기로 이제까지 취업하고 있던 여성의 7할이 이직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유난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취업과 출산·육아는 양자택일 상황이 되고 있어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2가지 과제 of 동시달성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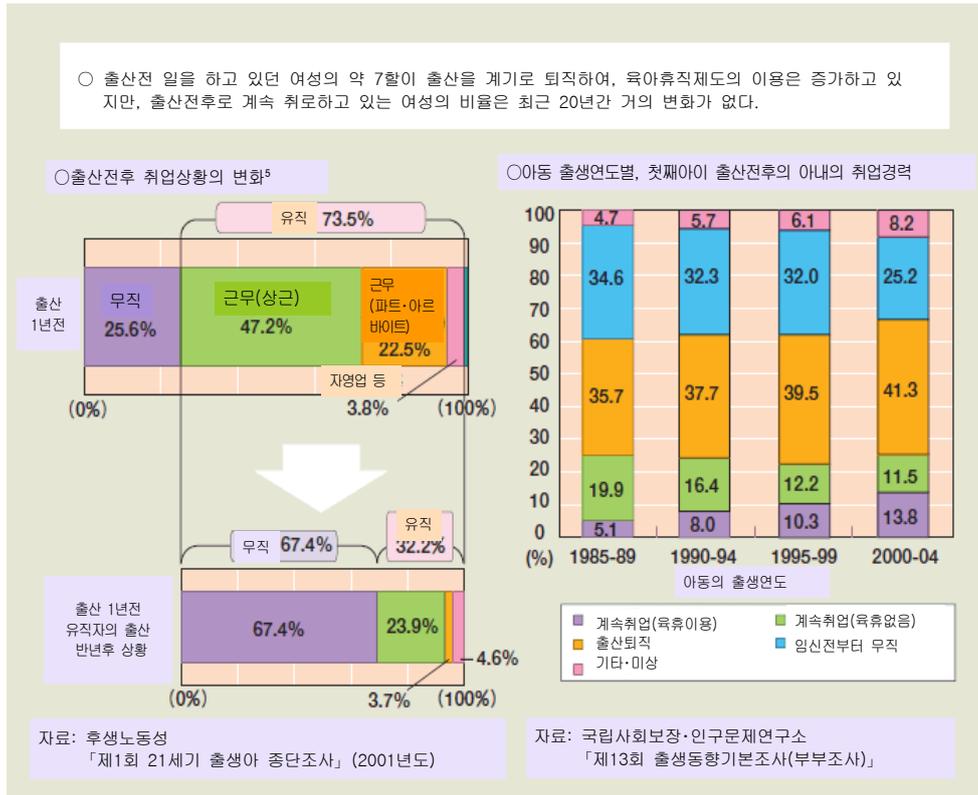
여성을 시작으로 근로의욕을 가진 모든 사람의 노동시장 참가를 실현하면서, 국민이 희망하는 결혼·출산·육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출산·육아의 양자택일 구조의 해소가 필요하고 「근로방법의 개선에 따른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실현」 및 그 사회적 기반이 되는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의 구조 구축」을 『수레의 양쪽바퀴』로서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30대 중반을 맞이하여 육아세대의 연령층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다. 또, 취업과 출산·육아의 양자택일 상황이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결혼이나 출산·육아에 관하여 국민이 희망을 가지는 것조차 어려워져 희망수준 자체의 저하도 염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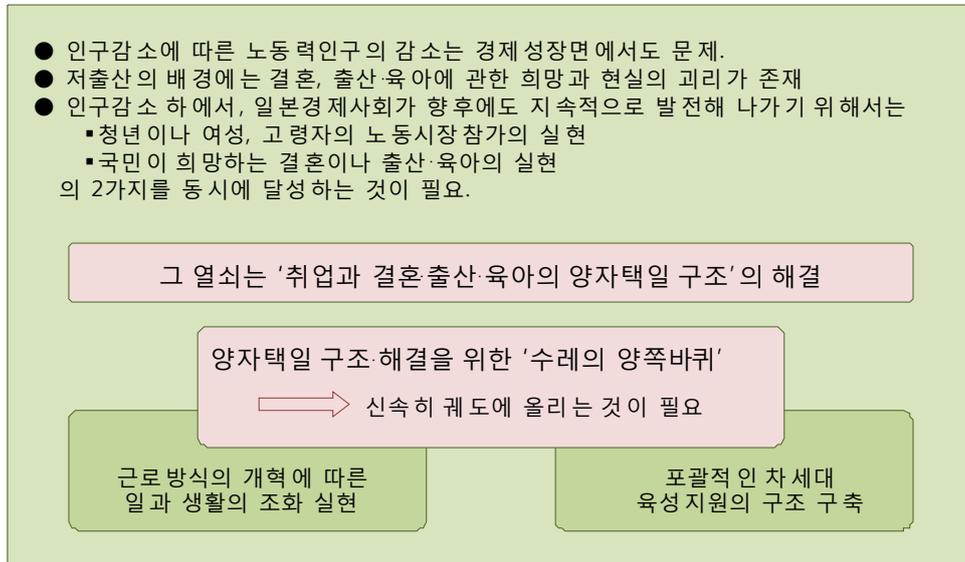
육아세대 연령층의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전 혹은 결혼이나 출산·육아에 관한 국민의 희망수준이 저하하여 그것이 한층 더 저출산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이러한 「수레의 양쪽바퀴」가 되는 2가지 대책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궤도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2-13] 취업과 결혼·출산·육아의 「양자택일」상황



[그림 1-2-14] 중점전략 책정의 비전



3.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에 관해서는 2007년 12월,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 국민 대표자회의에서 현장 및 행동지침이 결정되어, 향후 이것들을 근거로 하여 국민일체가 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소개한다.

4.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의 구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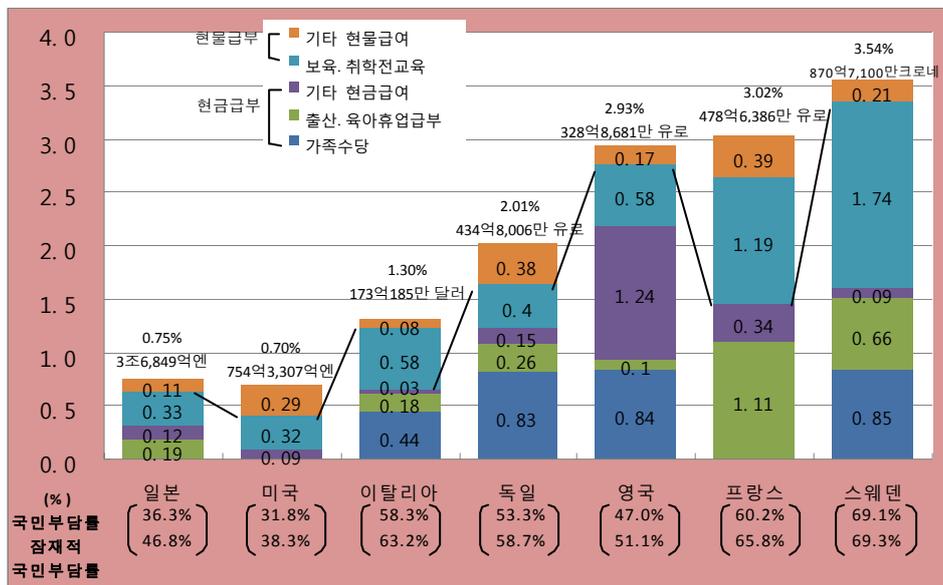
가. 현행의 급부·서비스의 제도적인 과제

현행의 차세대 육성지원과 관련한 급부·서비스 전체를 담당하는 아동복지, 모자보건,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각 제도는 각각의 제도의 철학에 근거하여 급부내용이나 비용부담의 방법 등이 정해져, 어떠한 지원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급부가 보장될까 체계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또 유럽 국가에 비해 현금급부, 현물급부를 포함한 가족정책 전체의 재정적인 규모가 작고, 가족 정책을 유지하는 부담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합의도 형성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⁵⁾.

유럽 국가의 경험에 비추면 현금급부, 현물급부의 균형 잡힌 가족정책의 충실이 필요하다. 향후 일본이 급속한 인구감소, 노동력인구의 감소에 직면하는 가운데, 누구나 의욕과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진행시켜 취업률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생률을 회복한 프랑스 등에서는 최근 보육서비스의 충실 등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축으로 한 가족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그림 1-2-15] 각국의 가족관계 사회지출 GDP 대(對)비의 비교(2003년)
[가족관계 급부의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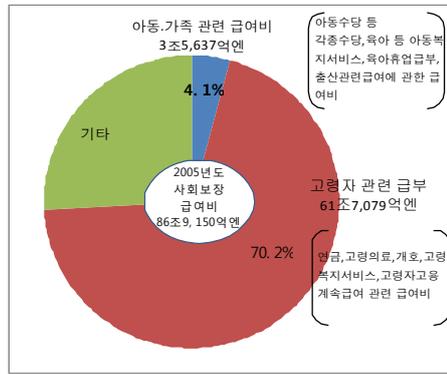


주: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7
(일본의 GDP에 대해서는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 「국민경제계산(장기시계열)」에 따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면, 특히 현물급부의 충실을 도모하여 여성을 비롯해 근로의 욕을 가진 모든 사람의 노동시장 참가와 국민이 희망하는 결혼·출산·육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5)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5년도 사회보장 급부비」를 보면, 고령자 관계 급부비는 61조 7,079억엔(전체의 70.2%)인데 비해, 아동·가족관계 급부비는 3조 5,637억엔(전체의 4.1%)이다. 덧붙여, 본 통계는 ILO 기준이며, OECD 기준의 사회지출과 비교해 시설 정비비 등 직접 개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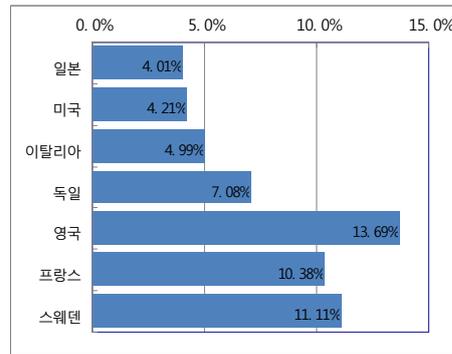
[그림 1-2-16] 사회보장급여비 중 아동·가족관계 급여비 비율



자료: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5년도 사회보장 급여비」

주 「2005년도 사회보장 급여비」는 ILO기준으로, OECD기준의 사회지출과 비교해 시설정비비 등의 직접개인에게 이전되는 비용은 계상되지 않았던 등 차이가 있다(예를들어 일본의 2003년을 비교하면, ILO기준은 3조1,626억엔, OECD기준 2조6,849억엔)

OECD기준에 따른 사회지출 가운데, 가족분야의 지출비율(2003년)
[사회보장관련급여 전체에 대한 가족관련 급여의 비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7

덧붙여 중점전략의 중간보고(2007년 6월)에서는, 최근 출생률을 회복하고 있는 프랑스의 가족관계 급여규모를 일본의 인구구조에 기계적으로 적용시켰을 경우, 약 10.6조엔(GDP비에서는 약 2%)에 달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⁶⁾ (그림 1-2-17).

6) 프랑스의 가족정책에 필요한 비용은, 공적 부담과 함께 사업주가 급여 총액의 5.4%(급여 총액의 약 50%에 상당)를 지출하는 등 고수준의 기업 지출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다.

[그림 1-2-17] 프랑스의 가족관계 지출(2003년)의 일본의 인구규모로의 환산

· 프랑스의 가족관련 사회지출을 기계적으로 일본 인구에 적용하여 산출한 것.
 · ()안의 엔표시의 금액은 환율 변동률 받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
 ※ 환율은, 1유로=149엔 (2007년 1~6월 재정외국환율)

	프랑스(2003)			일본 인구규모 환산(2005)		(참고) 일본의 가족관련 사회지출(2003)
	가족관련 사회지출 ①	지출대상인 연령계급 인구 ③=①÷②	1명당 가족관련 사회지출 ③=①÷②	지출 대상이 되는 연령계급 인구④	가족관련 사회지출 ③ X ④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17,569백만유로 (2조6,178억엔)	20세 미만 1,566만명 (25.4%)	1,122유로 (16.7만엔)	20세 미만 2,418만명 (18.9%)	(4.0조엔 정도)	9,242억엔 《2007예산》 ↳ 1.6조엔 정도
출산·육아휴직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5,382백만유로 (8,019억엔)	3세 미만 239만명 (3.9%)	2,250유로 (33.5만엔)	3세 미만 328만명 (2.6%)	(1.1조엔 정도)	5,755억엔
육아·취학전교육 (Day care/home-help services)	18,782백만유로 (2조7,985억엔)	6세 미만 467만명 (7.6%)	4,022유로 (59.9만엔)	6세 미만 679만명 (5.3%)	4.1조엔 정도)	1조6,276억엔
기타	6,131백만유로 (9,135억엔)	20세 미만 1,566만명 (25.4%)	391유로 (5.8만엔)	20세 미만 2,418만명 (18.9%)	(1.4조엔 정도)	5,576억엔
가족관련 사회지출 《GDP대비》	47,864백만유로 (7조1,317억엔)				(10.6조엔 정도)	3조6,849억엔 《0.75%》

참고지표

일 본 프랑스	총인구(2003)① 1억2,769만명 6,173만명	GDP(2003) ②		1명당 GDP②÷① 387만엔 2.57만유로(383만엔)
		493.7조엔		
		1조5,852억유로(236.2조엔)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7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일본의 GDP는 국민경제계산(내각부), 인구는 1003년 국세조사(총무성), 2003년10월1일 현재인구추계(총무성)

나. 새로운 구조 구축의 필요성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을 추진하여 국민의 희망하는 결혼이나 출산·육아의 실현을 유지하는 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급여·서비스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급여·서비스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모든 아동과 육아가정에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구조를 구축하고 각각의 지역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한 급여·서비스의 정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갈 필요가 있다.

<급여·서비스 재구축의 방향성>

- ① 부모의 취업과 아동 양육의 양립을 지지하는 지원
 - 출산 전부터 3세 미만의 시기
 - 취업희망자를 정부정책, 육아휴직, 보육 서비스로 커버할 수 있는 체제·구조 구축, 각각의 제도의 탄력화에 의한 다양한 선택을 지지하는 빈틈없는 지원
 -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시기 지원
 - 인정 어린이집과 단시간 근무의 보급·추진
 - 취학 연령기의 방과후 대책
 - 전 초등학교구에서의 「방과후 아동플랜」실시에 의한 공백지구 해소, 대상 아동 증가에 대응한 1학구 당 클럽수 증가, 보육원에서 방과후 클럽으로의 빈틈없는 이행과 적정한 환경 확보
- ② 모든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지지하는 대개인 급부·서비스
 - 모든 육아 가정에 대한 일시 보육 서비스 제도 개선
 - 모든 아동·육아가정에 대한 서비스로서 기능하도록 사업을 재구축하여 일정 수준의 서비스 이용을 보편화
 - 육아 세대의 지원 요구에 대응한 경제적 지원 실시
 - 육아 세대의 지원 요구에 대응하여 현금급여와 세금제도를 통해 종합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실시
- ③ 모든 아동의 건강한 육성의 기반이 되는 지역 대책
 - 임산부 건강진단지원 충실
 - 바람직한 진찰 횟수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 충실
 - 각종 지역 육아지원의 전면적인 전개와 당사자 주체의 대책 중시
 - 전 시정촌(市町村)에서 생후 4개월까지의 가정 방문을 실시, 초등학교구 모든 지역 육아지원 거점을 전면적으로 정비
 - 아동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맡길 곳 설치
 - 전 초등학교구에서 방과후 아동교실 실시(「방과후 아동플랜」)
 - 시설 기능 개선을 통하여 가정적인 환경에서의 충실한 양호 서비스 등 적절한 양육을 받게 되는 체제 정비

다. 현물급부를 우선시한 가족정책의 총실과 효과적인 재정투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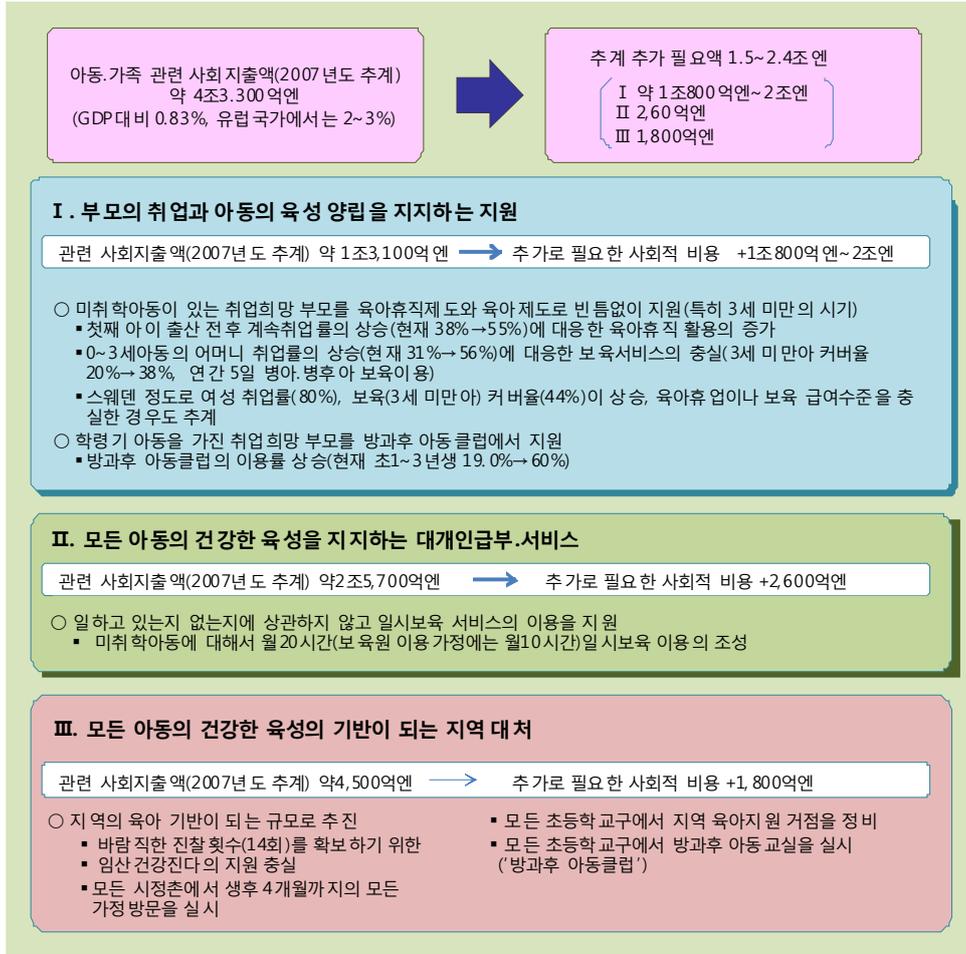
현재 OECD의 사회지출의 「가족」부문에 준거하여 일본의 아동·가족관계 사회지출 액수를 2007년도 예산 베이스로 추계하면, 대략 4조 3,300억엔(GDP의 0.83% 상당)이다. 이것에는 출산관계 비용이나 육아휴직 급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수당, 각종 아동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점전략 검토회의의 기본전략 분과회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을 추진하여 국민이 희망하는 결혼이나 출산·육아의 실현을 지지하기 위한 급부·서비스에 대해서 일정한 정비 수준을 가정하여 추계한 바에 의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인 비용은 1.5~2.4조엔이 된다(그림 1-2-18).

라. 차세대 육성지원의 사회적 비용은 「미래로의 투자」

차세대 육성지원의 사회적 비용은, 이것을 단지 사회적 비용 증가로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해 일과 출산·육아의 양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여성의 노동력의 시장 참가가 실현되고 국민이 희망하는 결혼이나 출산·육아의 실현을 통해 미래 노동력인구의 감소완화에 따라 큰 이익이 생기므로 「미래로의 투자」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지금 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지지하는 노동력을 확보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경제 성장의 제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장래에 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외에도 육아의 고립화가 한층 더 진행되어 아동학대 위험이 증가하는 등, 보다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도 염려된다.

[그림 1-2-18]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실현과 희망하는 결혼이나 출산·육아실현을 지원하는 급여·서비스의 사회적 비용 추계



- 주1: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에서 대책을 추진한 경우에 달성한 수준으로 설정된 후의 수치목표와 정합하여 계산하고 있다.
- 주2: 현행 급여·서비스단가(이용자 부담분은 포함하지 않음)을 베이스로 한 추계로 질의 향상, 사업 실시주체의 운영모델·채산베이스, 보육원과 유치원의 보육료 등 이용자 부담 등의 관계자 비용부담의 모습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음.
- 주3: 아동학대 대응, 사회적 양호와 장애아의 서비스 등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비용의 변화에 관해서는 이 추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4: 매년 유지 비용으로서 항상 필요한 액수를 추계한 것이지만, 이러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이 일정한 비용외에 별도로 시설정비와 인재육성 등에 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 주5: 현재 아동수, 출생자수를 베이스로 한 추계로 이 비용은 아동수, 출생자수의 증감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3세 미만아동수를 보면 「일본 장래 추계인구(2006년 12월 추계)」의 중위추계에서는 현재와 비교해 10년 후에 약8할, 20년 후에 2/3 규모가 감소하지만, 국민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희망을 반영한 추계에서는 10년 후에 95%, 20년 후에는 93% 규모를 유지한다.
- 주6: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별도 기계적으로 추계함(그림 1-2-19).

<표 1-2-19> 지급액, 지급대상 연령에 대하여 각종 전제를 둔 아동수당 급여액의 추계치
(지급대상연령 아동에 대한 지급률을 대략 90%로 추계)

		지 급 액			
		현행 첫째,둘째아이 5000엔 셋째아이 이후 10,000엔 3세 미만아 일률 10,000엔	일률 1만엔	일률 2만엔	일률 3만엔
지급대상 연령	(현행) 초등학교 졸업까지	1조500억엔	1조5,400억엔 <+4,900억엔>	3조800억엔 <+2조300억엔>	4조6,200억엔 <+3조5,700억엔>
	중학교 졸업까지	1조2,700억엔 <+2,200억엔>	1조9,300억엔 <+8,800억엔>	3조8,500억엔 <+2조8,000억엔>	5조7,800억엔 <+4조7,300억엔>
(참고-지급대상연령 아동 전원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대상 연령	(현행) 초등학교 졸업까지	1조1,600억엔 <+1,100억엔>	1조7,100억엔 <+6,600억엔>	3조4,200억엔 <+2조3,700억엔>	5조1,400억엔 <+4조900억엔>
	중학교 졸업까지	1조4,000억엔 <+3,500억엔>	2조1,500억엔 <+1조1,000억엔>	4조2,900억엔 <+3조2,400억엔>	6조4,400억엔 <+5조3,900억엔>

경제재정운영의 전망이나 사회보장 급여와 부담전망, 공적연금의 재정검증 등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한편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국민이 희망하는 결혼·출산·육아의 실현을 지지하기 위한 차세대 육성지원의 사회적 비용부담은 각종의 전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실현을 전제로 향후 경제재정운영이나 사회보장을 생각한다면, 근로방법의 개선에 의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실현을 향한 대책과 아울러, 사회전체로 차세대 육성지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미래 사회의 담당자가 되는 아동의 건강한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틀림없는 「미래로의 투자」이다⁷⁾.

마. 중점전략이 나타낸 과제 ① : 구체적인 제도설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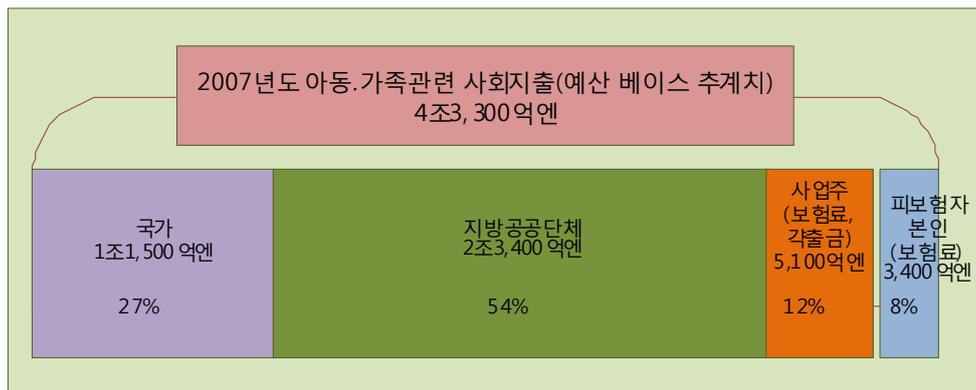
현행 차세대 육성지원 제도의 비용은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공공비용, 기업의 거출금, 노사 절반의 보험료에 의해 조달되고 있고 현행 비용부담의 구성은 대개 공비 8에 대해 노사의 보험료 등이 2의 비율이 되고 있다.

7) 내각부 「2003년도 연차경제재정보고」에서는, 취업과 출산·육아의 양자택일 구조가 해결되는 등에 의해, 노동시장 참가가 진행되어 한층 더 출생률이 향상했을 경우, 2050년까지를 통해서 실질 GDP 성장률을 0.5%정도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추계되고 있다.

중점전략은 향후 저출산 대책의 급여가 충실하다면, 여러 국가와 비교해도 특히 어려운 재정 상황 하에서, 그 비용을 차세대의 부담에 의해서 조달되는 일이 없게 필요한 재원을 그 시점에서 대비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중점전략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실현과 희망하는 결혼이나 출산·육아의 실현을 지지하는 급여·서비스를 체계적이며 보편적으로 제공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차세대의 부담으로 하는 일 없이 급부의 성격이나 시책간의 정합, 제휴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공적부담, 사업주나 개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담·거출의 편성에 의해 지지하는 구체적인 제도설계의 검토는 다음 페이지에서 나타내는 포인트를 고려하여 세금제도 개혁의 동향을 감안하면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2-20] 현행 차세대 육성지원 급부·서비스의 비용구성



<제도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포인트>

- 아동의 건강한 육성 관점에서 일정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것
- 육아가정의 지원요구에 대응하고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적절히 조합해 치밀한 대응을 도모할 것
- 사업주의 대책과 지방공공단체의 대책을 연결하여 빈틈없는 일체적인 지원을 실현할 것
- 현재 육아를 둘러싼 상황하에서는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가 긴급성이 높고, 또 실시나 보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것

- 국가가 제시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 하에,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 육아의 당사자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가를 도모하고 행정 담당자와 이러한 주체의 협동을 도모할 것
- 관련된 여러 제도(세금제도 등)와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 학대를 받은 아동 등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정에 대한 배려를 포함할 것

[그림 1-2-21] 가족관계 사회지출과 자원구성(추계)의 국제 비교:
2003년도(일본은 2007년도 예산 베이스), GDP대비



바. 중점전략이 나타낸 과제 ② : 선행해 실시해야 할 과제

중점전략은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을 꾀하는 제도설계의 검토와 함께, 2009년도까지 현행 「아동·육아 응원플랜」 및 지방공공단체의 차세대 육성지원을 위한 행동계획의 개선도 포함하여 다음의 과제에 대해서 2008년도에 선행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일정한 질이 확보된 보육서비스의 양적인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제공 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가정 보육의 제도화

- 일시보육 사업이나 지역 육아지원 사업의 제도화
- 지방공공단체나 사업주가 책정하는 차세대 육성지원을 위한 행동계획에 근거한 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대응
- 가정 양호의 충실이나 사회적 양호체제의 계획적 정비 등 사회적 양호체제의 충실

5. 이용자의 시점에 선 점검·평가와 그 반영

가. 이용자의 시점에 선 점검·평가의 모습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 평가는 시책이 계획대로 진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심이어서, 이용자의 시점에 입각한 항시적이며 지속적인 점검·평가는 행해져 오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6가지 시점에 주목한 점검·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① 결혼이나 출산·육아에 대한 희망의 실현도
 - 임신·출산 후의 계속 취업률을 정책목표와 관련된 지표로서 도입하는 등, 결혼이나 출산·육아의 각 단계에 있어 국민의 희망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한 점검·평가
- ② 이용자의 다양성
 - 이용자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관점도 고려하여 폭넓은 층의 이용자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이용자의 다양성에 맞는 치밀한 점검·평가
- ③ 지역차
 - 지역에 의한 요구의 차이를 전제로 하면서, 이용자가 각각의 생활권에서 실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하는 시점에 선 점검·평가
- ④ 지원책 상호의 제휴
 - 이용자가 출산, 육아 혹은 아동의 성장의 각 스테이지에 따라 각 지원책의 메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것들을 빈틈없이 선택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한 점검·평가
- ⑤ 질과 양의 평가
 - 서비스의 양이 확보되고 있는가는 물론, 서비스의 질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도 주목한 점검·평가
- ⑥ 지원책의 주지와 손쉬운 이용

- 지원책의 존재가 충분히 알려져 있는지, 지원책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 등 제도의 운용면에 주목한 점검·평가

나. 이용자의 시점에 선 점검·평가의 도입을 위하여

- ① 결혼이나 출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경제적 기반, 계속 취업 전망, 부부 간의 가사·육아 분담 등)에 각종 시책을 대응시켜 시책 체계를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현행 플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시점에 선 새로운 지표를 도입할 것
- ② 기존 통계의 개선·고안, 이용자 의향 조사의 실시 등, 점검·평가방법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실제 시책의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플랜의 목표를 설정할 단계에서부터 이용자의 시점에 선 지표 등을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이에 근거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년도의 예산 편성이나 사업 실시, 중기적인 플랜의 책정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 반영시키는 PDCA 사이클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용자의 시점에 선 점검·평가의 도입은 실시 가능한 것부터 착수해 보다 나은 방법으로 점진시켜 가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고 연계성 있게 실시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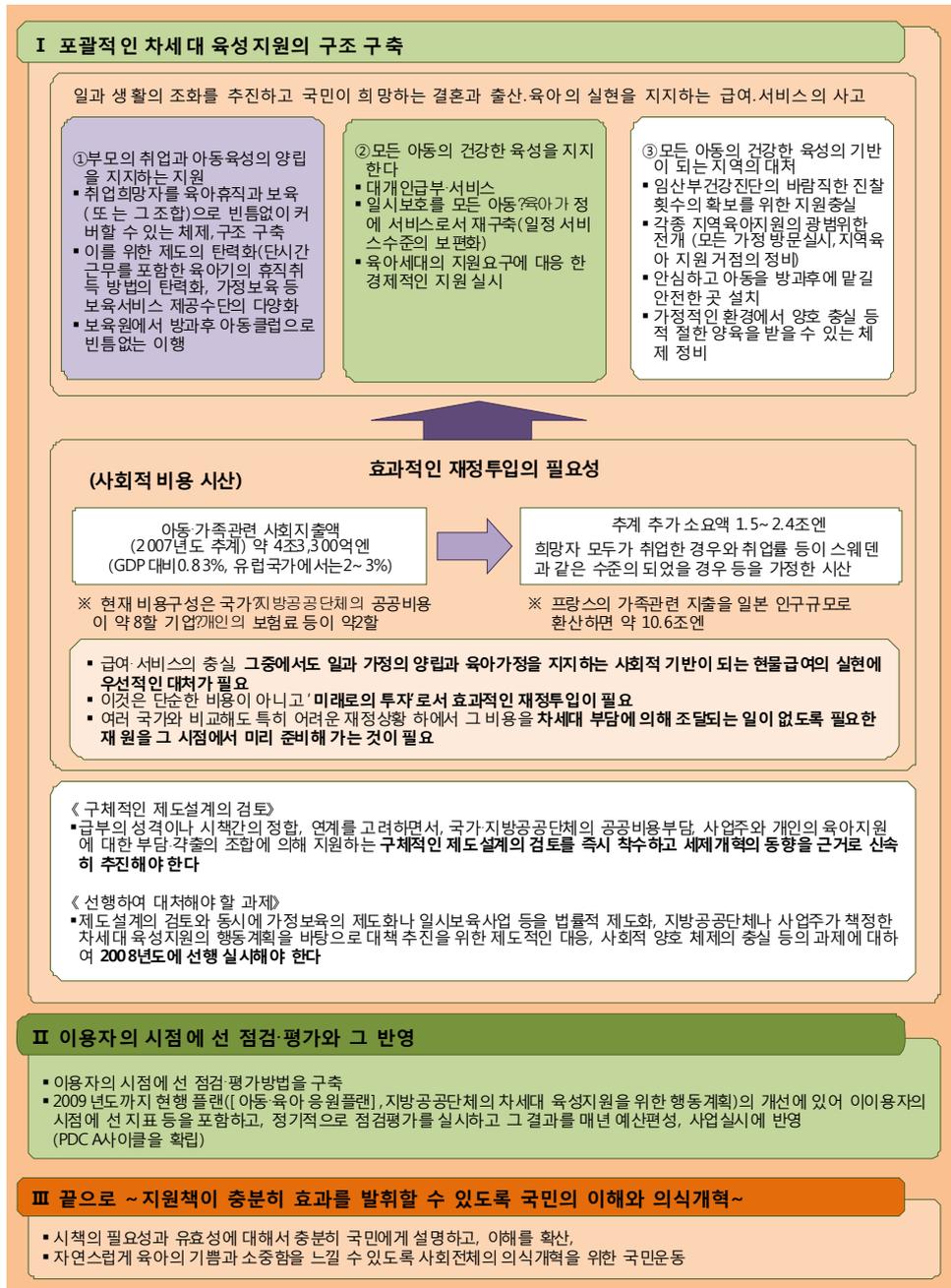
다. 지원책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국민의 이해와 의식 개혁

차세대 육성지원과 관련된 시책의 필요성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육아세대 조차도 의문시하는 경향이 있다. 각종 시책의 효과적인 전개에 힘쓰며 미래를 위한 「미래로의 투자」로서 시책의 필요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하여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각종 시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책의 착실한 실시와 아울러 생명을 차세대에게 전하여 육성하는 것과 가족의 소중함, 가족을 지지하는 지역의 힘이 지금부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젊은 세대나 아이들에게 계승되어, 자연스럽게 육아의 기쁨이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전체의 의식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 갈 필요가 있다⁸⁾.

8) 내각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가족·지역의 유대를 재생하는 국민운동」으로서 11월의 셋째 주 일요일을 「가족의 날」, 그 전후로 1주간을 「가족의 주간」이라고 하고 지방공공단체나 민간의 관계단체, 전문가 등과 정부가 제휴·협력해, 가족·지역의 유대의 중요성을 호소하기 위한 행사 개최

[그림 1-2-22]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지원의 구조 구축



6. 중점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30대 중반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저출산 대책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차세대 육성지원의 사회적 비용은 「미래로의 투자」이며, 근로방식의 개선과 보육 등 육아지원의 사회기반 정비를 중점전략의 사고인 「수레의 양쪽바퀴」로써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가. 2008년도 예산 반영

2008년도의 정부 예산에서는 현장 및 행동지침과 중점전략을 반영해 근로방식의 개혁에 의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을 꾀하기 위한 대책이나, 다양한 근로방법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등 육아지원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현장 및 행동지침에 근거하여 근로방법의 개혁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①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에 의한 모델사업의 전개, 노사, 지방공공단체, 전문가 등에 의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 회의」를 도도부현마다 설치
- ②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국민이 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캠페인 실시
- ③ 노동시간의 설정 개선을 위하여 직장의식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중소기업 주 조성조치 제도 창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2-23] 2008년도 저출산 사회대책 관계 예산의 포인트

■ 2008년도 저출산 사회대책관계 예산의 총액은 1조 5,715억엔(전년도 대비 3.6% 증가)
 ■ 2007년 12월에 종합 정리한 '일과 생활의 조화(워크라이프 밸런스)헌장' 및 '일과 생활의 조화추진을 위한 행동지침'과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의 내용을 반영

※ ()안은 2007년도 예산액

(1) 육아 지원책

I 신생아유아기(임신출산부터 유아기까지)

- ① 산부인과 소아과 의료 확보 등 모자보건 의료 총실 278억엔(256억엔)
 -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 주산기의료체제의 정비
 -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 창설후에 일정지원 등, 의료리스크에 대한 지원체제 정비 준비
 - 소아구급지원사업, 소아구급거점병원 등의 휴일야간에 의료체제 확보나 소아구급 전화상 담사업 등 소아구급의료체제의 확보
- ② 생후4개월까지 모든가정방문사업(안녕하세요 아기 사업) 추진
- ③ 아동을 지키는 지역 네트워크(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기능 강화
- ④, ⑤은 저출산 육성지원대학교부금(375억엔)의 내수

II 미취학기(초등학교 입학전까지)

- ④ 지역의 육아지원 거점의 확충 101억엔(84억엔)
2008년도에는 대략 7,000개소 정비를 도모
※ 6,138개소→7,025개소(2008년)
- ⑤ 대가아동제로작전의 추진과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등 보육서비스의 총실 3,905억엔(3,716억엔)
 - 보육원의 수용아동수 확대 연장보육 등 보호자의 요구에 대응한 보육서비스의 추진, 지역의 보육자원(사업소내 탁아시설)을 활용한 대가가정 보육사업(보육사)총실
- ⑥ 사업소내 탁아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 추진
40억엔(23억엔)
- ⑦ 아동사고 방지 대책 추진 1.2억엔(1.5억엔)
- ⑧ 취학전 교육비 부담 경감 192억엔(185억엔)

III 초등학교생기

- ⑨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아동클럽' 추진
방과후 아동교실 78억엔(68억엔), 방과후 아동클럽 187억엔(158억엔)
 - 방과후 아동교실은 전국 15,000개소의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클럽은 필요한 모든 초등학교(20,000개소)에서 실시
- ⑩ 지역의 가정교육지원 기반형성 12억엔(신규)
- ⑪ 학교나 동아리 등의 안전대책 17억엔(17억엔)

IV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기

- ⑫ 장학금의 총실 1,309억엔(1,223억엔)
 - 121.9만명(전년도 대비 7.5만명 증가)의 학생에게 장학금 대여

V 특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육아지원

- ⑬ 사회적 양육의 총실 799억엔(776억엔)
- ⑭ 아동의 심리치료 거점 병원 정비 48억엔 내수(신규)
- ⑮ 발달장애 지원/특별 지원 교육의 종합적인 추진 5억엔(신규)
- ⑯ 발달장애 교육센터에 의한 정보제공
운영비 교부금(12억엔)의 내수(신규)

(2) 근로방식 개혁에 의한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

- ①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10억엔(신규)
 -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에 의한 모델사업 전개 2억엔(신규)
 - 노사, 지방공공단체, 전문가에 의한 '일과 생활의 조화추진회의'를 도도부현마다 설치 8.3억엔(신규)
- ②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을 위한 기업의 대처 촉진 15억엔(16억엔)
 - 노동시간의 설정 개선을 위한 직장의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새로운 조성조치의 창설
- ③ 파트타임 노동자의 저우 확보와 단시간 정사원제도의 도입 확보 10억엔(8.8억엔)
- ④ 어머니 헬로 워크사업의 거점 확충과 기능 강화 19억엔(20억엔)
- ⑤ 프리터 상용고용화플랜의 추진이나 청년의 도전 지원 등 333억엔의 내수
- ⑥ 텔레워크의 보급 촉진 1.4억엔(1.1억엔)
- ⑦ 근로방식의 개선을 포함한 국민일체 육아지원 추진 운동 0.4억엔(0.5억엔)

(3) 사회 전체의 의식개혁을 위한 국민운동 추진

- 저출산 사회대책의 종합적인 추진 2.6억엔(2.4억엔)
 - 일과 생활의 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과 중립원의식에 관한 조사, 저출산 대책의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 '가족' 지역의 유대를 재생하는 국민운동 전개 등

(4) 지역에서의 저출산 대책 추진

- 지역에서의 저출산 대책 추진체계 확충(지방재정조치)
 -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각 지방공공단체(특히 시정촌)에 저출산 대책 추진본부나 저출산 대책 종합연구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체제정비를 추진

(5) 기타 중요한 시책

-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의 책정에 따른 세제상의 소요 소지
- 사회적 양호체제 개선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개정 등에 따른 세제상의 소요 소지
- 주산기 의료의 연계체제를 떠맡는 의료기관이 취득한 분만시설에 관한 특례조치 창설
- 사업소내 탁아시설에 관한 법인세의 우대조치
- 가족용 주택 3세대동거 근거 지원
- 자연이나 사람과 접함으로써 풍부한 인간성 육성

다양한 근로방법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등의 육아지원책 충실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① 지역에서 육아지원 거점 확충(2007년도 6,000개소에서 2008년도 7,000개소로 확대)
- ② 보육원의 수용 아동수 확대(2008년도 4만5,000명 분을 증원)

- ③ 가정 보육사업의 충실(보육사의 대상 아동수를 2007년 1,300명에서 2008년 2,500명으로 확충)
- ④ 연장 보육이나 일시보육 추진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충실
- ⑤ 둘째아이 이후의 아동이 유치원에 다닐 때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는 우대 조치의 적용조건 완화
- ⑥ 방과후 아동플랜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방과후 아동교실을 전국 약 1만 5,000의 초등학교구로 확대하며, 방과후 아동클럽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교구(약 2만 개소)에서 실시함
- ⑦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아이를 지키는 지역 네트워크(요(要)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의 기능 강화
- ⑧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성장에 따른 일관된 지원방법의 개발, 생애주기별 일관된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각 권역에서 지원관계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 ⑨ 양부모 수당의 충실[2007년도의 3만 4,000엔(월액)에서 2008년도는 7만 2,000엔(월액)으로 인상], 양부모 제도의 보급 계발, 양부모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양부모 지원기관 사업 창설
- ⑩ 아동 양호시설 등에서 소규모 그룹케어 추진(2007년 580개소에서 2008년 613개소로 확대)이나 간호사의 배치
- ⑪ 시설을 퇴소 한 아동의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모델사업 실시

덧붙여, 당면한 절박한 과제인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산부인과의료의 확보를 꾀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①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보조사업 창설
- ② 조산사를 활용하고 산부인과를 가진 병원·진료소 내에 「병원내 조산소」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창설
- ③ 여성 의사뱅크체제, 복직지원을 위한 연수 등 여성 의사가 일하기 쉬운 직장환경 정비
- ④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 지원 등 의료 리스크에 대한 지원체제 정비

나. 사회보장심의회 저출산 대책 특별부회의 설치

중점전략에 대해서 다음의 두 가지 과제가 제시되었다.

- ① 국가·지방공공단체의 공적부담, 사업주나 개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담·거출의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설계의 검토를 즉시 착수 후 세계 개혁의 동향을 감안하면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 ② 가정보육의 제도화나 일시보육 사업 등의 법률적 제도화, 지방공공단체나 사업주가 책정하는 차세대 육성지원의 행동계획에 근거한 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대응, 사회적 양호체제의 충실 등은 2008년도에 선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2가지 과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지방공공단체나 노사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에 저출산 대책 특별부회가 설치되어,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 말한 ②의 「선행하여 실시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 특별부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3월 아동복지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제169회 통상국회에 제출되었다. 현장 및 행동지침에 입각하여,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직으로서 2008년 1월 내각부에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실을 설치했다(제3장 제2절 5참조).

[그림 1-2-24] 아동복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개요

[취지]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 등을 근거로, 가정적인 보육사업 등의 새로운 육아지원서비스의 창설,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가정적인 환경에서 양호 충실, 일과 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일반사업주 행동계획의 책정 촉진, 지역과 직장에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 개정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

I 지역에서의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 추진

- ① 새로운 육아지원서비스의 창설(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
 - 일정한 질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주체에 의한 보육서비스의 공급촉진과 모든 가정에서의 육아지원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롭게 가정적인 보육사업(보육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시맡기기 사업, 모든 육아가정방문(안녕하세요 아기 사업), 양육지원방문사업 및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을 법률상 창설하여 시정촌에서 의 서비스 실시 등을 촉진한다.
- ② 곤란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
 - 양부모제도를 사회적으로 양호담당으로서 확충하기 위하여 양자결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양부모(양육양부모)를 제도화하여 일정의 연수를 용건으로 하는 등 양부모의 제도를 개선한다.
 - 가정적인 환경에서의 아동의 양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대를 받은 아동의 양육자의 주거에서 양육하는 사업(패밀리 홈)을 설치.
 - 아동양호시설 내부에서의 학대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대를 발견한 자는 통고의무 등을 설치하는 것 외에, 지역에서의 아동학대 대책을 강화한다.
- ③ 지역에서의 육아지원서비스 기반 정비(차세대 육성지원 대책 추진법의 일부 개정)
 - 근로방식의 개선에도 부응한 중장기적인 육아지원서비스의 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정촌의 행동계획 책정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보육서비스의 양 등에 관한 표준을 국가에서 정하는 등 개선을 실시한다.

II 직장에서의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 추진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촉진(차세대 육성지원 대책 추진법의 일부 개정)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환경의 정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책정한 일반사업주 행동계획 책정 신고의무화의 대상범위를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서 종업원 101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 일반사업주 행동계획의 공표 종업원의 주지를 계획의 책정 신고의무가 있는 기업에의 무화한다.

[실행기일]

- 원칙적으로 2009년 4월1일. (I 의 ③ 행동지침의 전망 등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 I 의 ② 양부모제도의 개선은 2009년1월1일, 가정적인 보육사업(보육사)의 제도화는 2010년 4월1일, II의 일반사업주 행동계획의 대상범위 확대는 2011년 4월1일)

다. 지역에서의 추진 체제의 정비

현장, 행동지침에 입각한 근로방법의 개선 추진 등, 종래의 저출산 대책의 구조를 넘은 대책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방 공공단체의 보건복지, 교육, 상공노동 등 담당 부국이 제휴를 도모하여 각각 지역에서 관계기관이나 기업 등 관계자와의 협동체제 하에서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1월 내각부, 총무성 및 후생노동성 3개 부성이 연명해 내용을 시달해, 각 지방 공공단체의 수장을 중심으로 관계부국의 장으로 구성된 저출산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는 등 청내 체제 정비를 요청하였다. 또한 지역의 기업, 노동단체, 관계 각 기관 등으로부터 협의회를 설치하여 각 도도부현에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추진 담당부서를 분명히 하는 것 등을 요청했다. 또,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시정촌(市町村)에서 2008년도의 지방재정조치로 총액에 대하여 확충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 신대기아동 제로작전

개정 아동복지법(2005년 4월 1일 시행)에 입각하여, 보육실시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市町村)에서 대기아동이 50명 이상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보육실시 사업 등 공급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보육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보육원의 수용아동수 증가 등, 대기아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표 1-2-25).

하지만 대기아동 50명 이상의 특정 시구정촌(74개 시구정촌)에서 대기아동이 약 70%를 차지하고, 또 영아(0~2세)의 대기아동수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보육원의 정원을 늘려도 대기아동은 여전히 약 1만 8천명 존재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그림 1-2-26).

2008년 2월 27일, 정부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 아이의 건강한 육성을 사회전체에서 대처하기 위하여, 중점전략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나 서비스 질의 확보를 근거로 하여 보육원 등의 대기아동 해소를 시작으로 질·양 모든 측면에서 보육 정책을 충실·강화하기 위한 「신대기아동 제로작전」을 전개하기로 하였다(그림 1-2-27).

신대기아동 제로작전은,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의 인수대세를 확보하여 대기아동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특히 향후 3년간을 집중 중점기간으로서 대책을 진행시켜 10년 후의 목표로 보육서비스의 이용 아동수(0~5세아) 100만명 증가, 방과후 아동클럽의 등록 아동수를 145만명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신대기아동 제로작전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 ① 보육서비스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가정 보육 등 보호자나 지역의 사정에 따른 보육제공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할 것
- ② 초등학교 취학 후에도 계속해서 방과후 등 생활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사업(방과후 아동클럽) 시책 대상을 확대할 것
- ③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서비스 및 방과후 아동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의 중장기적인 수요를 감안해 그 절대량을 계획적으로 확대할 것
- ④ 아동의 건강한 육성과 맡기는 보호자의 안심확보의 관점에서 일정한 질이 확보된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할 것

그리고 이하와 같은 대책을 진행시킴과 동시에, 집중 중점기간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기아동이 많은 지역에 중점적인 지원이나 인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올해 하순경을 목표로 다음의 검토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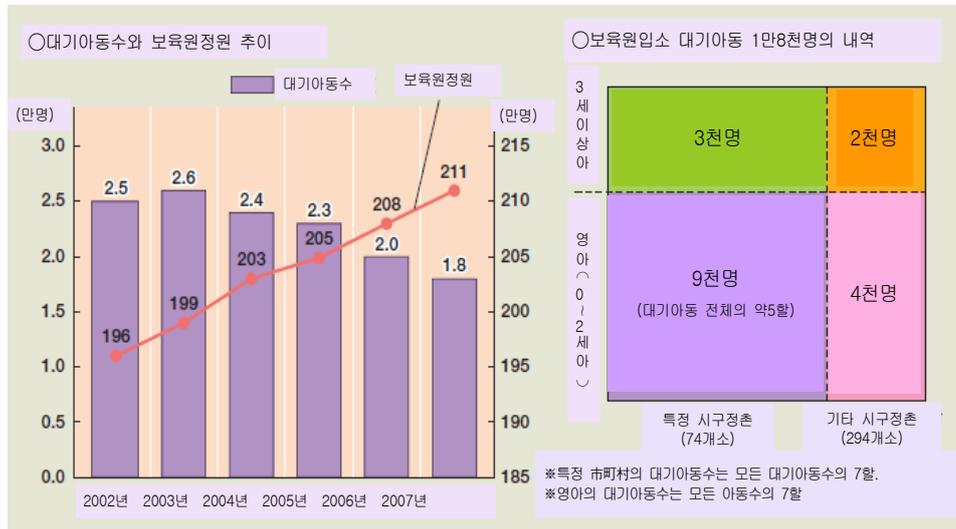
- (1)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보육 제공수단의 다양화
- (2)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사업(방과후 아동클럽) 추진
- (3) 보육서비스의 계획적 정비
- (4) 지역이나 직장의 실정에 따른 대책 추진
 - 인정 어린이집의 설치 추진
 - 병아·병후아 보육 사업 충실
 - 사업소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충실
- (5)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대책 추진
 - 보육원 보육지침 등에 입각하여 보육의 질 향상
 - 보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질 높은 인재의 안정적 확보
 - 질 높은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사업(방과후 아동클럽) 추진
 - 다자녀 세대 배려

[그림 1-2-25] 시구정촌(50명 이상)별 보육시설 대기 아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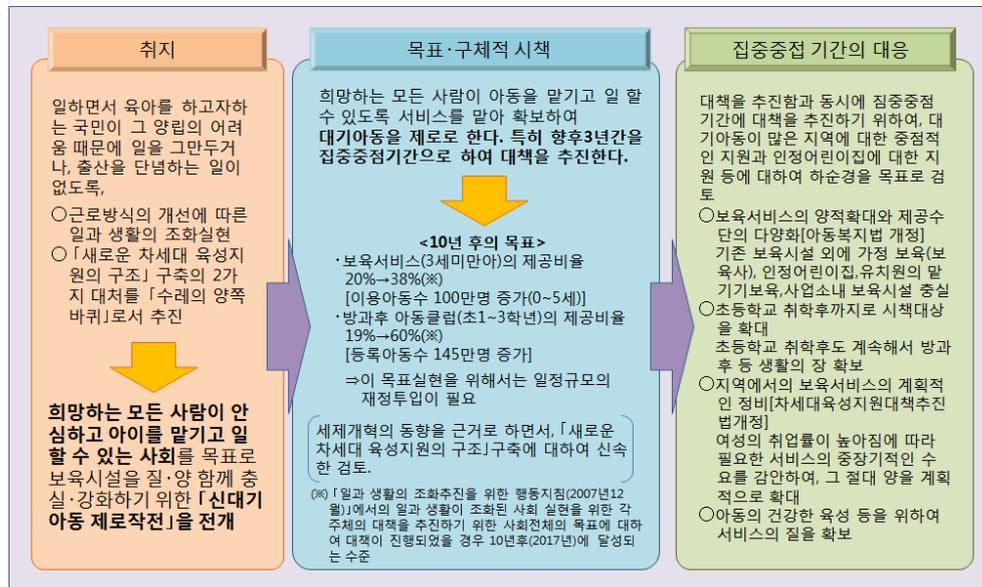
(2007년 4월 1일 현재) (단위: 명)

순위	도도부현	시구정촌	대기아동수	전년대비증감	순위	도도부현	시구정촌	대기아동수	전년대비증감
1	오사카부	오사카시	744	△102	46	카고시마현	카고시마시	98	△252
2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576	223	47	치바현	카시와시	95	20
3	효고현	코베시	489	△71	48	치바현	우라야스시	93	77
4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	465	△15	49	교토부	교토시	89	△27
5	미야기현	센다이시	390	78	50	오사카부	타카츠키시	88	△66
6	오키나와현	나하시	379	142	51	미야기현	오사카시	81	△60
7	도쿄도	고토구	352	97	52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77	15
8	오사카부	사카이시	349	△114	52	도쿄도	히노시	77	0
9	아이치현	나고야시	342	△20	54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76	27
10	도쿄도	하치오우시	336	16	55	사이타마현	미사토시	75	34
11	치바현	치바시	329	59	56	도쿄도	시나가와구	73	△109
12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322	87	56	나라현	나라시	73	27
13	오키나와현	오키나와시	275	132	58	카나가와현	치가사키시	72	△26
14	도쿄도	세타가야구	249	△12	58	오사카부	야오시	72	△32
15	도쿄도·	네리마구	243	22	60	도쿄도	나카노구	71	28
16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239	6	61	치바현	사쿠라시	70	12
17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220	14	62	미야기현	도메시	66	19
18	도쿄도	에도가와구	219	△3	62	도쿄도	코가네이시	66	△9
19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218	△185	62	오키나와현	도미구스쿠시	66	4
20	도쿄도	아다치구	213	△135	65	오키나와현	요미탄촌	65	△15
21	홋카이도	삿포로시	212	△107	66	도쿄도	고마에시	64	23
22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204	△60	67	오사카부	이바라키시	60	△31
23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	197	2	67	코우치현	코우치시	60	△58
24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193	△39	69	도쿄도	쿄다라이시	59	△10
25	도쿄도	조후시	189	82	70	오키나와현	이토만시	58	29
26	도쿄도	이타바시구	188	6	71	오사부	스이타시	57	15
27	오키나와현	우라소에시	185	△85	72	사이타마현	카스카베시	55	32
28	도쿄도	후후시	164	0	72	도쿄도	무사시노시	55	13
29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159	17	74	도쿄도	메구로구	51	7
30	도쿄도	스미타구	146	△18			50-99명 합계	2,062	△313
31	도쿄도	오타구	144	△19			50-99명,100명 이상 합계	12,715	△418
31	도쿄도	니시도쿄시	144	△32					
33	아키타현	아키타시	140	17					
34	도쿄도	미나토구	139	51					
34	도쿄도	마치타시	139	△32					
36	도쿄도	타치카와시	132	39					
37	사이타마현	토코로자와시	125	△103					
37	오키나와현	니시하라정	125	69					
39	도쿄도	미타카시	121	△36					
40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119	△19					
41	이바라키현	미토시	112	14					
42	치바현	이치카와시	110	△110					
42	도쿄도	타마시	110	52					
44	사이타마현	카와고에시	106	△11					
45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시	101	△2					
		100명이상 합계	10,653	△105					

[그림 1-2-26] 보육 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



[그림 1-2-27] 신대기아동 제로작전의 개요



마. 기타 관련된 변동

①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의 논의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는, 2008년 봄을 목표로 경제성장 전략의 전체상을 정리할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경제성장 전략으로는 근로의욕이 있는 모든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여 전원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환경정비를 목표로 「신고용 전략」을 책정하고 있어, 그 축의 하나로서 취업과 출산·육아의 양자택일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육아서비스 충실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② 사회보장 국민회의 설치

2008년 1월 장래에 걸쳐,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회보장제도를 보강하여 모든 사람이 안심하며 생활하고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대처해 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얻어 사회보장이 있어야 할 모습과 그 중에서 정부에 어떠한 역할을 기대할 것이며 어떠한 부담을 분담할까를 국민이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기 위한 사회보장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라고 한다)가 설치되었다. 저출산,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도 국민회의의 테마 중 하나이며, 국민회의 하에 설치된 고령인구의 분과회⁹⁾ 중 하나로서 자리 매김 되어 가고 있다.

9) 제1분과회 : 소득확보·보장 [고용·연금], 제2분과회 : 서비스보장 [의료·개호·복지], 제3분과회 :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축 [저출산,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육아휴직 끝난 직후 연도도중의 보육시설 입소를 받아들이는 대책이 시작(시나가와구)

보육원의 대기아동이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연도도중의 입소는 특히 어렵기 때문에, 보육원에 입소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일단 끝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도쿄도 시나가와구에서는, 1999년도부터 50명 정도의 육아휴직이 끝난 직후 다음 해에도 도중에 입소범위를 확보하여 「출산 휴가·육아휴직 끝난 직후 입소예약 제도」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입소희망 월의 반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면 입소할 수 있을지를 알고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복귀까지의 전망을 가지는 것이 어려웠다.

시나가와구에서는 2008년 6월부터 구내 거주 보호자가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취득하여 직장 복귀하는 경우에, 임신중에 복귀 월의 입소예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소예약 제도)를 시작한다. 예약신청은 입소 예정일의 전년이어도 가능하고 임신중에 입소를 신청해, 출생 후에 입소 심사를 실시하고 출생의 다음 달에 본 예약을 할 수 있다. 현재 시나가와구립 보육원 40개 보육원 가운데, 37개 보육원에서 정원을 탄력화시켜 합계 130명분을 준비하여 직원 배치는 필요에 따라 비상근 보육사 등을 배치해 대응한다.

또, 퇴직보육사 등이 육아상담원이 되어, 출산후도 계속 일하는 것을 희망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임신기부터 상담에 응한다. 육아상담원은 복직후 입소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의 육아플랜 작성을 돕는 등, 한사람 한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예상하여 안심하고 시나가와구에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신기부터 입소예약도 이 플래닝 안에서 실시한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반향이 커서, 시나가와구에 거주한 보호자로부터의 상담은 물론 지역에서 양립지원책(육아휴직)과 제휴를 도모하여 보호자의 근로방법에 대응한 이용하기 쉬운 보육원을 목표로 하는 시도로서 다른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조회도 많다.

이 밖에 시나가와구에서는 10개의 보육원이 오후 10시까지 연장 야간보육을 실시

하거나 연말 보호자의 근무에 따른 보육요구에 대응한 연말보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근로방법에 대응한 보육서비스를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다.



아기 체조

제3장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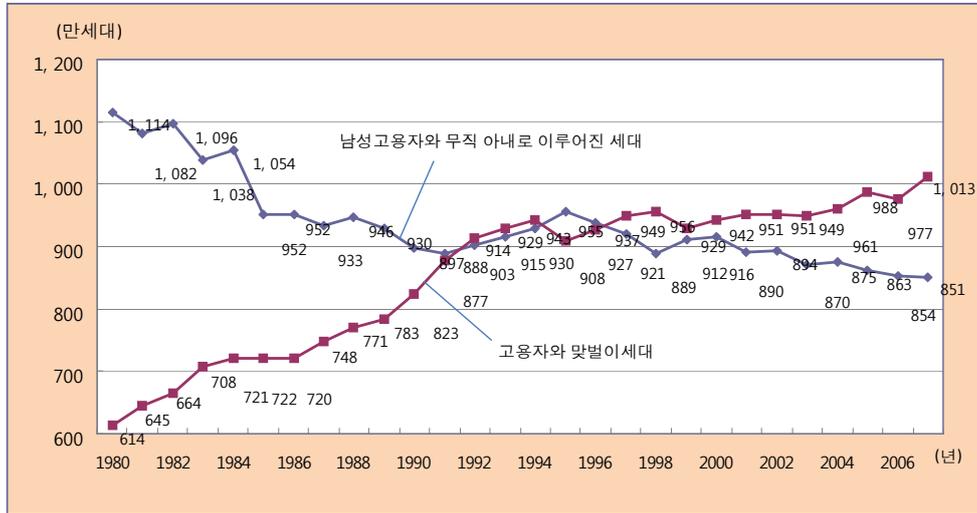
제1절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중요성

국민이 희망하는 결혼이나 출산·육아 실현에 따라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취업과 출산·육아의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을 해소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결혼, 출산하고, 남녀 모두가 일도 가정도 소중히 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혁하여 나가는 것, 즉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실현을 목표로 한 근로방식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1. 근로방식을 둘러싼 문제점

현재 급속한 저출산 진행의 배경에는, 취업과 출산·육아가 양자택일 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 원인으로는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양한 근로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것과 비정규 노동자의 증대, 장시간 노동 등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있어 자신이 바라는 삶의 방식 실현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근로방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림 1-3-1] 맞벌이 세대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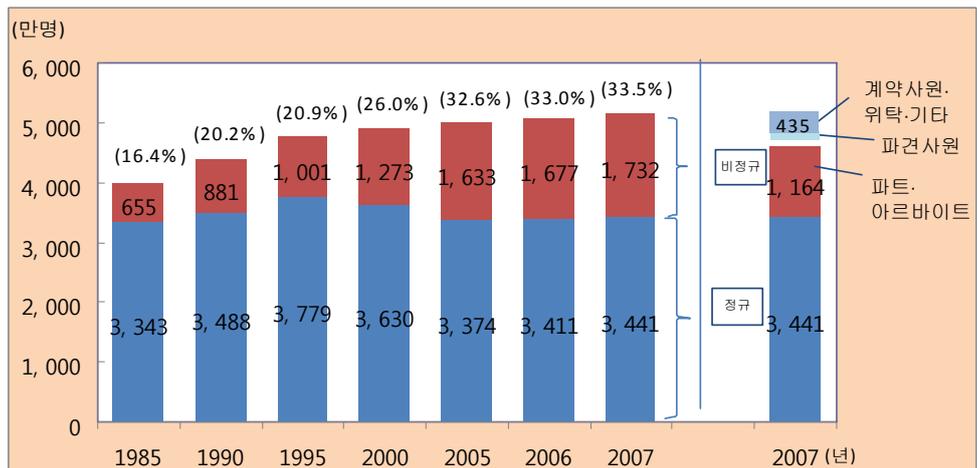


자료: 1980~2001년에는 총무성 「노동력 조사 특별조사」(각 년 2월, 단 1980~1982년에는 각 년3월), 2002년 이후에는 「노동력 조사(상세집계)」(연평균)의한 작성.

주1: 「남성고용자와 무직 아내로 이루어진 세대」는 고용자와 비농림업 고용자, 무직의 아내는 완전실업자와 비노동력 인구의 합계치이다.

주2: 「고용자 맞벌이 세대」의 고용자는 비농림업 고용자이다.

[그림 1-3-2] 정규 고용자와 비정규 고용자의 추이



자료: 2000년까지는 총무성 「노동력조사(특별조사)」(2월조사), 2005년 이후에는 총무성 「노동력조사(상세집계)」(연평균)에 의함.

주: 고용형태 구분은 근무처에서의 호칭에 의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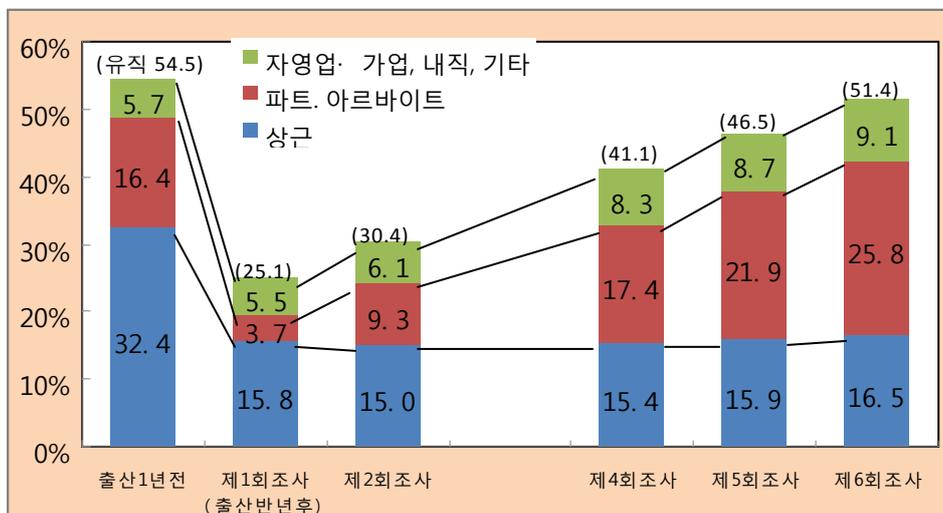
가. 일과 육아의 양립 곤란

1) 임신·출산을 계기로 7할이 퇴직

우선, 육아기에 있는 여성의 일과 육아 양립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제2장 제2절(그림 1-2-13)에서 보았던 대로, 출산 전후 여성의 취업상황을 보면 출산하기 1년 전에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 중 약 7할이 출산 반년 후에는 무직이 되어 있다. 또, 육아휴직을 이용해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 비율은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계속 취업을 전체로 보면 과거 20년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모의 취업상황 변화를 보면, 출산 반년 후 여성의 유직률은 25.1%인데 대비해 5년 후에는 51.4%로 상승하고 있지만, 이 중 파트·아르바이트의 비율은 25.8%로 상근(16.5%)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임신·출산을 기회로 일과 육아 중 양자택일을 강요받거나, 일단 이직하면 파트·아르바이트에 비해 상근으로의 재취직은 적은 상황이다.

[그림 1-3-3] 어머니의 취업 상황의 변화



자료: 후생노동성 「제6회 21세기 출생아 종단조사」(2006년)
 주: 제3회 조사는 어머니의 취업상황을 조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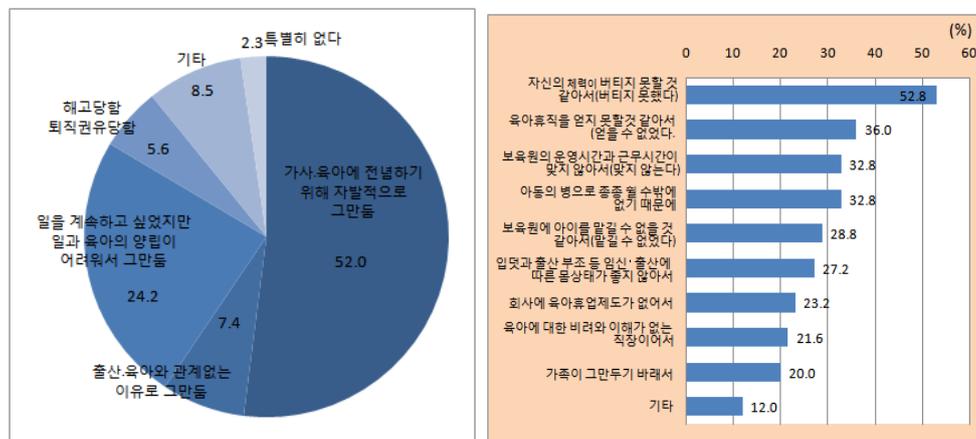
2) 출산 전후로 일을 그만두는 이유

일본노동연구기구 「육아나 개호와 일의 양립에 관한 조사」(2003년)에 의하면, 출산 전후로 일을 그만두는 이유로는 「가사, 육아에 전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52.0%)가 가장 많지만,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워서 그만두었다」(24.2%), 「해고되었다, 퇴직 권유 받았다」(5.6%)등 약 3할이 양립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만두고 있다.

양립이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로서는, 「육아휴직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36.0%), 「아동의 병 등으로 종종 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32.8%) 등, 직장에 양립지원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는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시사하는 응답 외에, 「보육원등의 운영시간과 근무시간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32.8%), 「보육원 등에 아이를 맡길 수 없을 것 같아서」(28.8%) 등, 보육서비스 등의 육아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시사하는 응답도 볼 수 있다.

[그림 1-3-4] 양립이 어려운 이유

○ 「출산1년 전에는 고용자로 현재는 무직」으로 취학전 아동이 있는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 ○ 양립이 어려운 구체적 이유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워서 그만둬, 이라고 답한 자)



자료: 일본노동연구기구 「육아나 개호와 일의 양립에 관한 조사」(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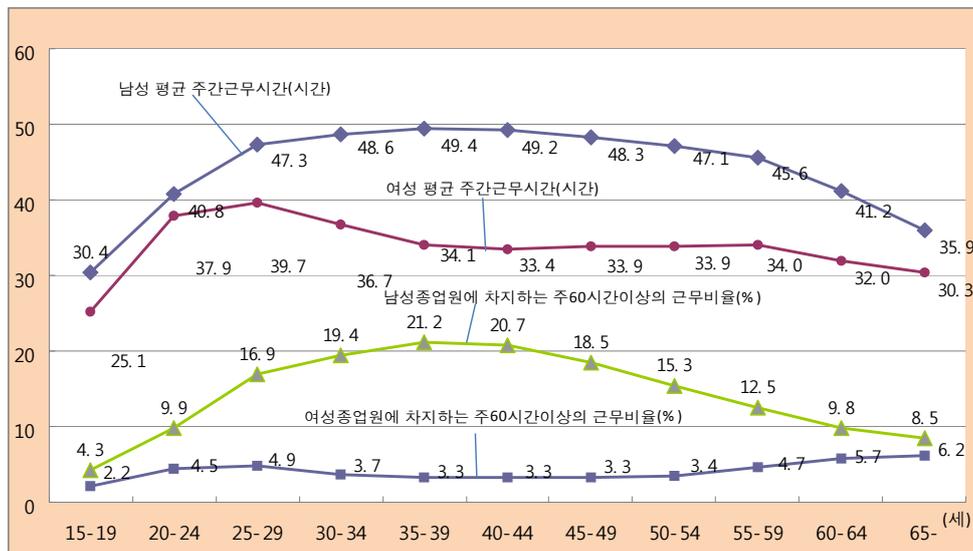
나. 남성이 육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없다

1) 일본인 남성의 가사·육아시간은 매우 짧다

지금까지의 근로방식의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일을 우선한 근로방식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나 휴가를 얻기 힘들어 남성이 가사나 육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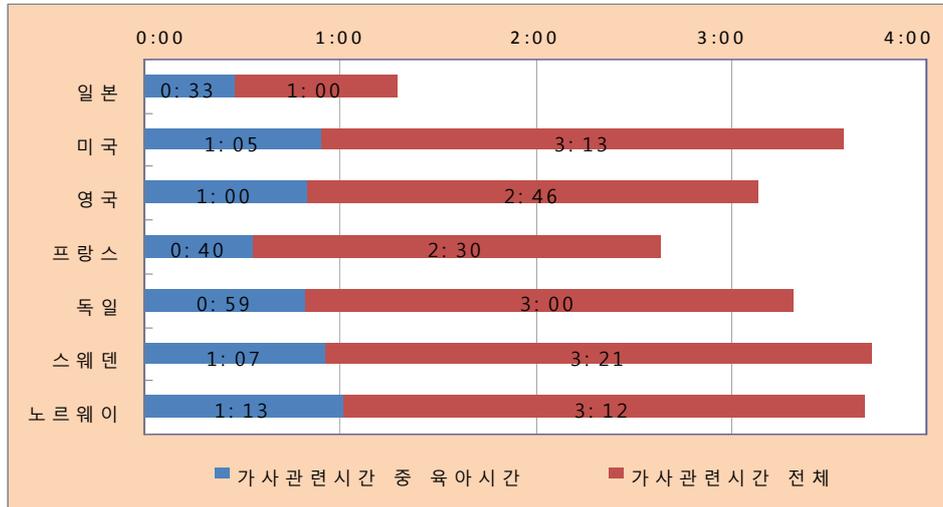
총무성 「노동력 조사」(2007년)를 보면 남녀별, 연령별의 주 평균 근무시간의 비율에 대해서, 남성 30대의 근무시간이 가장 긴 약 50시간이다. 또 남성 30대에서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2할 이상이 되고 있어 육아세대 남성의 장시간 노동의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또 아이가 있는 세대의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게 들이는 시간은, 일본에서는 1일 평균 1시간 정도에 그쳐, 다른 선진 국가의 2~3시간에 비해 매우 짧다.

[그림 1-3-5] 성, 연령 단계별 취업시간(비농림업)



자료: 총무성 「노동력조사」(2007년)에서 작성
 주: 휴직자를 제외함.

[그림 1-3-6] 6세 미만아가 있는 남편의 가사, 육아시간(주 전체)



자료: Eurostat "How Europeans Spend Their Time Everyday Life of Women and Men" (2004); Bureau of Labor Statistics of the U.S. "America Time-Use Survey Summary" (2006), 총무성 「사회생활 기본조사」(2006년)

주1: 일본의 가사관련 시간은 「가사」, 「개호·간병」, 「육아」, 「쇼핑」의 합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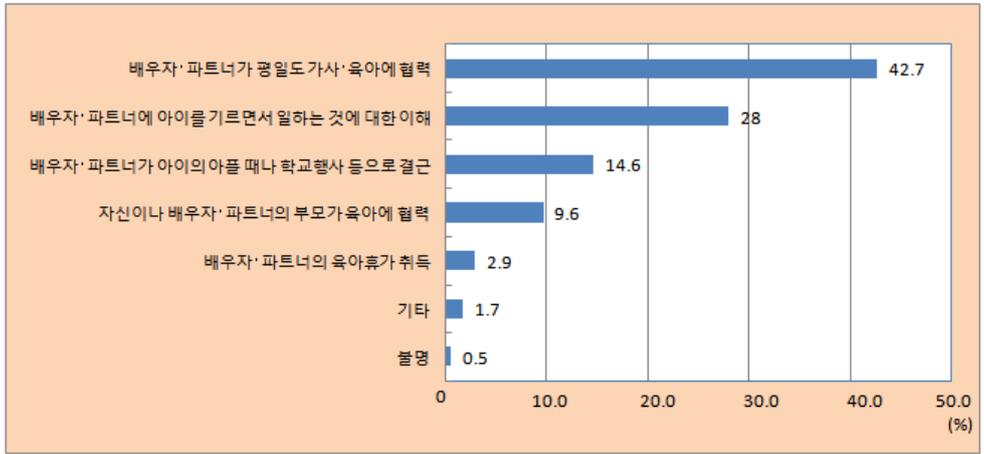
주2: 일본의 수치는 「부부와 아이 세대」에 한정된 남편의 시간이다

2) 일·가정·개인생활의 양립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일을 우선

남녀공동참가회의 아래에 놓여진 「저출산과 남녀공동참가에 관한 전문조사회」(2004년 7월~2007년 2월)에 따른 「저출산과 남녀공동참가에 관한 의식조사」(2006년)에 의하면, 기혼인 남성에게 있어 생활 속에서 「일 우선」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약 2%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일·가사(육아)·사적인 시간의 양립」을 희망하는 사람은 약 32%를 차지하고 있어, 「사적인 시간 우선」(29.9%), 「가사와 사적인 시간 우선」(12.2%), 「가사 우선」(5.5%)을 합하면, 약 8할의 남성이 가사·사적인 시간을 일보다 이상으로 하고 싶어 하는 희망이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5할 이상의 사람이 「일 우선」이 되고 있어,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를 보인다.

또 내각부 「여성의 라이프 플래닝 지원에 관한 조사」(2007년)에 의하면, 30~40대 여성 중 육아를 하면서 일하는 경우 가족에게 필요한 것으로 「배우자·파트너의 평일 가사·육아참가」라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아지고 있다. 남성의 가사나 육아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육아 여성의 계속 취업이나 육아 불안의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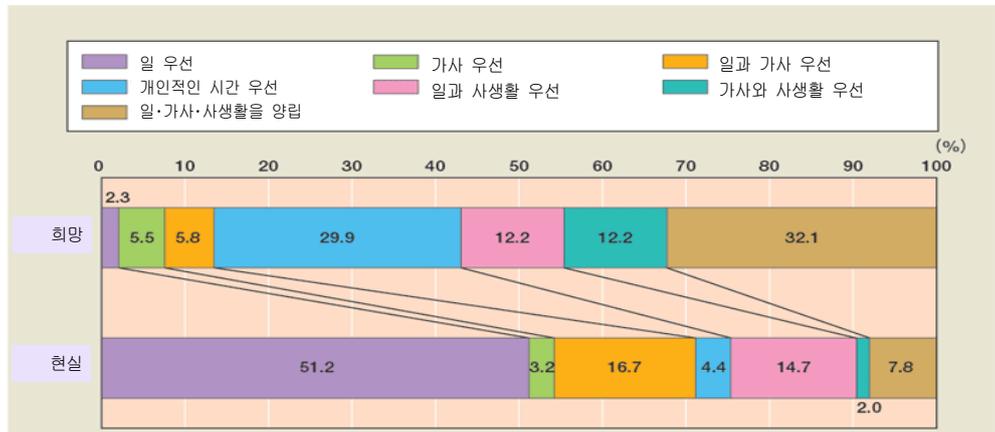
[그림 1-3-7]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희망과 실현



자료: 내각부 「여성의 라이프 플래닝지원에 관한 조사」(2007년 3월)

주: 본 조사는 30~40대 여성(기혼, 미혼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에서 조사한 것으로, 유효응답수는 3,100건

[그림 1-3-8] 가족의 상황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



자료: 저출산과 남녀공동참여에 관한 전문조사회 「저출산과 남녀공동참여에 관한 의식조사」 2006년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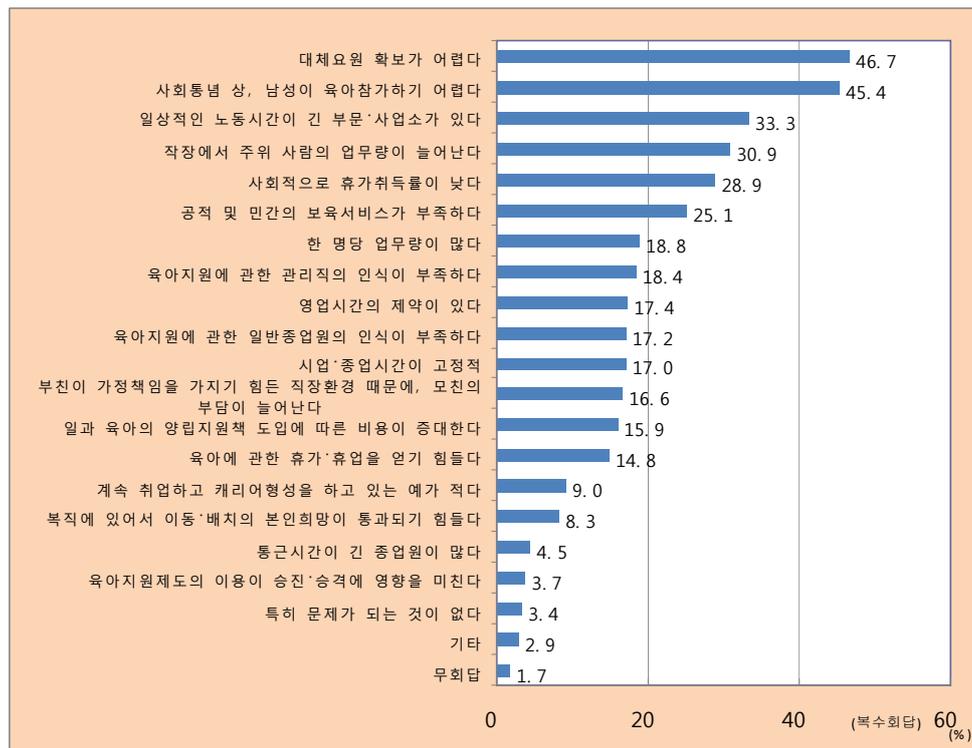
비고: 「생활 중에서의 일·가사(육아)·개인적인 시간(취미 등)의 우선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실』로서의 우선도와 『희망』의 우선도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과 현재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을 1개씩 골라주세요.」의 답변

다. 양립지원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는 이용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근로방식의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양립지원제도는 착실하게 정비되어 오고 있지만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를 실현할 수 있는 일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내각부 「기업의 육아지원과 그 도입효과에 관한 조사연구」(2006년)에서 기업의 양립지원책 이용추진상의 문제점을 찾았는데, 「대체요원의 확보가 어렵다」(46.7%), 「일상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부문·사업소가 있다」(33.3%), 「직장에서 주위 사람의 업무량이 늘어난다」(30.9%)라고 하는 응답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양립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직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겨 상사나 동료에게 그 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고 있어 노동자에게 양립지원제도 이용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3-9] 양립지원책 이용을 저조하게 하는 이유



자료: 내각부 「기업의 육아지원과 그 도입효과에 관한 조사연구」(2006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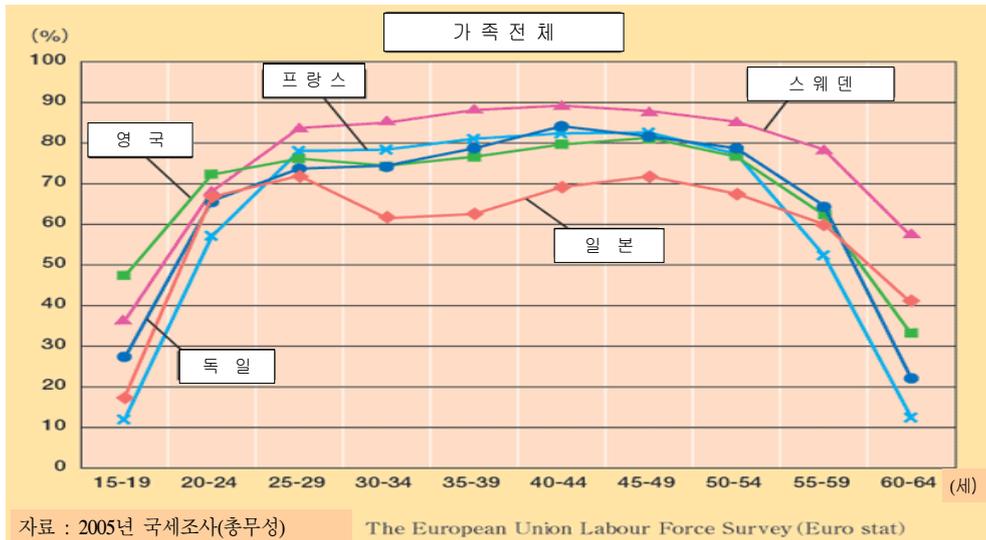
칼 럼

프랑스와 스웨덴의 근로방식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결혼이나 출산, 육아기에 해당되는 30대에서 여성 노동시장참여율이 일단 저하해 6월에 머무는 이른바 M자형 커브를 그리는데 비해, 최근 출생률이 회복경향에 있는 프랑스나 스웨덴에서는 육아기의 노동력 저하는 보이지 않고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나 스웨덴에서 일과 육아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배경으로는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를 실현하기 쉬운 환경이 정비되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나 스웨덴의 근로방식상황을 보면 노동시간이 짧고(연간 평균 노동시간 : 일본 1,775시간, 프랑스 1,535시간, 스웨덴 1,587시간,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 : 일본 28.1%, 프랑스 5.7%, 스웨덴 1.9%), 파트타임 노동의 공정처우규칙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그림 1-3-10]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국제 비교



또, 다양한 근로방식에 대응한 보육서비스의 충실(3세 미만아 가운데, 인가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일본 20%(2006년), 프랑스42%(2004년), 스웨덴 44%(2004년)], 다양한 근로방식에 대응한 세(稅·)사회보장제도의 존재 등도 지적되고 있다.

<표 1-3-11> 노동자의 노동시간 국제 비교

	연간 평균 노동시간(2005)	주 노동시간 50시간이상의 노동자 비율(2000)
스웨덴	1,587시간	1.9%
프랑스	1,535시간	5.7%
독일	1,435시간	5.3%
영국	1,672시간	15.5%
미국	1,804시간	20.0%
일본	1,775시간	28.1%

자료: 연간 평균 노동시간…Database on Labour Force Statistics(OECD)

주 노동시간 50시간 이상의 노동자 비율…Working time and worker's preferenc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Finding the balance 2004(ILO)

2. 근로방식의 개혁에 대한 제언

가. 근로방식의 개혁은 사회전체에서 대처해야 할 과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실현을 목표로 한 근로방식의 개혁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바라는 삶의 방식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회실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사회를 맞이한 일본이 저출산 흐름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노동시장으로의 참가를 추진하여 사회경제의 장기적 안정·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의 과제이다. 그 때문에 최근 저출산 대책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이나 경제의 생산성의 향상, 남녀 공동참가 추진의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나. 경제재정 자문회의 「노동시장 개혁전문 조사회」 제1차 보고

현재의 「근로방식」을 둘러싼 문제를 노동자의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인재를 활용,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모습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경제재정 자문회의 하에 노동시장 개혁전문조사회가 설치되어, 2007년 4월에 제1차 보고가 정리되었다.

제1차 보고에서는,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에, 특히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의 기본적인 모습을 분명히 하여 그것을 위한 10년 후의 목표 수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본격적인 대책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현장을 책정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다. 남녀공동참가회의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에 관한 전문 조사회」

남녀공동참가회의에서는, 「저출산과 남녀공동참가에 관한 전문조사회」에 의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방식 개선」에 대한 제안을 근거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에 관한 전문조사회」를 2007년 2월에 설치해,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에 대하여 그 의의와 중요성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대책의 큰 방향성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해, 동년 7월에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추진의 기본적 방향 보고를 정리했다. 본 보고에서는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실현을 향한 사회기반 조성의 대책이나 다양한 인재로부터 높은 부가가치를 낳는 기업·조직 경영 개혁의 모습이 정리되었다.

라. 중점전략 검토회의의 중간보고

2007년 6월 중점전략 검토회의의 중간보고에서는, 국민이 근로방식에 대한 의식을 바꾸고 기업도 행동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에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나 지방공공단체가 일체가 되어 종합적인 동시에 체계적인 시책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현장」 및 정부에 대하여 「근로방식의 개혁을 추진하는 행동지침」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 경제재정 개혁의 기본방침 2007

2007년 6월 19일에 각의에서 결정된 「경제재정 개혁의 기본방침 2007(기본방침)」에서는, 경제재정 자문회의 「노동시장 개혁 전문조사회」, 남녀공동참가회의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에 관한 전문조사회」, 「아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중점전략 검토회의(중간보고)의 제언 등을 근거로 하여 관계부처의 제휴아래에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현장(가칭) 및 이하의 내용을 포함한 「근로방식을 바꾸는, 일본을 바꾸는 행동지침(가칭)을 책정하는 것이 명기되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취업률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수치목표
-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사회의 실현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의 모습
-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실현을 향한 지원시책, 제도개혁 등에 관한 정부의 횡단적인 정책 방침
- 경제계·노동계를 포함한 국민운동의 추진을 향한 대책방침

제2절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현장」 및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의 개요

1. 현장 및 행동지침의 책정 경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각 방면에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중요성이 지적된 것을 근거로 관민이 일체가 되어 지금까지의 근로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내각관방 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관계각료, 경제계, 노동계, 지방 공공단체의 대표 등으로부터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 관민 대표자회의」(그 후,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 관민 대표자회의」로 개칭. 이하 「관민 대표자회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동년 8월에는 관민 대표자회의 아래에 「근로방식을 바꾸는, 일본을 바꾸는 행동지침(가칭) 책정작업부회」가 설치되어 논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결과에 따라 2007년 12월 18일의 관민 대표자회의에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현장(이하 「현장」이라고 한다.) 및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이하 「행동지침」이라고 한다.)이 결정되어 정노사(政勞使)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에게 의한 서명 후, 후쿠다 내각총리대신에게 수교되었다. 현장 및 행동지

침의 내용은, 같은 날 정리된 「아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림 1-3-12] 현장 및 행동지침의 검토 체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 관민 대표자회의

[구성원]

● 관계각료

내각관방장관 (의장)
 내각부특명담당대신 (저출산 대책·남녀공동참가)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경제재정대책)
 총무대신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

● 단체의 대표자

御手洗 富士夫 (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岡村 正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高本 剛 일본노동조합총연맹 회장
 岡本 直美 NHK 관련노동조합연합회 회장
 麻生 渡 전국지사회 회장

● 전문가

大沢 *모知子 일본여자대학 인간사회학부 교수
 佐藤 博樹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樋口 美雄 케이오대학 상학부 교수
 八代 尚雄 국제기독교대학교 양학부 교수

「근로방식을 바꾼다, 일본을 바꾸는 행동지침」(가칭) 책정작업부회

[구성원]

● 전문가

内永 ゆが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J-Win0사장
 大沢 *모知子 일본여자대학 인간사회학부 교수
 佐藤 博樹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武石 恵美子自 호세이대학 캐리어디자인학부 교수
 樋口 美雄 케이오대학 상학부 교수
 八代 尚雄 국제기독교대학교 양학부 교수
 山川 一 케이오대학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

● 단체의 대표자

(사용자대표)

紀陸 孝 (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전무이사
 田中 常雅 도쿄상공회의소 인건문제위원회 부위원장
 (다이오건설주식회사대표임원사장)
 坂田 甲一 (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 노동법규위원회
 노무관리 문제검토부장

(노동대표)

古賀 伸明 일본노동조합총연맹회 사무국장
 横山 陽子 일본서비스·유통노동조합연합회 중앙집행임원
 杉山 豊治 정보산업 노동조합연합회 정책국장



제2회 「일·가정양립(work-life balance) 추진 관민 대표자회의」(2007년 12월 18일)

(관계각료)	(단체의 대표자)	(전문가)
내각관방장관 町村 信孝	(사)일본경제단체연합회회장 御所 隆富 夫	(일본여자대학 인간사회학부교수) 大 江 真 知 子
내각부특명담당대신(자출산대책,남녀공동참가) 上 川 陽 子	일본상공회의소회장 岡 村 正	(도쿄대학 사회학부연구소교수) 佐 藤 博 樹
내각부특명담당대신(경제재정대책) 大 田 弘 子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회장 高 木 剛	(케이오대학 상학부교수) 樋 口 美 雄
총무대신 増 田 寛 也	NHK관련노동조합연합회회장 岡 本 真 美	국제기독교대학교 양학부교수 八 代 尚 宏
후생노동대신 解 添 子 一	전국지사회회장 麻 生 渡	
경제산업대신 甘 利 明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 관민 대표자 회의 구성원에 의한 서명
(2007년 12월 18일)

2. 현장 및 행동지침의 성격 및 의의

현장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실현을 위한 국민적인 대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 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이 필요한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이 실현된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실현을 위하여 관계자가 완수해야 할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 를 나타내고 있다. 행동지침은 현장에 따라 기업이나 일하는 사람, 국민의 효과적인 대책,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시책방향을 수칙목표 등과 조합해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을 위한 「근로방식의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부 선진적인 기업의 대책은 볼 수 있었지만, 사회전체로의 확대가 부족했다. 이번 현장 및 행동지침은, 그 책정에 있어 정부나 전문가와 함께 경제계·노동계, 지방의 대표가 협의해 합의에 이른 것이어서 향후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추진을 위하여 사회 전체를 움직여 가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3. 현장의 개요

가. 지금 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이 필요한가

현장에서는 일은 생활을 지지하여 삶의 보람이나 기쁨을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가사·육아, 이웃과의 교제 등의 사قم도 생활로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충실이 있어야만 인생을 사는 보람, 기쁨이 늘어난다고 하고, 현실의 사회는 일과 가정 간의 문제를 떠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배경으로 근로방식의 양극화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맞별이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근로방식·역할 분담의식이 이것에 대응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결혼이나 육아에 관한 사람들의 희망이 실현되기 어려워짐과 동시에 「가족의 단란한 시간」이나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어렵고, 저출산의 큰 요인의 하나인 인구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직업 경험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직업능력을 향상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나, 일과 가정 모두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 지역 활동의 참가 등을 보다 중시하는 사람 등도 있다고 하여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어, 인구감소 하에서도 다양한 인제

가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본사회를 지속 가능하고 확실한 것으로 하는 대책이며,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실현을 위한 대책은 인구감소 시대에 있어 기업의 활력이나 경쟁력의 원천인 유능한 인재확보·육성·정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기업에서 「비용」으로서가 아니고, 「내일로의 투자」로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이 실현된 사회의 모습

다음으로 현장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이 실현된 사회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보람이나 충실감을 느끼면서 일하고, 업무상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과 동시에 가정이나 지역생활 등에 있어서도, 육아기, 중노년기라고 하는 인생의 각 단계에 따라 다양한 삶의 방법이 선택·실현될 수 있는 사회」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① 취업에 의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사회
 - ②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
 - ③ 다양한 근로방식·삶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 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 관계자가 완수해야 할 역할

마지막으로 현장은, 위에서 말한 목표로 해야 할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노사를 비롯하여 국민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물론,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기업의 대책을 한층 더 진행해 사회전체의 운동으로서 넓혀 갈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위한 주된 관계자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기업과 노동자

기업과 노동자는 협조하여 생산성의 향상에 노력하면서 직장의 의식이나 직장풍토 개혁과 더불어 근로방식의 개혁에 자주적으로 임한다.

② 국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모습을 생각하고, 가정이나 지역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완수한다. 또 소비자로서 요구하려고 하는 서비스의 배후에 있는 근로방식에 배려한다.

③ 국가

국민 전체의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실현은, 일본 사회를 지속 가능하고 확실한 것으로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으로 국가는 국민운동을 통한 분위기 양성, 제도적인 구조 구축이나 환경정비 등의 추진·지원책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④ 지방공공단체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현상이나 필요성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그 추진시에는 지방공공단체가 스스로 창의적인 연구 하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전개를 도모한다.

4. 행동지침의 개요

행동지침은 현장이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이 실현된 사회의 모습」으로 세운 고령인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을 나타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일하는 사람, 국민의 효과적인 대책,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방침을 정하고 있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 달성목표로 하는 수치목표를 14개 항목에 걸쳐 정하고,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실현 상황 등을 측정하는 지표도 선정·활용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전체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이 실현된 사회」에 필요한 여러 조건

현장에서 나타낸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이 실현된 사회의 모습」의 구체적인 고령인구 사회가 실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 ① 취업에 의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사회
 - 청년이 학교에서 직업으로 원활히 이행 할 수 있을 것
 - 청년이나 모자가정의 어머니 등이 취업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 의욕과 능력에 따라 비정규고용에서 정규고용으로 이행 할 수 있을 것
 - 취업 형태에 관계없이 공정한 처우나 능력개발 기회가 확보될 것
- ②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
 - 기업이나 사회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을 것
 - 노동시간 관계법령이 준수되고 있을 것
 - 건강을 해치는 장시간 노동이 없고,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이 추진되고 있을 것.
 - 유연성 있는 업무의 진행방식 등에 의해 시간 당 생산성도 향상되고 있을 것.
 -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소비 등 직장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이 고려되고 있을 것
- ③ 다양한 근로방식·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 육아중의 부모, 근로의욕이 있는 여성이나 고령자 등이 육아기, 중노년기라고 하는 인생의 각 단계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방식이 가능해지는 제도가 있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 것
 - 다양한 근로방식에 대응한 육아, 간호, 지역 활동, 직업 능력의 형성 등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이 정비되고 있을 것
 - 취업 형태에 관계없이, 공정한 처우나 능력개발 기회가 확보될 것.

나. 각 주체의 대책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실현을 위한 대책은, 각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진행방식을 노사가 함께 이야기하여 자주적으로 임해 가는 것이 기본이다. 일본 사회를 지속 가능하고 확실한 것으로 하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써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도 기업이나 일하는 사람, 국민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근로방식에 대응한 육아지원이나 개호(介護) 등을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행동지침으로 제시한 각 주체의 대책 예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① 기업, 일하는 사람의 대책

기업, 일하는 사람의 대책으로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대표자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장풍토 개혁을 위한 의식 개혁, 유연한 근로방식의 실현 등에 임하고 관리직은 솔선하여 직장풍토 개혁에 임하여 일하는 사람도 직장의 일원으로서 이에 힘쓰도록 하고 있다. 또, 노사에서 근로방식을 개선하여 업무의 진행방식·내용의 개선이나 개인의 능력 향상 등에 의해 시간당 생산성의 향상에 힘쓰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경영자, 관리직, 일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업 내에서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이나 거래처에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에도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여, 취업에 의한 경제적 자립,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시간확보, 다양한 근로방식의 선택에 대해서도 각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② 국민의 대책

국민의 대책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개개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과 소비자의 한명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근로방식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③ 국가의 대책

국가의 대책으로, 전국이나 지역에서의 국민 이해나 정노사(政勞使)의 합의 형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차세대 육성에 대한 기업의 대책 추진, 근로방식에 중립적인 세(稅)·사회보장제도의 모습 검토, 중소기업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일하는 사람의 자기계발이나 능력개발의 대책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선진 기업의 좋은 사례 등 정보 수집·제공·조언, 중소기업 등이 실시하는 노동시간 등 설정 개선의 지원 등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실현에 대처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내세우고 있다. 덧붙여 취업에 의한 경제적 자립,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시간확보, 다양한 근로방식의 선택에 대해서도, 각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④ 지방공공단체의 대책

지방공공단체의 대책으로는 지방의 실정에 맞는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실현을 위한 주민의 이해나 합의 형성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

2

제2부

2007년도 저출산 사회대책의 구체적 실시 상황



육아를 지지하는 「가족·지역의 유대」포럼 전국대회(토야마현)

<육아를 지지하는 「가족·지역의 인연」에 대한 전문가 메시지>

- 아버지의 서포트로 어머니의 안심과 아이의 발육을
小林 登(국립소아병원 명예원장)
- 뇌기능의 발달에는 가족이나 자연과의 다양한 접촉기회가 중요
津本忠治(이화학연구소뇌과학 종합연구센터 유닛리더)
- 사람과의 만남, 따뜻한 꼭 껴안기가 유아기의 신뢰관계를 이룬다
橋本武夫(쿠루메대학소아과 임상교수)
- 육아중의 가족을 사회전체적으로 지지하자
-여유 있는 「기다리는 육아」가 아이를 늘린다-
内田伸子(오차노미즈여자대학 부학장)
- 집에서, 지역에서, 어른의 「존재」감을 재인식하는 시도
明石要一(치바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교수)
-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노력이 커뮤니케이션을 깊게 한다
坂元 章(오차노미즈여자대학대학원 인간문화창성과학연구과 교수)

부록

부록 1. 저출산(少子化) 사회대책 기본법(2003년 법률 제133호).....	197
부록 2.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	202
부록 3.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에 근거한 중점시책의 구체적 실시계획에 대해.....	220
부록 4. 새로운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250
부록 5. 「아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중점전략.....	255
부록 6.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현장	266
부록 7.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	270
부록 8. 기초 데이터.....	284

(모자보건 의료체제의 충실 등)

제13조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는 임신부 및 육아에 대한 건강검진, 모자보건 등 모자보건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체제의 정비, 임신부 및 유아에게 양질의 적절한 의료(조산을 포함)가 제공되는 체제의 정비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모자보건 의료체제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2.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는 불임치료를 원하는 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불임치료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불임상담, 불임치료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여유있는 교육의 추진 등)

제14조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의 교육에 관한 심리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과 충실, 입학자 선발방법의 개선 등에 의해 여유있는 학교교육이 실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아동의 문화체험, 스포츠 체험, 사회체험 기타 체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의 제공,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 및 정보제공, 가정교육에 관한 상담체제의 정비 등 아동이 풍부한 인간성을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생활환경의 정비)

제15조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는 아동의 양육 및 성장에 적합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안심하고 아동을 뛰어 놀게 할 수 있는 광장, 기타장소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아동을 범죄, 교통사고 등의 위해로부터 지키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가 풍요로움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6조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장학사업 및 아동의 의료에 관한 조치, 세제상의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교육 및 계발)

제17조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는 생명의 존엄과 같이 육아에서 가정이 담당하는 역할 및 가정생활에서 남녀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깊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계발을 실시한다.

2.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의 형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계발을 실시한다.

제3장 저출산 대책 회의

(조치 및 소장 업무)

제18조 내각부에 특별기관으로서 저출산 사회대책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둔다.

2. 회의는, 다음 내건 사무를 담당한다.
 - 1) 제7조 대강의 안을 작성하는 일
 - 2) 저출산 사회에서 강구되는 시책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행정기관 상호의 조정을 하는 일
 - 3) 전(前) 2항에서 언급한 업무 이외에 저출산 사회에서 강구되는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의 실시를 추진하는 일

(조직 등)

제19조 회의는, 회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2. 회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
3. 위원은, 내각관방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내각부설치법(1999년 법률 제89호)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명담당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4. 회의에, 간사를 둔다.
5. 간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6. 간사는, 회의의 소장 업무에 대해, 회장 및 위원을 보좌한다.
7. 앞의 각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날 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

저출산 사회대책 기본법(2003년 법률 제133호)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저출산 사회대책의 대강을 별지와 같이 정한다.

(별 지)

1. 대강 책정의 목적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이 진행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합계특수출생률(합계출산율)은 과거 30년 동안,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밑돈 채로, 거의 일관되게 하락을 계속하여, 이 흐름이 바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사회」로 되어 버린 현실을, 우리들은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이다.

미혼화·만혼화라는 결혼을 둘러싼 변화에 더해 최근에는 결혼한 부부의 출산능력 그 자체도 저하되고 있어, 이 상태로는 출생률의 저하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의 결과, 일본은 앞으로 3,4년 안에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소위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베이비붐이 일어날 전조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의 배경에 핵가족화와 도시화에 의한 가정의 양육력 저하, 일찍이 친족과 이웃으로부터 받았던 지원과 지혜를 얻기 힘들게 된 육아의 고립, 육아에 부담감이 크다는 것, 가정생활과의 양립이 곤란한 직장의 상황, 결혼과 가족에 관한 의식의 변화, 청년 실업 증대 등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은 사회와 경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기반부터 흔드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 세금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부담의 증대, 지역사회의 활력저하 등 우리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의 대부분은 저출산의 결과로 인한 인구구조의 왜곡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진행됨으로써 동년대의 동료와 절차타마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유아와 접촉하며 자랄 수 있는 환경까지도 아이들로부터 빼앗아 가고 있다.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라기 힘든 사회가 됨으로써, 자립한 책임감이 있는 사회인이 되기 힘들어 지고 있다고 염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한 위기감이 사회에서 충분히 공유되어 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힘들어져, 학대 등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사회전체의 문제로서 진지하게 받아 들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일이 긴박한 과제로 되었다.

이를 위해, 아동과 육아가정을 세대를 초월하고, 행정과 기업, 지역사회도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과 연대를 만들어 내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추진하고, 나아가 부모의 성장을 지원하여 육아·부모성장 지원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문제를 앞으로 맞이하는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대처하면서 그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공표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 때 국가, 기초자치단체, 지역, 지역 가정 개인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고 자주적이며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해 가는 일이 필요하다.

아동은 사회의 희망이며 미래의 힘이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고 자립심한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는 사회로 변모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시대의 요청이다. 저출산 사회대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기본시책으로서 저출산 사회대책 대강을 정하여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2.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3가지 시점

육아가정이 안심과 기쁨을 가지고 육아에 임할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응원한다는 기본적인 사고에 서서,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책을 국가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서의 자리매김, 앞으로 정부의 대처 방향성을 3가지시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라이프 스테이지의 각 단계에 맞는 시책을 유기적으로 조합하고 효과적으로 강구하여 육아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널리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

(1) 자립에 대한 희망과 힘

『청년의 자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바꾸어 간다.』

청년이 자기실현과 사회에 대한 참여를 목표로 하면서 자신의 선택으로 직업과 결혼, 출산, 육아를 스스로의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은 자립된 사회인이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것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청년 실업자와 소위 프리터의 증가 등 청년이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일을 어렵게 하는 사회의 경제적 상황이 존재한다.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뒤 취직도 진학도 하지 않고 그 의욕도 없는 상태에 빠진 다수의 청년의 존재가 염려되는 상황이며, 부모와 동거하며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미혼자도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등교거부 등 아동을 둘러싼

상황은 최근에 점점 혹독하게 변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직업의식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캐리어 형성을 위해 교육과 고용이 연대를 취해 지원함으로써 청년 실업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이 자립심을 지닌 청년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자연과 사람과 직접 교류를 함으로써 마음이 풍요로운 건강하게 자라고 생활과 사회, 자연과의 관계를 배워 살아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2) 불안과 장벽의 제거

『육아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경감시키고, 직장 우선 풍토를 바꾸어 간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미혼화·만혼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결혼을 희망해도 만남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상황과 출산을 희망해도 일과 육아를 양립시키기 곤란하기에 포기한다는 상황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가족의 다양화, 소규모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정에서 육아에 임하는 부모는 육아의 부담을 혼자서 진다는 것, 사회활동을 제한 받는다는 것 등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의 장벽도 크다. 특히 저연령 아동과 집안에서의 육아에 대한 지원은 한정되어 있다.

또 일본에서는 아버지는 육아에 사용하는 시간이 세계에서도 매우 적다는 것을 지적받아, 아내가 일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아버지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하는 것이 육아가정의 육아스트레스와 불안의 해소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부모가 된 남성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직장을 비롯한 사회가 응원하는 풍토와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이 어린 동안에는 가정에서 기르고 싶다고 원해서 퇴직한 자가, 그 후 자신의 의욕과 능력을 살린 좋은 재취직 기회를 반드시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장벽을 모든 힘을 다해 없애고 육아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망하는 자가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기 쉽도록 하는 환경정비와 함께 직장우선풍토를 시정하는 「근로방식의 개선」을 긴박한 과제로 하여, 가족의 시간과 사적활동 시간을 소중히 하는 직장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3) 육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과 연대 - 가족의 유대와 지역의 유대 -

『생명을 다음 세대로 전하고 보호 육성하는 일과 가정을 이루는 일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

를 깊게 한다.』

가정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과의 애정에 의해 유대를 형성하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과 윤리관, 자립심 등을 몸에 익혀가는 장소이다. 그러나 직장 우선의 풍조 등으로 인해 아동과 시간적·정서적으로 충분히 마주 할 수 없는 부모, 무관심과 방임이라는 극단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고 있는 부모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가정에서 부부가 육아의 기쁨을 공유함으로써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육아의 기쁨과 즐거움이 전해지는 것에도 연결된다.

사람들이 자유와 편안함을 지나치게 바라는 나머지 가정을 이루는 일과 생명을 계승해 가는 일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교육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육아의 즐거움을 실감하고 스스로 생명을 다음 세대로 전하고 보호·육성하는 일과 가정을 이루는 일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육아·부모육성지원사회를 만들어, 지역과 사회전체를 바꾸어 간다.』

육아는 부모와 기타 보호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동시에 육아는 다음세대의 담당자를 육성하는 행위라는 관점으로부터 아동의 가치를 사회전체가 공유하고, 육아가정이 기쁨 속에서 안심하고 육아에 임할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지원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핵가족화, 지역사회의 변화 등, 육아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가정만으로는 육아를 담당하기 힘들게 되었고, 학대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조부모와 부모, 이웃 등 가까운 지역사회에서의 협력네트워크가 유효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이 기대된다. 또 사회경제의 변화와 저출산에 동반되어 임신과 출산,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요구는 크게 변화되었다. 따라서 소아 의료, 모자 보건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일찍이 가족과 지역·취락이 담당하고 있었던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지역과 사회의 힘을 빌려 현대사회에 맞는 형태로 재구축함과 동시에, 육아를 사회전체가 지원해 가는 「새로운 협력과 연대에 의한 육아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공 공간을 비롯한 생활환경에서, 임산부,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육아 Barrier free」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직장 등 사회의 모든 곳에서 육아와 가정생활이 존중되고 사회가 하나가 되어 육아를 지원하는 풍토의 조성 and 아동을 소중히 하는 국가 만들기가 요구되고 있다.

이 때 국가, 기초자치단체, 지역, 지역, 가정, 개인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고 자주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3.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4가지 중점 과제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시점을 바탕으로 특히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중점과제를 4가지 설정한다.

(1) 청년의 자립과 씩씩한 아동의 성장

- 직업을 스스로의 인생설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기초자치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이 일체가 되어, 청년의 자립을 방해하는 요인인 취업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많은 청년들이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서 사회와의 관계를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직장견학, 취업체험 등 빠른 시기부터 직업의식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 청년의 자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면학을 희망하는 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그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제도에 의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 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청년으로 믿음직스럽게 성장하여 의욕이 넘치고 활동적인 사회인이 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정·학교·지역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자연 속에서의 집단생활 체험 등 풍부한 체험활동과 사회의 다양한 사람과 접하는 자원봉사 활동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아동들이 방과 후와 주말에 활동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아동이 자연과 가족이외의 사람과 직접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만남과 풍부한 체험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물, 감성, 사회성을 몸에 익혀 의욕과 체력을 길러 갈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지원한다.

(2)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근로방식의 개선

- 지금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대책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남녀가 함께 일하는 시간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방식을 개선한다. 육아와 일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 만들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앞으로의 경영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 하에 차세대 육성지원대책추진법과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이 진행된다. 동시에 국가·기초자치단체 등의 특정 사업주에게 사회전체의 견인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대책을 촉구한다.
- 결혼과 출산 후에도 육아를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진행한다. 육아휴직을 취득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육아기간 중의 근무시간 단축 등의 조치, 직업능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조치 등의 실시를 추진한다. 섬세하고 종합적인 재취

-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구와 생활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차세대법에 근거한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자주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효과적인 시책을 실시한다.
- 대기아동 제로작전의 실시로 인해 보육원의 대기아동의 해소를 위한 추진을 진행한다.
- 초·중학생의 방과후 지도체제를 대도시 주변부를 중심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요구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방과후 대책을 마련한다.
- 모든 육아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장소에 지역의 육아지원거점을 만들어, 아이의 성장과정에 맞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장소」제공을 통해, 부모의 성장과 육아를 지원해 간다.
이 때에는 가까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육아지원에는 지역의 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과 보육원 등을 지역에 개방하고, NPO등의 민간단체도 포함된 다양한 주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에 관한 대처를 섬세하게 진행한다.
- 아동학대라는 부모와 자식간의 가장 심각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또는 장애아와 그 가족과 편부모가족의 다양한 가정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 모든 아동과 육아를 소중히 하는 사회 만들기와 연관이 있다는 인식 하에 특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한다.
- 지역에서 언제라도 안심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아구급의료체제를 포함하여 임신, 출산으로부터 아동의 건전한 육아와 관련된 보건의료체제의 정비를 충실히 한다. 또 아동복지, 소아의료 등이 연대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아동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다.
- 임신부,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사람에 대해 충분하게 배려를 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관점에서 건축물, 공공교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의 생활환경에 대해 하드·소프트 양면에 걸친 배리어 프리를 추진한다.

4. 추진체제 등

(1) 내각 차원의 대처체제 정비

본 대강에 근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하고, 모든 각료로 구성된 저출산 대책 회의를 중심으로, 내각차원에서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 정기적으로 시책의 진척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수정을 행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 대책 회의 하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저출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동시에, 관련 시책을 사전, 사후에 검토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충분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시책의 추진과 연결한다.

경제재정자문회의, 종합과학기술회의, 남녀공동참여회의 등이 관련된 중요정책회의 등과 긴밀하게 연대·협력을 유지하며 시책을 추진한다.

(2) 중점시책에 대한 구체적 실시계획

본 대강에 포함된 시책에 대해 그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도 중에 시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신신엔젤플랜)을 책정한다.

(3) 구조개혁특별구역제대의 활용

지역의 실정에 맞는 육아지원을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특별구역 제도를 활용한다. 구조개혁 특별구역에서는 규제의 특별조치 실시에 따른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4) 국민적인 이해와 광범위한 대처의 추진

본 대강을 바탕으로, 각계 대표자가 참가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추진하는 국민회의」(1999년 6월 설치)의 대처 방침에 대해 필요한 개선을 실시하고, 보다 넓은 국민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대처를 추진하기 위해, 직장, 가정, 지역, 학교 등에서의 대처를 추진하고, 널리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발산한다.

(5) 대강의 Follow up 등

본 대강에 대해서는, 시책의 진척상황과 그 효과, 출생률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후속조치를 실시하면서, 대략 5년 후를 목표로 개편을 하기로 한다.

별지: 중점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28가지 행동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시점에서 발표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4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먼저 착수해야 할 당면한 구체적 항목 28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그리고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대처도 추진한다.

[청년의 자립과 씩씩한 어린이의 성장]

(1) 청년의 취로지원에 대처

- 「청년자립·도전플랜」(2003년6월 10일 문부과학대신·후생노동대신·경제산업대신·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 협의)에 근거하여 청년의 직업적 자립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고용·산업정책의 연대를 강화, 정책 자원의 중점 투입, 민관 일체가 되어 종합적인 대처의 강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단계에서부터 직장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지속적인 캐리어 형성·취로지원책을 강구한다. 학교와 기업·지역이 연대한 직장체험과 인턴십의 추진 등을 통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아동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인 노동관·직업관을 육성하는 캐리어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중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직장체험과의 선진적 대처 방법의 보급을 시도한다.

그리고 「실무·교육 연계형 인재육성시스템(일본판 듀얼시스템)」의 도입, 전문적 인재를 배치하여 취직 상담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전수학교 등을 활용한 단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청년들의 능력향상을 추진한다.

그리고 연중채용의 보급, 시험고용의 적극적인 활용에 의해 취업경로의 복선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취직 시스템의 정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능력을 축으로 하여 매칭을 가능하게 만드는 청년노동시장의 기반을 정비한다.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세세한 부분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대처로써 민간을 활용하고 청년 고용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정리하여 제공하는 장(場: 청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센터)을 정비한다.

(2) 장학금의 충실을 기한다.

- 청년의 자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면학을 희망하는 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그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 제도에 의한 지원을 한층 추진한다.

(3) 체험을 통해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한다.

- 아동이 지역과 사회와의 관련을 통해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자립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의 연대 하에 다양한 자연체험·사회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예술문화·전통문화체험, 스포츠, 농어촌·산촌 체험, 자연체험 등의 체험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보급·추진을 추진한다.
- 여름방학 등을 이용하여 지방 공공단체와 자연체험활동을 추진하는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하에 아동들이 청소년 교육시설, 야외활동시설 등의 시설과 농가 등에서 공동생활을 통해 야외활동 등의 자연체험활동을 실시하거나 학교교육활동으로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에 의한 체험활동과 숙박학습 등 공동생활체험을 실시한 대책을 지원하고 전국적인 보급을 추진한다.
- 도시공원, 하천 공간, 삼림 등의 정비와 사용방법을 찾아내는 등 가까운 곳의 자연과 안심하고 접촉함과 동시에, 아이들끼리 가능한 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장소를 지역전체에서 확보한다.
- 아동관과 학교 등을 활용하여 아동들이 방과 후와 주말에 스포츠와 문화활동을 하기도 하고, 유아와 고령자 등이 다양한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운동장의 잔디화 등 다양한 활동기회와 장소 만들기를 추진한다. 또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아동들에게 전해 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양성하면서 고령자를 비롯한 타 세대와의 교류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 청소년 단체, 스포츠클럽 등과 연대하여, 청소년이 사회봉사활동과 체험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의 관련을 배울 수 있는 계속적인 활동의 장을 제공한다. 그리고 움츠러들기 쉬운 청소년 등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자연체험과 생활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가 계기를 만들수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4) 아동의 학습을 지원한다.

- 아동들에게 「확실한 학력」 풍부한 인간성, 건강과 체력 등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학교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교 운영과 학교 구의 탄력화 등을 통한 매력 있는 공립학교 만들기, 종합학과와 학점제 고등학교 등의 특색있는 고등학교 만들기를 추진한다. 보호자 회의의 야간개최, PAT활동에 일하는 부모의 참가추진 등 학교에 지역주민이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근로방식의 개선]

(5) 기업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한다.

- 차세대법에 근거하여 일과 육아의 양립 등에 관해 기업의 자주적인 대처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일반 사업주 행동계획의 책정·실시를 지원함과 동시에, 동법의 기준에 따라 일반사업주 인정제도의 활용을 추진한다. 그리고 차세대법의 인정기업을 중심으로 행동계획의 내용과 달성상황을 자주적으로 공표하도록 유도한다. 특정사업주에 관해서는 스스로의 행동계획을 공표하게 한다. 국가는 그 실시상황을 공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실시상황의공표를 추진한다.
- 기업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양립지표의 주지·광고 등을 통해 다양하고도 유연한 근로방식을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일과 육아가 양립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갖춘 기업(패밀리·프렌들리기업)의 보급을 추진한다.

(6) 육아휴직제도 등에 대한 대처를 추진한다.

- 일정한 경우에 1세 6개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의 연장과 아동의 간호휴가제도의 창설 등을 통해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 등을 한층 더 추진한다.
- 육아휴직취득률 등에 대해서 사회전체가 목표치 달성을 향해, 남성도 육아휴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보급개발 등과 대처를 추진한다. 또 안심하고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단축 등의 조치를 도입한다. 그리고 아동의 간호휴가 취득을 추진한다.
-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율 10% (2002년도 실적 0.33%)
- 여성의 육아휴직 취득율 80% (2002년도 실적 64%)
- 초등학교 취학시기까지의 근무시간 단축조치의 보급률 25% (2002년도 실적 9.6%)
- 육아휴직취득 후 등에 안심하고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 능력의 유지향상을 위한 조치 등의 실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7) 남성의 육아참가 추진을 위한 아버지 프로그램 등을 보급한다.

- 남성노동자가 육아를 위한 휴직 등(육아휴직·간호휴가·연차휴가 등)을 취득하기쉽도록 하기 위한 대처(예를 들면 남성의 육아참가를 위한 아버지 프로그램을 노동자 스스로 작성하고 직장 전체가 프로그램을 실시를 서포트 하는 대처 등)의 보급을 추진한다.

(8) 노동시간의 단축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방식의 실현을 위해 환경 정

비를 도모한다.

-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추진 및 소정 외 노동의 삭감 등에 의해 연간 총 노동시간 1,800시간의 달성·정착을 시도한다. 동시에 플렉스타임제 등의 탄력적인 노동시간제도의 보급을 추진한다.
- 「워크셰어링에 관한 노사정합의」(2002년 3월29일 후생노동대신·일본경영자단체연맹회장·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회장 합의)에 근거해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제도 도입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책 검토 등 워크셰어링의 환경정비 등에 대해 조기에 대처한다. 업종별로 단시간 정사원 등 다양한 근로방식과 관련된 모델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다양한 취업형 워크셰어링」의 보급을 추진한다.
- IT를 이용한 텔레워크의 추진을 위한 보급 계발을 시도한다.
- 파트타임 노동법을 토대로 한 지침 내용대로 파트타임노동자가 근로방식에 맞는 균형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사고방식을 보급한다.
- 일하는 사람이 생애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방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유연한 근로방식을 가능케 하는 환경 정비를 비롯하여 고용제도전반에 걸친 검토를 실시, 법적 정비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운영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플렉스타임제, 단시간 근무제, 재량근무제 등의 다양한 근무형태의 도입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을 한다. 또 민간기업의 상황을 참고로 하여 초등학교 취학기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책에 대해 검토한다.

(9) 임신·출산하고도 안심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직장환경의 정비를 추진한다.

-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근거하여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해고금지와 통원휴가 등을 비롯한 모성건강관리 조치, 노동기준법에 근거한 산전산후 휴직 등 모성보호규정의 철저한 주지를 추진하면서 직장에서 고정적인 성별역할부담의식의 해소, 직장 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존중하는 직장풍토의 형성, 직장 내 관행의 시정을 위한 계발활동을 실시한다.

(10) 재취직 등을 추진한다.

- 육아 등을 이유로 하여 퇴직하고 재취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정보제공과 커리어컨설팅트 등에 의한 상담실시, 육아시간을 배려한 직업훈련의 추진 등의 재취직준비를 위한 계획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도 종합적인 재취직지원책의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출산부인과 육아를 위해 퇴직하면서 퇴직 시에 앞으로 재취직을 희망하는 의

사를 표명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재고용특별조치를 추진한다.

- 취업의욕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육아 등의 부담 때문에 단시일 내에는 취직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육아가사 등과 취직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양립지원 헬로워크」를 통해 직업정보의 제공, 가이드선의 실시, 다양한 직업소개 실시 등을 통해 재취직 원조를 추진한다.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

(11) 유아와 접촉하는 기회를 최대한 늘리도록 한다.

- 중·고교생 등이 보육원, 아동관, 유아검진 장소 등에 참가하여 유아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대치를 추진하거나 중·고교생 자원봉사 베이비시터의 육성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아동과 가정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2)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추진한다.

-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의 기쁨과 의의, 생명의 존엄, 생명계승의 소중함,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깊게한다. 또 학교 교육에서 발달단계에 따라 저출산 사회의 문제와 그 대응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능토록 한다.

(13)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형성에 대한 이해를 추진한다.

- 가정, 학교, 지역, 직장 등에서 본 대강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하는 동시에,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형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추진한다.
-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하는 남녀가 그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환경정비를 진행한다.

[육아의 새로운 협력과 연대]

(지역의 육아지원)

(14) 취약전 아동의 교육·보육을 충실히 한다.

- 대기아동 제로작전의 실시에 의해 대기아동이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보육원 등의 수용아동수의 증대를 통해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대치를 진행한다. 대기아동이 많

은 지역에서 정원기준의 탄력화, 보육원 분원의 설치 추진, 유치원 정원을 근처의 광장·공원에서 대용을 가능케 하는 등의 설치기준의 탄력화 등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질 높은 미인가 보육시설을 인가보육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육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쉽도록 하는 조건정비에 힘쓴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 PFI 방식의 활용, 공유재산 대부와 공공시설 민영방식의 활용에 의해 다양한 사업자의 능력을 활용한 보육원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 공립보육원이 실시하는 연장보육도 민영보육원 수준을 목표로 하여 일시보육, 휴일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실시하며 데려가고 데려오기의 추진, 병후회복기에 집단보육이 곤란한 기간 동안 맡아서 보육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유치원이 맡아서 보육하는 등의 육아지원을 추진한다.
- 보호자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원 각각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교육·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자격의 병유와 시설설비의 공유등, 유치원과 보육원의 제휴를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취학전의 교육·보육과 초등학교와의 제휴도 추진한다.
- 취학전의 교육 보육을 하나로 본 일관된 종합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를 2004년도 중에 정리하고 2005년도에 시행 실시하여 2006년도부터 본격적인 실시를 목표로 한다.
- 유치원 및 보육원의 교육·보육 내용의 충실을 기하면서 이용자의 선택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동시에 보호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자기점검평가와 제3자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15) 방과후 대책을 충실히 한다.

- 방과후 아동클럽과 지역의 모든 아동의 활동장소를 확보하는 사업 등 초·중학생의 방과후 수용체제를 대도시 주변부를 중심으로 정비한다. 이용자의 요구와 지역의 실정에 따라 민간 주체와 지역의 인재 활용에 의한 효과적인 방과후 대책을 추진한다.

(16) 지역의 육아지원 거점 등의 정비 및 기능을 충실히 한다.

- 육아중인 부모와 아이가 모여 상담, 정보교환, 교류를 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과 육아서클지원과 육아상담을 실시하는 「지역육아 지원센터」등을 여유교실 등 공공시설의 여유공간과 상점가의 빈 점포등도 활용하면서 육아지원 거점으로서 가까운 곳에 설치를 추진한다.
- 육아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역의 유치원과 보육원과 아동관을 이용한 다양한 육아강좌, 부모와 아이교실, 상담사업 등, 부모가 육아에 대한 지식과 사고를 익혀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모와 아이의 성장의 장」을 제공을 추진한다. 이 때 행정과 육아

지원단체와의 연대에 유의하면서 시간설정 시 일하는 부모에 대한 배려와 탁아 등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에 대한 배려를 한다.

- 육아가정이 적절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정촌(市町村) 마다 「육아지원종합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또 육아중인 부모의 가벼운 상담상대로 「육아서포터」의 리더가 되는 인재 등을 양성한다.
- 육아중인 노동자와 주부 등을 회원으로 하여 지역에서 육아상호 원조활동을 하는 패밀리서포트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

(17) 가정교육을 지원한다.

- 기본적 윤리관과 사회적인 매너, 자제심과 자립심 등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교육에 대한 학습기회 및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정교육에 관한 상담체제의 정비 등을 실시한다. 이 때 행정과 육아지원단체와의 연대와 가정교육수첩의 활용에 유의하면서 가정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가, 시간설정시 부모에 대한 배려와 탁아 등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에 대한 배를 한다.

(18) 지역주민의 힘을 활용, 민간단체의 지원, 세대간 교류를 추진한다.

- NPO 등의 민간단체에 의한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육아지원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고령자 등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세대간 교류도 추진한다.

(19)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부터 육아지원을 충실히 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으로부터의 고립과 육아불안 등 양육지원을 필요로 하기 쉬운 상황에 있는 가정을 파악하고 방문지원 등의 대처를 추진한다.
-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아동상담소와 시정촌(市町村), 학교 등 관계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학대방지네트워크의 설치추진 등 상호 연대에 의한 대책을 추진한다.
-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해서 보호와 자립지원, 부모와 아이의 재통합 추진으로의 배려, 양호한 가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양부모의 확충과 시설 등의 충실, 적절한 교육의 확보, 가족을 포함한 재택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거주 장소의 확보, 진학과 취업 지원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또 학대를 받은 아동의 케어와 학대를 한 보호자의 지도·지원 방법 등에 대한 조사연구 등도 실시한다.

(20) 특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육아지원을 추진한다.

- 편모 및 편부가정이 안심하고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편모가정 등의 육아 생활지원책, 취업지원책, 경제적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자립을 지원한다.
- 장애아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한다는 관점으로부터 적절한 의료 및 의학적 리허빌리테이션을 제공하고, 풍요로운 지역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데이서비스(day service) 등을 충실히 하는 것과 동시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한다.
- 발달장애에 대해 상담·조은 등을 실시하여 자폐증·발달장애 지원센터정비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기관의 제휴에 따라 조기발견과 진단, 상담지원, 치료·교육지원, 지역생활지원, 취로지원 등 유아기부터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 지원을 실시한다
- 소아만성특정질환 대책은 치료법의 진보 등 사업을 둘러싼 상황이 변한 사실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것과 동시에 제도의 개선·중점화를 실시하여 새로운 소아만성특정질환 대책을 확립한다.

(21) 행정서비스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 지방공공단체자치단체의 아동관련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횡적연대를 추진하여 창구와 정보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일원적 행정서비스의 실시를 추진한다.

(아동의 건강을 지원)

(22) 소아의료체제를 충실히 한다.

- 병원 소아의료의 체산성 악화, 의사의 과중한 노동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아동이 지역에서 언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의료체제를 포함하여, 소아의료체제를 충실히 한다. 이를 위해 소아과·산부인과 의사를 확보·육성한다. 동시에 소아의료에 대한 진료 보수상의 평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검토한다. 졸업 후 임상연수 시에 소아과 연수의 필수화를 포함하여 소아과 연수를 충실히 한다. 연수과목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소아과를 초기연수의기본 과목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의료기관의 임상심리사, 보육사 등 소아의료를 지원하는 직종의 충분한 확보와 아동복지 교육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연대체제를 정비한다.

(23) 아동의 건강을 지원한다.

- 아동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매뉴얼 개발과 「식생활 지침」의 추진 등을 통해 「식육(食育)」의 보급을 추진한다.
- 가정내 등에서 아동의 사고방지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추진한다.
-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으로서 의사, 보건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사춘기의 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연수를 실시하여 정신보건복지센터 등에서 사춘기 아동의 전문적 상담을 충실히 시행한다.
- 성에 관한 건전한 의식함양과 올바른 이해의 보급, 상담 등의 대처를 추진과 동시에 아동의 심신발달에 관한 연구 활동을 추진한다.

(임신·출산 지원)

(24) 임신·출산 지원체제, 주산기 의료체제를 충실히 한다.

- 임신·출산에 관한 상담, 임신부가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의 제공 등 임신·출산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충실히 하는 것과 동시에 산모의 시점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출산」의 보급을 추진한다. 또 위험한 상태에 빠진 임신부와 미숙아, 주산기 의료를 위한 네트워크의 정비 등, 주산기 의료체제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진료보수 상의 평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25) 불임치료에 대해 지원 등의 대처를 추진한다.

- 불임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 등을 실시하는 「불임전문 상담 센터」를 도도부현 별로 설치하여 불임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충실히 한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불임치료의 윤리적·기술적인 면, 의료기관의 체제정비 등의 과제에 대해 대처한다. 동시에 불임치료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불임을 둘러싼 요인 등, 불임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또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면서도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양부모제도를 주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육아를 위한 안심, 안전한 환경)

(26) 양질의 주택·거주환경의 확보를 추진한다.

- 가족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의 공급 추진과 주택관련 융자제도와 세제우대 조치의 활용,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실정에 따른 다자녀세대의 우선입주제도 활용을 통해, 2세대 주

택을 포함한 다양한 거주형태에 대응하면서 육아에 적합한 주택의 확보를 지원한다. 또 통근시간의 단축에도 도움이 되도록 건축규제의 특례조치 활용을 통한 도심형 주택의 공급추진과 종합적인 주택 시가지의 재생·정비를 통해 직장과의 거리 단축을 추진하는 것 외에 공공임대주택 등과 보육원 등의 육아지원 시설의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또, 시크하우스 대책을 추진한다.

(27) 육아 배리어 프리 등을 추진한다.

- 임산부,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공공교통기관 및 공공시설등에 대해 바닥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등의 배리어 프리화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베이비 침대 등이 설치된 화장실의 정비를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추진한다. 또 임산부와 아이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이 건물입구 근처에 확보를 추진한다.
- 「육아 배리어 프리」지도의 작성·배포와 공공교통기관과 숙박시설 등의 배리어프리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육아 배리어 프리의 보급 계발을 시도한다.
- 극장, 레저 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기관에서 아이를 동반한 사람들의 우선적인 입장과 요금할인 서비스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성청의 협력을 얻어 관계 업계 등에 대해 요청한다. 유아동반 이용자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획이 나뉜 열람실의 설치 등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 극장, 홀 등에 오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
- 임산부, 아동을 동반한 사람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환경을 정비한다.
- 건축물, 공원 등의 시설 등에 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임산부, 아동을 동반한 사람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 택시사업자와 육아지원센터 등이 연대하여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수송서비스(STS: 스페셜·트랜스포트·서비스)의 보급을 추진한다.
- 육아부담의 경감 등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육아관련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추진한다.

(경제적 부담의 경감)

(28) 아동수당의 충실을 꾀하고, 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한다.

-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연령을 취학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연장한다.
- 개인소득과세에서 인적공제의 기본구조를 개편함에 있어 아동 등에 대해 부양공제를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폭 넓게 검토한다.

- 직업과 산업의 실태, 근로의 의의, 직업생활에 대해 학생에게 이해시키고 스스로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헬로 워크를 통해 기업인 등을 강사로 학교에 파견한다.(후생노동성)
- 인턴십(취업체협)의 추진
 - 인턴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대처하는 대학 등의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의욕향상과 높은 직업의식의 향상 등에 의의를 지닌 인턴십을 추진한다.(문부과학성)
- 청년을 위한 윈스톱 서비스 센터(Job Cafe)에서 지원을 추진
 - 청년을 위한 윈스톱 서비스 센터에서 지역의 기업과 학교 등과 연대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 카운슬링과 직업소개 등의 각종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한다.(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
- 청년자 시행고용의 활용
 - 학교졸업 미취업자 등의 직장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고령인구월간의 시험고용을 활용하여 정식 고용의 실현을 지원한다.(후생노동성)
 - 향후 5년간 목표: 정식고용 이행율 80% (2006년까지의 목표)
- 일본판 듀얼시스템의 추진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인 교육·직업능력 개발의 방법으로써 기업에서의 실습과 교육·직업훈련의 병행 실시에 의해 청년을 한사람의 직업인으로 기르는 새로운 직업훈련 시스템인 「일본판 듀얼시스템」을 추진한다.(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 캐리어·컨설턴트의 양성·활용 추진
 - 개개인의 직업생활의 설계와 그에 맞는 직업선택, 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캐리어·컨설턴트」를 양성함과 동시에 그 활용을 추진한다.(후생노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약 2만 명 (2003년도)→약 5만 명 (2006년도까지 달성)
- 직장정착의 추진
 - 지역에서 젊은 노동자의 상호교류와 기업인사 관리자의 강습 등의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근로와 관련된 폭 넓은 상담에 바로 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후생노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신규졸업자의 취직후 3년이내 이직률의 매년 전년도 대비감소(2006년까지의 목표)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

◇ 청년이 의욕을 가지고 취직해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되는(조기에 청년실업자의 증가경향을 전환(프리터 약 200만 명, 청년실업자무직자 약 100명이 각각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을 목표로 한다.)

주: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은 본 플랜에서 내세운 구체적인 시책을 중심으로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하동문)

나. 장학금 사업의 충실

○ 청년의 자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면학을 희망하는 청년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그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한다.

【구체적 시책】

- 일본학생 지원기구 장학금 사업의 충실
 - 청년의 자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면학을 희망하는 청년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 기회를 잃지 않도록 장학금 제도에 의한 지원을 한층 추진한다.(문부과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기준을 만족시킨 희망자 전원에 대한 대여를 향해 노력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

◇ 교육을 받을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가 경제적 이유에서 학업을 단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체험활동을 통한 품성하고 여유 있는 인간성의 육성

○ 아이들이 다양한 자연체험·사회체험활동 기회를 가지고 자연과 사람과 어울리는 동안에 기본적인 룰, 감성, 사회성 등을 몸에 익혀, 의욕이 넘치는 자립심이 강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 시책】

- 아동의 다양한 활동기회와 장소만들기 추진
 - 아이들이 방과후와 주말에 다양한 체험활동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대책을 추진한다.(문부과학성)
- 지역 자원봉사 활동의 추진
 - 아동과 지역사회와의 관련을 깊게 하여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학점 인정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한다.(문부과학성)
- 학교에서의 체험활동 충실
 - 아동학생의 사회성과 풍요로운 인간성을 기르기 위해 도시부에서 농어촌과 자연이 풍요로운 지역으로 가서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장기간에 걸친 집단

생활 등의 공동체 체험 등을 비롯한 타교의 모델이 되는 체험활동을 실시한다.(문부과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완성된 체험활동이 실시 되도록 할 것.
-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체험활동의 충실
 -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장기 사회체험활동 등의 주체성·사회성을 기르는 체험활동을 추진한다.(문부과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전국에 보급 (2007년까지 달성)
- 아동 에코클럽 사업의 추진
 - 아동 에코클럽을 통해서 가까운 지역사회에서의 자주적인 환경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등 체험활동의 추진을 꾀한다.(환경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초중학생 아동 에코클럽 등록자수: 82,299명(2003년)→11만명(2006년까지의 목표)
- 아동 파크레인저 사업 추진
 - 아동 파크레인저 사업을 통하여 국립공원 등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등 자연체험활동을 추진한다.(환경성)
- 농림어업 체험활동 등의 추진
 - 농어촌의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농어촌 체험활동과 자연체험활동 등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성의 육성을 꾀함과 동시에 자연을 안심하고 느낄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농림수산성)
- 도시공원의 정비
 - 도시공원의 정비와 활동을 통해 가까운 자연을 느끼고 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장을 지역전체에서 확보한다.(국토교통성)
- 하천공간을 활용한 체험활동의 추진
 - NPO, 자원봉사단체 등과 제휴하여 하천 특유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한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교류·자연체험·환경교육의 장으로써 가까운 곳에 물가환경의 정비를 실시한다.(국토교통성)
- 자연·사회 교육활동 등의 장으로서의 해안 만들기
 - 해안의 자연·사회교육 활동 등을 안전하게 즐기며 도시·농어촌 및 세대간의 교류의 장이 되는 해안 만들기를 추진한다.(농림수산성·국토교통성)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

◇ 자원봉사 체험, 자연체험, 사회체험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서 많은 아동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라. 아동의 학습지원

○ 아동이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학교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매력 있는 공립학교 만들기를 비롯하여 아동의 학습을 지원한다.

【구체적 시책】

- 의무교육의 개혁추진
 - 의무교육의 도달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학력의 양상, 교원의 자질 향상 등을 비롯한 의무교육개혁을 추진해, 신뢰되고 안심하고 아동을 위탁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를 시도한다.(문부과학성)
- 「살아가는 힘」을 육성
 - 학습의욕의 향상과 지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력 향상 액션플랜」의 추진과 능력별 지도와 소수지도의 추진 등에 의해 「확실한 학력」의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의 충실 등에 따른 풍부한 인간성의 육성을 시도한다. 그리고 학교의 체육·운동부활동의 충실 등에 의한 아동의 건강과 체력을 기른다.(문부과학성)
- 지역의 열린 신뢰 받는 학교 만들기
 - 학교 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의 공표를 추진함으로써 학교가 설명책임을 다하고 교육활동의 개선을 꾀한다. 학교 평의원제도와 보호자와 지역주민이 공립학교운영에 참여하는 학교운영협의회 제도(커뮤니티스쿨)의 설치를 추진한다.(문부과학성)
- 특색있는 고등학교 만들기
 - 다양화하는 학생의 실태에 대응하고 학생의 개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장래의 과학기술계 인재와 전문적 직업인을 육성하고 종합과학과 학점(단위)제 고등학교 등 특색있는 학교·학과 등의 설치를 추진한다.(문부과학성)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

◇ 아동들이 「확실한 학력」풍부한 인간성, 건강과 체력 등의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하는 학교교육이 추진된다.

2.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그리고 근로방법의 개선

- 직장우선 풍토를 바꾸어 근로방법의 재검토를 피하고 남성도 여성도 모두 사회속에서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육아에 확실히 힘과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한다.

가. 기업 등에서의 한층 더 대책 추진

【구체적 시책】

- 일반사업주의 행동계획 책정·실시의 지원
 - 중소기업도 포함해,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에 근거하여 일반 사업주 행동계획의 책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해당 계획에서 정한 목표달성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인정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린다.(후생노동성)
 - 5년간의 목표: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차세대 육성지원에 대처하는 기업의 비율(대기업 100%, 중소기업 25%)
 -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에 근거한 인정 기업수 : 계획책정 기업의 20% 이상
- Family-Friendly 기업의 보급 추진
 - 사업주의 의식계발 등에 의해, 일과 육아가 양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직장환경을 가진 기업(Family Friendly 기업)의 보급을 추진한다.(후생노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 표창 기업 수 : 227개 기업(2004년까지의 누계)→700개 기업(2009년까지의 누계)

나. 육아휴직제도 등에 대한 대책 추진

【구체적 시책】

-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 육아·개호 휴직법에 대해, 제도의 주지 등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업의 제도로서 정착되도록, 육아휴직제도가 취업 규칙에 미정비된 사업소의 지도를 철저히 한다.(후생노동성)
 - 5년간의 목표: 육아휴직제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 : 61.4%(2002년) →100%
- 육아휴직의 취득 추진, 육아 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 등 여러 조치의 보급 추진
 - 육아휴직 취득율의 목표달성을 위해 직장의 의식개혁을 진행하기 위한 계발활동과 우

수사례의 보급을 꾀한다. 또 사업주에 대한 지도와 조성 등에 의해 육아기간중 근무시간 단축 등의 조치의 도입추진을 꾀한다.(후생노동성)

- 시간외 노동의 제한, 심야근무의 면제, 아동의 간호휴가의 제도 정착
 - 육아중인 노동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시간외 노동이 제한(년150시간까지)되는 제도및 심야노동이 면제되는 제도와 노동자가 병에 걸리거나 다친 아이의 간호를 위해 설 수 있는 제도를 주지·철저를 꾀한다.(후생노동성)

다. 남성의 육아참가의 추진

【구체적 시책】

- 남성의 육아참가 추진을 위한 대책의 추진
 - 남성의 육아참가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직장의 의식개혁,관리직과 종업원에 대한 연수 실시, 유아휴직 취득자가 나온 경우 고용관리규칙의명확화 등 대처방법을 추진한다. 또 아동의 출생시 5일 정도 휴가를 취득하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에 바탕을 둔 특정 사업주 행동계획을 근거로 해서 관공서가 출선해서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에 대한 보급을 꾀한다.(후생노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에 근거한 인정기업(남성의 육아휴직 취득실적이 있는 기업)의 비율: 계획 책정 기업의 20%이상

라.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을 이룬 근로방식의 실현

【구체적 시책】

- 개개인의 생활 등을 배려한 노동시간의 설정 개선을 위한 노사의 자주적인 대처의 추진
 - 노동시간의 단축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시단법)에 대해 육아를 비롯한 노동자 개개인의 생활 등을 배려한 노동시간, 휴일, 휴가의 설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선한다.(후생노동성)
-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캠페인의 추진(「단시간집중」형 근로방식 등의 보급)
 - 생산성 향상을 피하기 위해 각 기업 등에서 업무와 작업의 수순 등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 보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을 진행 할 수 있는 대처와 재택근무, 단시간 취로 등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의식계발을 실시한다.(후생노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모든 관공서와 대기업이 대처

- 장시간에 걸친 시간외 노동의 시정
 - 육아기에 있는 노동자의 생활 등을 배려하면서 노동시간 등의 설정 개선을 시도하는 일이 인재의 확보와 생산성의 향상에 이어진다는 것을 노사 당사자에게 주지시키면서 탄력적인 노동시간제의 활용 등에 의해 다양한 근로방식을 실현함으로써 장시간에 걸친 시간외 노동의 시정을 시도한다.(후생노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장시간에 걸친 시간 외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1할 이상 감소 : [주 노동시간 60시간 이상의 고용자의 비율 12.2%(2003년)]
- 연차유급휴가의 취득 추진
 -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취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제도의 도입, 우수사례의 소개와 의식 계발활동을 추진한다.(후생노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기업 전체와 관련된 노동자 1인 평균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율 : 47.4%(2003년)→적어도 55%이상
- 파트타임 노동자의 균형 처우 추진
 - 파트타임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의 사이의 균형 처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고방법을 제시한 파트타임 노동법에 근거한 지침이 침투·정착되도록 대처함과 동시에 처우와 인사제도의 재검토 등 균형잡힌 처우를 추진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후생노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파트타임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의 균형잡힌 처우를 위한 환경의 정비를 진행하는기업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 유연한 전환제도의 도입 추진
 - 다양한 근로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코스별 고용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에서 소위 종합직·일반직 상호간의 코스전환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병행해서 파트타임 노동자의 일반노동자로의 전환제도의 보급을 시도한다.
- 다양 취업형 워크 세팅의 보급 추진
 - 2005년 중에 단시간 정무원 등 공정한 처우가 도모된 다양한 근로방식의 도입을 목표로 다양취업 워크 세팅의 「제도도입·이용메뉴얼」을 개발해 이것을 이용해 다양 취업형 세팅의 보급을 꾀한다.(후생노동성)
- 텔레워크의 보급 추진
 - 텔레워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텔레워크에 관한 기업 내 제도와안정성 높은 텔레워크 환경의 도입을 추진, 창업·사업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환경의 정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정비, 추진 조직에 의한 보급 활동 등을 통해서 적절한 취업환경 하에서의 텔레워크의 보급 추진을 꾀한다.(총무성·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취업인구에 차지하는 텔레워커(※)의 비율
(※) 정보통신 수단을 주 8시간 이상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방식의 근로를 하는 사람 : 6.1%(2002년)→20% (2010년까지의 목표)

□ 공무원 근로 형태의 탄력화·다양화

-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제도를 탄력화·다양화 하여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추진한다.(총무성·인사원)

마. 안심하고 임신·출산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의 정비

【구체적 시책】

□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의 시정

-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받은 부당대우에 대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한다. 동시에 해고 이외의 부당처우에 대한 법적 정비를 검토한다.(후생노동성)

□ 모성건강관리를 위한 대책 추진

- 의사 등의 지도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연락카드의 활용 등을 통해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적합한 모성건강 관리를 추진한다.(후생노동성)

□ 기업의 포지티브·액션의 보급추진

- 남녀가 직장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 평가처우를 포함한 기업의 포지티브·액션의 보급추진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 때 출산과 육아에 의한 결근 등이 핸디가 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제도, 능력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후생노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대책 기업의 비율 : 29.5%(2003년도)→40%

바. 재취직 등의 추진

【구체적 시책】

□ 재취직 준비 지원의 추진

- 육아 등을 위해 퇴직한 뒤 앞으로 재취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재취직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 계획의 책정과 지원, 직장체험 강습의 실시, 재취직에 도움 되는 정보의 제공을 행하는(재도전 서포트 프로그램)등의 섬세한 지원을 추진한다.(후생노동성)

□ 육아시간을 배려한 직업훈련 등의 추진

- 육아 중인 구직자가 공공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코스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한

다. 그리고 민간기업도 활용하여 재취직 희망자의 요구에 따른 직업 훈련을 실시한다. (후생노동성)

□ 양립지원 헬로 워크에서 재취직을 위한 원조 등을 추진

- 육아가 일단락되어 재취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육아가사 등과 취직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을 동반한 사람이 이용하기 쉬운 시설을 갖춘 「양립지원 헬로 워크」에서 취업정보제공, 가이드스 실시 다양한 직업소개의 실시 등의 재취직을 지원한다. 그리고 직무분석에 근거한 직업능력평가제도의 정비에 의해 개인의 직업능력과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능력이 명백해 짐으로써 원활한 재취직을 추진한다.(후생노동성)

□ 구인 연령 상한의 완화 추진

- 육아가 일단락되어 재취직을 희망하는 자 등이 구인 연령 제한에 의해 구직활동의 제약 받는 일이 없도록 헬로 워크의 창구 등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계발지도를 행하는 등 구인 연령 제한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후생노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공공직업안정소에서의 모든 구인에 차지하는 연령불문구인의 비율 : 15.2%(2003년도)→30% (2005년도)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

- ◇ 희망하는 자 모두가 안심하고 육아휴직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만든다.(육아휴직 취득율 남성10%, 여성80% / 초등학교 취학 시기까지의 근무시간 단축 등의 조치보급율 25%)
- ◇ 남성도 가정에서 확실하게 아동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육아기 남성의 육아 등의 시간이 선진 여러나라 수준이 되도록)
- ◇ 근로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육성 활용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상승함과 동시에 육아기에 있는 남녀의 장시간 노동이 시정된다.
- ◇ 근로방식을 다양화하여 선택 가능한 형태를 준비한다.
- ◇ 육아기에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게 되는 자의 비율이 감소됨과 동시에 육아가 일단락 된 후의 원활한 재취직이 가능하게 된다.

3.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

○ 앞으로 부모가 될 모든 사람들에게 유아기의 아이와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아이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 시책】

- 유아와의 접촉기회 확대
 - 보육원, 아동관, 보건센터 등에서 중·고교생이 유아와 만나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후생노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모든 보육원, 아동관, 보건센터에서 수용을 추진
- 생명의 소중함과 가정의 역할 등에 관한 학교교육의 충실
 -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가정의 역할, 보육체험을 포함하여 육아 이해에 관한 교육을 추진한다.(문부과학성)
- 안심하고 아동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에 대해 지역주민과 관계자가 함께 참가하여 같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
 - 육아와 육아지원에 관한 각종 포럼, 워크숍의 개최와 아동 참가형 이벤트를 실시하여 아동과 어른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등을 통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사회 전체가 응원하는 의식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후생노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모든 시정촌(市町村)에서 실시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

- ◇ 다양한 곳에서 중·고등학생이 유아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 많은 청년이 육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육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비율이 늘어난다.)
- ◇ 전국의 시정촌(市町村)에서 지역주민과 관계자가 함께 육아를 응원하는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4. 육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과 연대

가. 섬세한 지역의 육아 지원 전개

○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부모와 자식의 성장을 지역이 뒷받침하고 가정 안에서만의 고립된 육아를 없앤다.

(※)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근거하여 시정촌(市町村) 행동계획에 포함된 목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2009년의 목표치는, 각 시정촌(市町村)의 집계결과를 고려하여 설정)

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 거점의 정비

【구체적 시책】

□ 지역의 육아지원 거점 정비(※)

2004년도	2009년도
2,954개소	→ 6,000개소

(전국의 중학교구의 약 6할에서 실시)

- 만남의 광장 사업 추진(※): 육아중인 부모와 아동이 상담, 교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가까운 곳에 정비한다.

2004년도	2009년도
171개소	→ 1,600개소

- 지역육아 지원센터 사업 추진(※): 보육원 등에서 전업주부 등이 육아불안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지역의 육아모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육아 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한다.(후생노동성)

2004년도	2009년도
2,783개소	→ 4,400개소

□ 일시·특정 보육의 추진(※)

- 전업주부를 포함, 보호자가 육아로 인한 피로와 질병, 관혼상제 등 갑작스런 경우는 물론 파트타임 근로 등 미리 일시를 정하는 경우까지 필요한 때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장소를 확충한다.(후생노동성)

2004년도	2009년도
5,935개소	→ 9,500개소

(전국 중학교구의 약 9할에서 실시)

- 상점가의 빈 가게를 활용한 육아지원 사업 추진
 - 상점가의 빈 가게를 활용한 아동의 일시 보호소와 부모와 아동의 교류, 육아상담 등의 사업실시를 추진한다.(경제산업소)
- 육아 단기지원사업의 추진
 - 보호자의 질병과 육아로 인한 피로 일상적인 잔업 등에 따른 아동의 일시적인 보호를 아동양호시설 등에서 추진한다.(후생노동성)
 - Short stay사업의 추진(※)

2004년도		2009년도
569개소	→	870개소
(전국의 아동양호시설, 모자생활 지원 시설, 유아원의 약 9할에서 실시)		
 - Twilight stay 사업의 추진

2004년도		2009년도
310개소	→	560개소
(전국의 아동양호시설, 모자생활 지원 시설, 유아원의 약 6할에서 실시)		

② 취학전 교육·보육의 충실

【구체적 시책】

- 유치원의 지역 육아교육센터로서의 기능 충실
 - 보육자와 지역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시적 보호보육과 육아지원사업을 추진한다.(문부과학성)
- 유치원 취원 장려사업 추진
 - 유치원아 보호자의 소득상황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유치원 취원 장려사업을 추진한다.(문부과학성)
- 유치원과 보육원의 연대, 취학전 교육·보육과 초등학교의 연대
 - 유치원과 보육원의 각각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지역과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함과 동시에 유아기의 교육과 초등학교 이후의 교육을 원활히 연결시키기 위해 유치원·보육원·초등학교 간의 연대를 진행한다.(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 종합시설의 제도화
 - 취학전의 교육·보육을 하나로 파악하여 받아들이는 일관된 종합시설에 대하여 2005년도에 시행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2006년부터 본격적인 실시를 목표로 한다.(문

부과학성·후생노동성)

- 유치원 및 보육원의 자기평가와 제3자 평가의 추진
 - 유치원 및 보육원의 교육·보육 내용의 충실을 기하면서 이용자의 선택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보공개를 추진함과 동시에 자기점검평가와 제3자에 의한 평가를 추진한다.(문
부과학성·후생노동성)

③ 지역주민에 의한 주체적인 육아지원의 추진

【구체적 시책】

- 패밀리·서포트·센터의 추진(※)
 - 유아와 초등학생 등의 아동이 있는 육아중인 노동자와 주부 등을 회원으로 하여테려가
고 데려오기와 방과후의 보호 등 상호원조활동을 하는 패밀리·서포트·센터의 설치를 추
진한다.(후생노동성)

2004년도	→	2009년도
368개소		710개소

(전국 시구청촌의 약 1/4에서 실시)
- 실버인재센터에 의한 고령자 활용 육아지원 사업의 추진
 - 고령자의 취로기회·사회참가의 장을 제공하는 실버인재센터에서 유아를 돌보거나 보호
시설에 데려오고 데려가는 일 등에 대한 육아지원,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토요일과
일요일의 학습·생활지도 등의 지원을 한다.(후생노동성)
- 지역주민에 의한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형성 추진
 - 방과후 아동클럽과 패밀리·서포트·센터, 실버인재센터를 활용하여, 육아를 끝낸 주부와
고령자 퇴직자 등이 아동을 맡아,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일 등을
지원하는 대처(「생활원」)를 추진한다.(후생노동성)
- 육아 NPO와 육아서클의 육성
 - 지역에 뿌리를 두고 육아지원활동을 하는 NPO와 직접 육아를 하면서 서클활동을 실천
하고 있는 부모 등에게, 각종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제공과 활동장소 확보 등의 지원을
한다.(후생노동성)
- 남녀노소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육아 지원활동, 교류의 추진
 - 지역의 고령자와 육아중인 남성, 중·고등학생 등을 포함하여, 남녀노소의 지역주민이
육아지원활동에 구체적으로 관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다세대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보육원, 아동관, 자치회 등에서 지역에 열려 있는 가정교육에 관한 행사 등을 개
최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후생노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모든 시정촌(市町村)에서 실시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

◇ 모든 육아가정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장소에 거부감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부모와 아이가 모여서, 상담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육아지원거점이 모든 중학교구에 한 곳 이상 있을 것)

◇ 고독한 육아를 없앤다.(육아에 대해 누구와도 상담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의 비율과 누구에게도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사람의 비율 감소)

나. 육아가정이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등의 충실, 육아가정이 어디에서나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등을 충실히 한다.

○ 「대기아동 제로작전」,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한층 더 충실 등, 육아가정이 어디에서라도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등의 내실을 기한다.

(※) 차세대지원 사업법에 근거해서 시정촌(市町村) 행동계획에 들어 있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2009년도 목표치는, 각 시정촌(市町村)에서 검토중인 목표치의 집계결과를 토대로 설정).

① 대기아동제로작전의 새로운 전개

【구체적 시책】

- 보육원의 수용 아동수의 확대(※)
 - 대기아동 50명 이상의 시정촌(市町村)을 중심으로, 2007년까지의 3년간 집중적으로 수용아동수의 확대를 추진한다.(후생노동성)

2004년도	2009년도
203만 명	→ 215만 명

② 방과후 아동대책의 충실

【구체적 시책】

- 방과후 아동클럽의 추진
 - 노동 등을 이유로, 주간에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방과후 아동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후생노동성)

2004년도 2009년도
 15,133개소 → 17,500개소
 (전국의 초등학교구 약 3/4에서 실시)

③ 다양한 보육 요구에 대한 대응

【구체적 시책】

□ 연장보육의 추진(※)

- 기본적인 개소시간인 11시간을 넘어 행해지는 보육을 추진한다.(후생노동성)

2004년도 2009년도
 12,783개소 → 16,200개소
 (전국의 보육원 약 7할에서 실시)

□ 휴일 보육의 추진(※)

- 휴일과 공휴일에 일하는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다.(후생노동성)

2004년도 2009년도
 666개소 → 2,200개소
 (전국의 보육원 약 1할에서 실시)

□ 야간보육의 추진(※)

- 병원 등 야간근무가 필요한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다.(후생노동성)

2004년도 2009년도
 66개소 → 140개소
 (인구 30만 이상 시의 약 5할에서 실시)

□ 육아건강지원 일시 보호(병후아동 보육)의 추진(※)

- 병의 회복기에 들어간 유아의 보호를, 보육사 등의 파견 등을 추진하여, 충실히 한다.(후생노동성)

2004년도 2009년도
 507개소 → 1,500개소
 (전국 시정촌의 약 4할에서 실시)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

- ◇ 전국 어디에서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보육원 대기아동이 50명 이상인 시정촌(市町村)을 없애도록 한다).
- ◇ 취업형태에 따른 보육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보육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는 보호자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다. 가정교육 지원의 충실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사회적인 매너, 자제심과 자립심 등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교육을 지원한다.

【구체적 시책】

-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와 정보제공 추진
 - 육아중인 부모 등에 대해,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교재의 제공, 상담 실시, 강좌의 개설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과 정보입수의 기회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추진한다.(문부과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모든 시정촌(市町村)에서 가정교육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도록 할 것.
- IT를 활용한 가정교육 지원 방법의 보급
 - 육아 중 고립되기 쉬운 부모 등이, 가볍게 학습과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입수할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의한 육아상담과 정보제공 등 IT를 활용한 가정교육지원 방법을 보급한다.(문부과학성)
 - 향후 5년간의 목표: 전국에 보급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

- ◇ 가정교육에 관한 부모의 불안과 부담감을 경감시킨다.(예절교육과 육아에 자신감이 없다는 부모의 비율이 줄어든다)

라. 특별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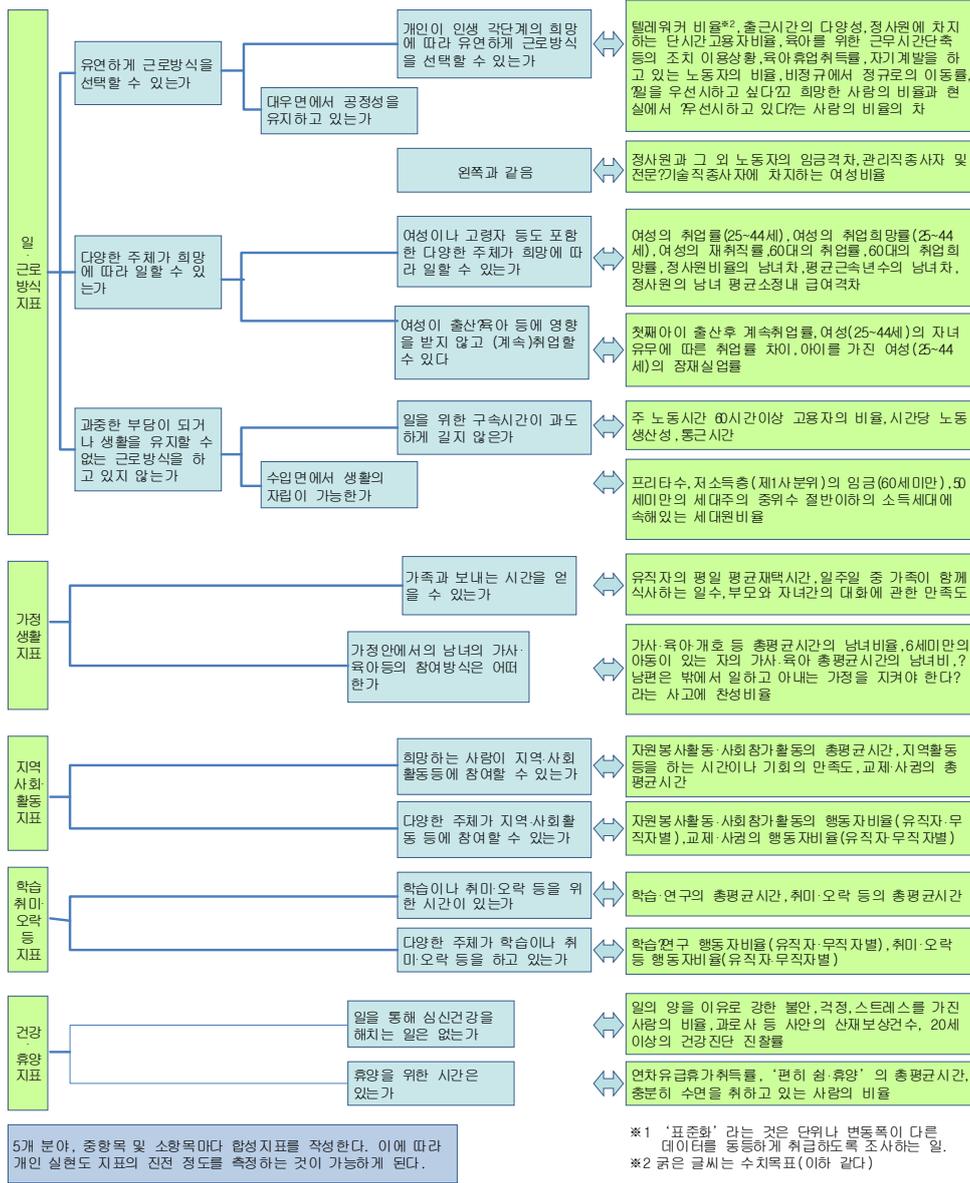
- 아동학대 방지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장애아동과 편부모가정 등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을 하여, 모든 아동과 육아를 소중히 한다.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가 실현된 사회의 모습

취로에 의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회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근로방식 선택할 수 있는 사회
----------------------	----------------------------------	----------------------

중 항 목 지 표 **소 항 목 지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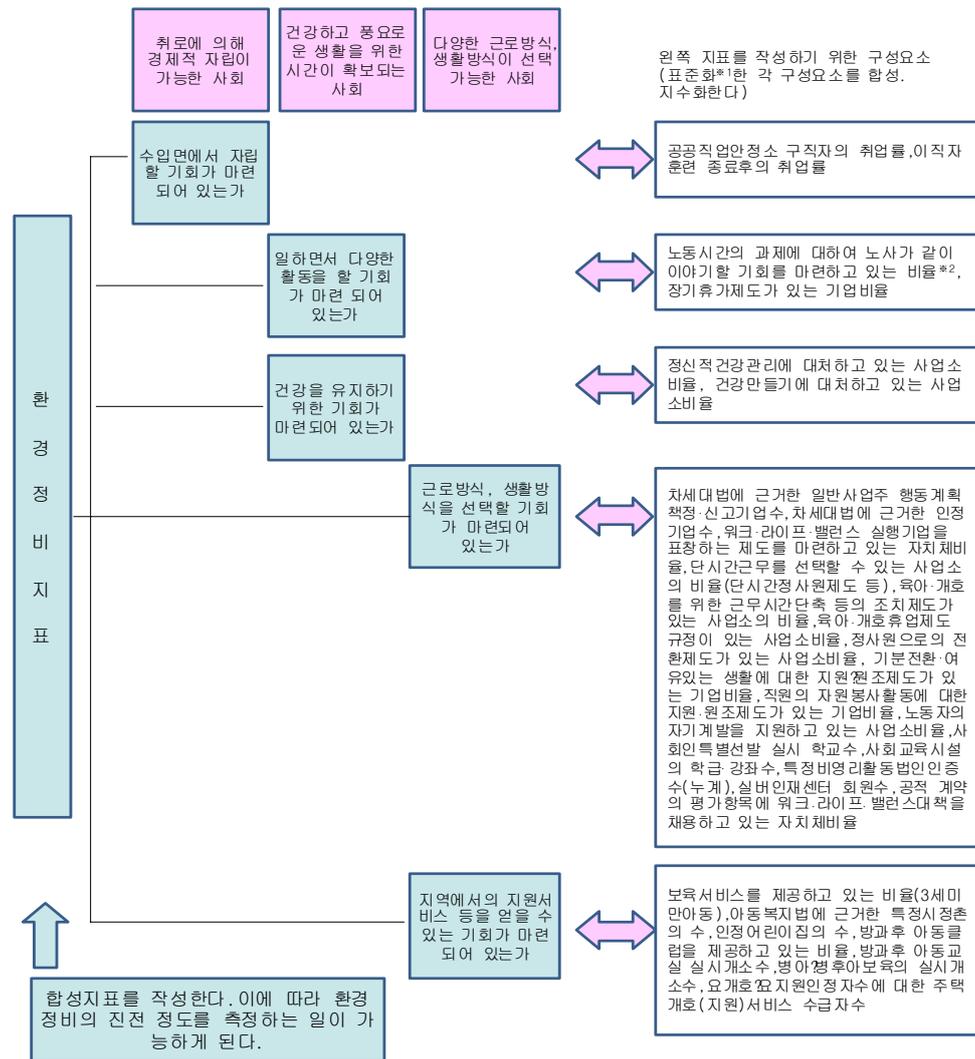
왼쪽 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구성요소 (표준화*1한 각 구성요소를 합성 지수화한다.)



II. 환경정비 지표

환경정비 지표에 대해서는, 분야를 마련하지 않고 하나의 지표로서 측정한다. 덧붙여, 동 지표는 본 행동지침으로 정하는 수치목표 외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에 관련된 통계(구성요소)를 조합한 것에 따라 작성한다.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가 실현된 사회의 모습



*1 「표준화」라는건 단위나 변화 폭이 다른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조사한 것
*2 굵은 글씨는 수치목표(이하같음)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 추진 국민 대표자회의 구성원 명부

(관계 각료)

내각관방 장관

내각부특명 담당대신(저출산 대책)

내각부특명 담당대신(경제재정 정책)

총무대신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

(단체의 대표자)

御手洗富士夫 (사) 일본경제단체 연합회회장

岡村 正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高木 剛 일본노동조합 총연합회 회장

岡本 直美 NHK 관련노동조합 연합회 의장

麻生 渡 전국지사회 회장

(전문가)

大沢 真知子 일본여자대학 인간사회학부교수

佐藤 博樹 사회과학연구소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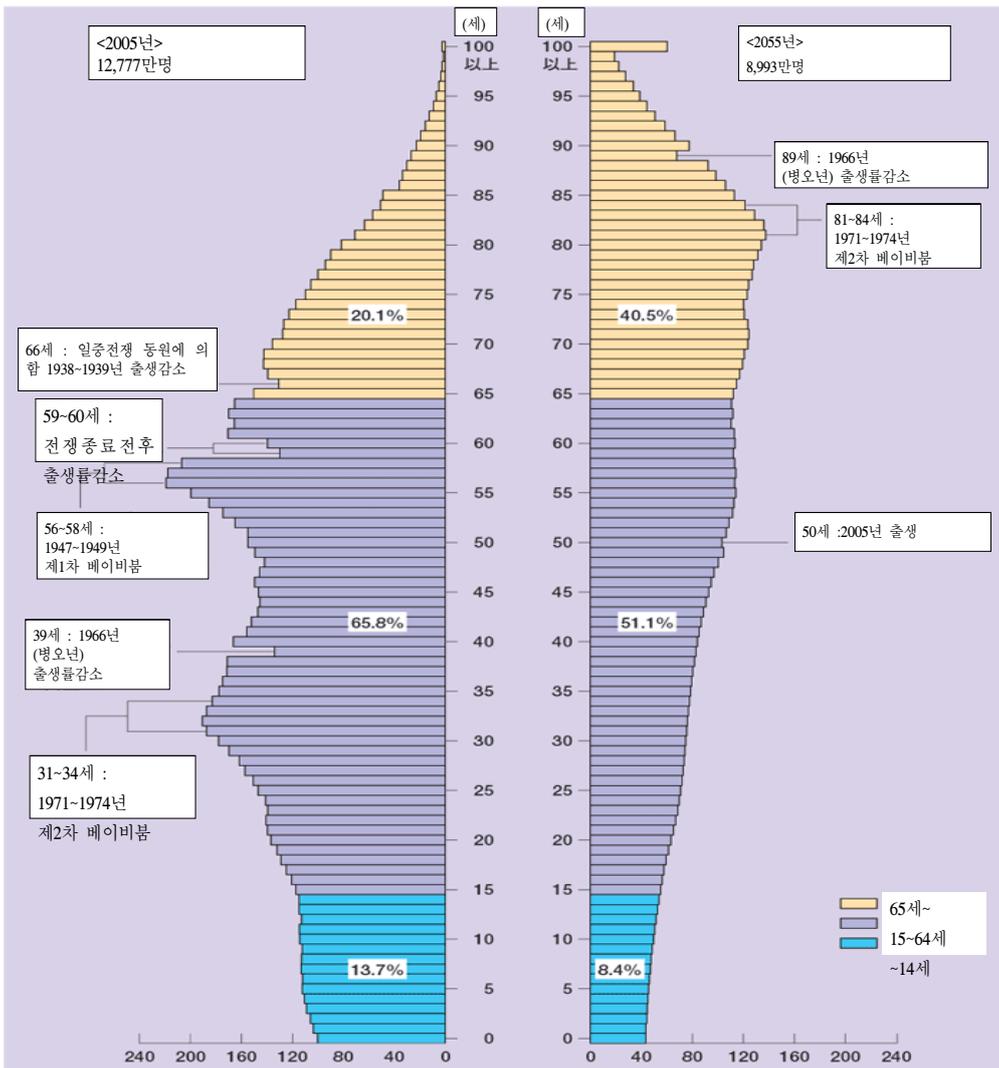
樋口 美雄 케이오기쥬쿠대학 상학부교수

八代 尚宏 국제기독교대학 교양학부교수

[전문가에 대해서는 오십음순서·경칭생략]

부록 8. 기초 데이터

1. 인구 피라미드



자료 : 1005년에는 총무성 「국세조사」, 2055년에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 인구(2006년 12월 추계)」

2. 인구의 변화

(1) 인구 총수, 증가율의 추이

연도	총수(명)	전회 조사인구에 대한 증가율 (%)
1920	55,963,053	-
25	59,736,822	6.7
30	64,450,005	7.9
35	69,254,148	7.5
40	73,114,308	5.6
45	71,998,104	-1.5
50	84,114,574	16.8
55	90,076,594	7.1
60	94,301,623	4.7
65	99,209,137	5.2
70	104,665,171	5.5
75	111,939,643	7.0
80	117,060,396	4.6
85	121,048,923	3.4
90	123,611,167	2.1
95	125,570,246	1.6
2000	126,925,843	1.1
1	127,316,043	-
2	127,485,823	-
3	127,694,277	-
4	127,786,988	-
5	127,767,994	0.7
6	127,769,510	-
7	127,770,794	-

1940년
 1) 한국, 대만, 사할린 및 남양군도 이외의 국적의 외국인(39,237명)을 제외한 「총인구」이다.
 2) 연령 「미상」을 포함한다.

1945년
 1) 연령은 세는 나이(태어난 해를 한 살로 쳐서 세는 나이)이다.
 2) 오키나와를 제외한다.

1950년
 1) 연령 「미상」을 포함한다.
 2) 오키나와현의 70세이상 외국인 136명(남성 55명, 여성 81명)을 제외한다.

1955년
 1) 연령 「미상」을 포함한다.
 2) 오키나와현을 제외한다(오키나와현의 70세이상 인구는 남성 8,090명, 여성 15,238명)

1960년·1965년
 1) 오키나와현 연령 「미상」을 포함한다.

1975년~2005년
 1) 연령 「미상」을 포함한다.

자료: 2001~2004년 및 2006년 및 2007년에는 총무성 「인구추계」, 그 밖에는 총무성 「국세조사」
 주1: 2001~2004년의 총인구는 2005년 국세조사인구를 바탕으로 보간보정한 10월1일 현재 수치
 주2: 1945년에는 오키나와를 제외

연도	남				여			
	20-24	25-29	30-34	35-39	20-24	25-29	30-34	35-39
1950	82.7	34.3	8.0	3.2	55.2	15.2	5.7	3.0
55	90.1	41.0	9.1	3.1	66.4	20.6	7.9	3.9
60	91.6	46.1	9.9	3.6	68.3	21.7	9.4	5.4
65	90.3	45.7	11.1	4.2	68.1	19.0	9.0	6.8
70	90.0	46.5	11.7	4.7	71.6	18.1	7.2	5.8
75	88.0	48.3	14.3	6.1	69.2	20.9	7.7	5.3
80	91.5	55.1	21.5	8.5	77.7	24.0	9.1	5.5
85	92.1	60.4	28.1	14.2	81.4	30.6	10.4	6.6
90	92.2	64.4	32.6	19.0	85.0	40.2	13.9	7.5
95	92.6	66.9	37.3	22.6	86.4	48.0	19.7	10.0
2000	92.9	69.3	42.9	25.7	87.9	54.0	26.6	13.8
2005	93.6	72.6	47.7	30.9	89.4	59.9	32.6	18.6

자료: 총무청 「국세조사」

주1: 총수에 배우자관계 「미상」을 포함한다.

주2: 1950년은 오키나와현의 본적의 일본인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1) 오키나와현의 70세이상 남성인구 9,547명(미혼354명, 기혼5,582명, 사별3,474명, 이별135명)을 제외한다.

2) 오키나와현의 70세이상 여성인구 17,097명(미혼451명, 기혼2,774명, 사별12,960명, 이별361명)을 제외한다.

주3: 1955년

1) 오키나와현의 70세이상 남성인구 8,090명(미혼56명, 기혼4,908명, 사별3,001명, 이별125명)을 제외한다.

2) 오키나와현의 70세이상 여성인구 15,238명(미혼46명, 기혼2,774명, 사별12,217명, 이별200명)을 제외한다.

7. 평균수명의 추이

(단위: 세)

연도	남	여	연도	남	여
1947	50.06	53.96	77	72.69	77.95
48	55.60	59.40	78	72.97	78.33
49	56.20	59.80	79	73.46	78.89
50	58.00	61.50	80	73.35	78.76
51	60.80	64.90	81	73.79	79.13
52	61.90	65.50	82	74.22	79.66
53	61.90	65.70	83	74.20	79.78
54	63.41	67.69	84	74.54	80.18
55	63.60	67.75	85	74.78	80.48
56	63.59	67.54	86	75.23	80.93
57	63.24	67.60	87	75.61	81.39
58	64.98	69.61	88	75.54	81.30
59	65.21	69.88	89	75.91	81.77
60	65.32	70.19	90	75.92	81.90
61	66.03	70.79	91	76.11	82.11
62	66.23	71.16	92	76.09	82.22
63	67.21	72.34	93	76.25	82.51
64	67.67	72.87	94	76.57	82.98
65	67.74	72.92	95	76.38	82.85
66	68.35	73.61	96	77.01	83.59
67	68.91	74.15	97	77.19	83.82
68	69.05	74.30	98	77.16	84.01
69	69.18	74.67	99	77.10	83.99
70	69.31	74.66	2000	77.72	84.60
71	70.17	75.58	2001	78.07	84.93
72	70.50	75.94	2002	78.32	85.23
73	70.70	76.02	2003	78.36	85.33
74	71.16	76.31	2004	78.64	85.59
75	71.73	76.89	2005	78.56	85.52
76	72.15	77.35	2006	79.00	85.81

자료: 후생노동성 「생명표」

주1: 평균수명이란 각 연도 0세아동의 평균여명을 말한다.

주2: 1947, 55, 60, 65, 70, 75, 80, 85, 90, 95, 2000, 2005년은 「완전생명표」, 그 밖의 연도는 「간이생명표」에 따른 수치.

11. 저출산 사회 대책 담당 창구 일람

(1) 관계 부처 창구 일람

	부국·과(실)	전화번호(대표)
내각부	저출산대책추진실	03-5253-2111
경찰청	장관관방 총무과	03-3581-0141
총무성	대신관방 기획과	03-5253-5111
재무성	대신관방 종합정책과 기획관실	03-3581-4111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 남녀공동참가학습과 가정교육지원실	03-5253-4111
후생노동성	고용균등·아동가정국 총무과 저출산대책 기획실	03-5253-1111
농림수산업성	경영국 보급·여성과 여성·고령자대책추진실	03-3502-8111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서비스정책과	03-3501-1511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안심안전정책과	03-5253-8111
환경성	종합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 환경교육추진실	03-3581-3351
인사원	사무총국 기획법제과	03-3581-5311

(3) 정령지정도시 담당창구 일람

	부서	과(실)	전화번호(대표)
삿포로시	아동미래국 아동육성부	아동기획과	011-211-2111
센다이시	아동미래국	아동기획과	022-261-1111
사이타마시	보건복지국 아동미래부	육아기획과	048-829-1111
치바시	보건복지국 아동가정부	아동가정복지과	043-245-5111
요코하마시	아동청소년국 육아지원부	지역육아지원과	045-671-2121
카와사키시	건강복지국 아동사업본부	기획조정담당	044-200-2111
니가타시	건강복지부	아동미래과	025-228-1000
시즈오카시	건강복지국 아동청소년부	육아지원과	054-254-2111
하마마츠시	아동가정부	차세대육성과	053-457-2111
나고야시	아동청소년국 아동미래부	아동미래과	052-961-1111
교토시	보건복지국 육아지원부	아동가정과	075-222-3111
오사카시	아동청소년국 육아지원부	-	06-6208-8181
사카이시	아동청소년국 아동청소년육성부	아동육성과	072-233-1101
코베시	보건복지국 육아지원부	-	078-331-8181
히로시마시	사회국	아동복지과	082-245-2111
키타큐슈시	보건복지국 아동부	아동가정과	093-671-8181
후쿠오카시	아동미래국 아동부	아동기획과	092-711-4111

12.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추진 담당창구 일람

(1) 관계부처 창구일람

	부국·과(실)	전화번호(대표)
내각부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추진실	03-5253-2111
후생노동성	정책통괄관부 노동정책담당참서관실	03-5253-1111

(2) 도도부현 담당창구 일람

	부국·과(실)	전화번호(직통)
사가현	농림수산상공본부 고용노동과	0952-25-7100
나가사키현	아동정책국 아동미래과	095-895-2683
쿠마모토현	상공관광노동부 노동고용총실	096-333-2339
	건강복지부 저출산대책과	096-333-2225
오이타현	상공노동부 노정복지과	097-506-3326
미야자키현	복지보건부 아동가정과	0985-26-7057
	상공관광노동부 노동정책과	0985-26-7105
카코시마현	보건복지부 아동과	099-286-2763
	상공노동부 고용노동과	099-286-3014

평생 20년판
일본 소자화백서

정책자료 2008-04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인 김 용 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예원기획
가 격 비매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978-89-8187-552-7 93330